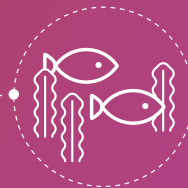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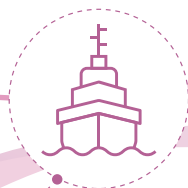


유기수산식품 국제 동등성 확보 방안

A Study on Strategic Directions for Achieving International
Equivalence of Organic Aquatic Products

오서연 · 안지은 · 이동림



유기수산물 국제 동등성 확보 방안

A Study on Strategic Directions for Achieving International
Equivalence of Organic Aquatic Products

오서연 · 안지은 · 이동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저자	오서연, 안지은, 이동림
내부연구진	연구책임자 오서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 전문연구원 공동연구원 안지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이동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 전문연구원

연구기간	2025. 4. 1. ~ 2025. 9. 30.
------	----------------------------

보고서 집필내역

연구책임자	오서연 연구총괄,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내부연구진	안지은 제3장 제1절, 제2절 일부, 제5장 제2절 이동림 제3장 제2절 일부

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	김영훈 오가닉티앤씨 인증총괄이사 이헌동 국립부경대학교 교수 이영훈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사무관 김종모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과장 전연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사무관 성명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주무관
-------------------	---

※ 순서는 산·학·연·정 순임

발간사

세계적으로 환경과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수산물이 단순한 단백질 공급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식량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유기(Organic)'라는 개념이 농산물에서 수산물 영역으로 확대되며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의 핵심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유기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김·미역·전복 등 일부 품목에서 인증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기가공수산물식품은 국제 동등성 인정 협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국내에서 유기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도 수출 과정에서 별도의 인증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제도적 공백이 존재한다. 특히 2026년 만료를 앞둔 한-EU 동등성 협정 재협상을 앞두고 이러한 문제 해결은 더욱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유기수산물식품 산업이 직면한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주요 교역국의 인증 제도와 동등성 협정 체결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내 제도와외의 정합성을 검토함으로써 동등성 협정 추진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국내 생산자 대상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현장의 인식과 애로사항을 분석하고, 동등성 인정 체결이 가져올 수 있는 정책적·경제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도출하였다.

국제 동등성 인정 제도는 단순히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수준을 넘어, 인증비용 절감, 시장 접근성 확대, 소비자 선택권 보장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국내외 시장에서 친환경 식품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연구에서 제시한 전략과 정책 제언은 우리 유기수산물식품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국내 수산업계가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유기 인증 체계를 갖추고, 국제 무역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는 수산연구본부 오서연 전문연구원이 연구책임을 맡았으며 안지은 부연구위원, 이동림 전문연구원이 참여하였다. 유기수산식품의 국제동등성 인정에 관한 정책 연구는 선행연구가 부족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의 노력에 감사를 전한다. 아울러 이 연구는 해양수산부 이영훈 사무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김종모 과장, 전연미 사무관, 성명희 주무관, 부경대학교 이현동 교수, 유기농티앤씨 김영훈 인증총괄이사께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연구에 대한 자문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다. 필자를 대신하여 자문위원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 연구가 유기수산식품의 국제동등성 인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25년 11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조 정 희

목차

정책제안 _ i

요약 _ iii

Executive Summary _ xi

01

서론_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3
3. 연구 내용	3
4. 연구 방법	4
제2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1. 선행연구 분석	7
2. 본 연구의 차별성	9

02

유기식품산업의 현황 및 제도_13

제1절 유기수산물 개념 및 범위	13
1. 수산식품의 개념 및 범위	13
2. 유기수산식품의 개념 및 범위	15
제2절 유기수산물 현황	18
1. 생산 현황	18
2. 인증 현황	18
제3절 유기 인증 및 동등성 제도	20
1. 유기 인증 제도	20
2. 인증 절차	22

3. 유기수산물 동등성 제도	24
제4절 시사점	28

03 유기식품 동등성 협정 사례 분석_29

제1절 농업 부문 유기식품 동등성 제도 및 사례	29
1. 유기식품 동등성 제도	29
2. 동등성 협정 체결 사례	32
제2절 주요국의 동등성 제도 및 사례	35
1. EU	35
2. 영국	39
3. 일본	43
4. 중국	55
5. 미국	59
6. 캐나다	61
제3절 시사점	69

04 실태조사 및 동등성 효과분석_73

제1절 동등성 협정에 관한 생산자 인식	73
1. 설문조사 개요	73
2. 조사 결과	76
제2절 동등성 인정 효과 분석	83
1. 생산자 효과 분석	83
2. 수출입 효과 분석	86
제3절 동등성 제도 정합성 평가	97
1. 허용물질	98
2. 유기 생산 기준	105
3. 제도 정합성 평가	124

05

결론 및 정책 제언_131

제1절 요약과 결론	131
제2절 동등성 추진 방향	132
제3절 정책 제언	135
1. 협상 추진을 위한 국내 여건 조성	135
2. 유기수산물 수출을 위한 국내 기반 조성	144

참고문헌 _149

부록 _157

표 목차

〈표 1-1〉 연구 추진 체계	6
〈표 1-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9
〈표 2-1〉 수산가공식품의 유형	14
〈표 2-2〉 단순처리 수산물 유형	15
〈표 2-3〉 친환경 식품 정의 근거 규정	16
〈표 2-4〉 친환경 인증 종류 및 인증표시	17
〈표 2-5〉 친환경 수산물 인증 현황	18
〈표 2-6〉 유기 인증 현황 (2025년 6월 기준)	19
〈표 2-7〉 유기수산물 인증 관련 규정	21
〈표 2-8〉 동등성 관련 규정	25
〈표 2-9〉 동등성 협정 추진 절차	26
〈표 2-10〉 EU의 동등성 협정 대상 변화	27
〈표 3-1〉 유기식품 동등성 제도 관련 법체계	30
〈표 3-2〉 농업 부문 유기가공식품 인증 동등성 인정 기준	31
〈표 3-3〉 농업 부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협정 현황	34
〈표 3-4〉 EU의 Category of products	37
〈표 3-5〉 국가별 동등성 협정의 Category of products 인정 범위	38
〈표 3-6〉 상품의 범위	40
〈표 3-7〉 영국의 동등성 적용 범위 및 인정 절차	41
〈표 3-8〉 동등성 협정의 상품 범위	42
〈표 3-9〉 일본 유기 동등성 상호 승인 국가 현황(2025년)	45
〈표 3-10〉 일본-미국 간 유기 동등성 협정 내용	46
〈표 3-11〉 일본-캐나다 간 유기 동등성 협정 내용	48
〈표 3-12〉 일본-EU 간 유기 동등성 협정 내용	49
〈표 3-13〉 일본-스위스 간 유기 동등성 협정 내용	51
〈표 3-14〉 일본-영국 간 유기 동등성 협정 내용	53
〈표 3-15〉 일본-대만 간 유기 동등성 협정 내용	54
〈표 3-16〉 중국-뉴질랜드 유기식품 동등성 협정 체결 연혁	56
〈표 3-17〉 중국-호주 유기제품 인증 협력 의향서 주요 내용	57
〈표 3-18〉 미국 유기식품 동등성 협정 현황	61

〈표 3-19〉 캐나다 유기농 제도(Canada Organic Regime)	61
〈표 3-20〉 캐나다 동등성 협정 기준	64
〈표 3-21〉 캐나다 유기식품 동등성 협정 현황	68
〈표 3-22〉 주요국의 동등성 협정 비교	72
〈표 4-1〉 설문조사 개요	74
〈표 4-2〉 응답자 특성	74
〈표 4-3〉 조사 항목	75
〈표 4-4〉 인증 수수료	84
〈표 4-5〉 생산자 효과 분석	86
〈표 4-6〉 대(對) EU 수출 품목	89
〈표 4-7〉 대(對) EU 수입 품목	90
〈표 4-8〉 EU 유기수산물 생산 동향(2020)	92
〈표 4-9〉 대(對) EU 김 수출 동향	95
〈표 4-10〉 EU 동등성 인정에 따른 (김) 효과 분석	95
〈표 4-11〉 EU 동등성 인정 효과	97
〈표 4-12〉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 기준	98
〈표 4-13〉 국내 허용물질 기준	99
〈표 4-14〉 EU 허용 물질	102
〈표 4-15〉 EU 허용 물질	103
〈표 4-16〉 한-EU 허용물질 기준 정합성 검토	105
〈표 4-17〉 유기식품의 인증 기준(생산자)	108
〈표 4-18〉 조류 및 수생동물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112
〈표 4-19〉 조류 및 수생동물 요구사항	114
〈표 4-20〉 수산양식 동물 요구사항	122
〈표 4-21〉 한-EU 유기 생산 기준 정합성 검토	129
〈표 5-1〉 제도 개선 사항 및 생산자 지원사항(안)	138
〈표 5-2〉 국제 동등성 인증 전·후 비용 구조 및 생산자 지원 방안	140
〈표 5-3〉 단계별 품목 확대 방안	145
〈표 5-4〉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유기식품 수출 지원 정책 현황	148

그림 목차

〈그림 2-1〉 유기 인증 신청 및 절차	22
〈그림 2-2〉 유기 인증 갱신·연장 인증 절차	23
〈그림 3-1〉 캐나다 동등성 결정 절차 흐름도	65
〈그림 3-2〉 캐나다의 유기식품 로고(Canadian Organic Logo)	66
〈그림 4-1〉 유기가공식품 생산량(2024년)	76
〈그림 4-2〉 수출하는 유기가공수산물	77
〈그림 4-3〉 국가별 유기가공수산물 수출량	78
〈그림 4-4〉 수출 과정 유기 인증 관련 애로사항	79
〈그림 4-5〉 국제 동등성 인정 협정 인지도	80
〈그림 4-6〉 동등성 체결 희망국	80
〈그림 4-7〉 동등성 협정 체결 시 수출 확대 도움 정도	81
〈그림 4-8〉 동등성 체결 시 기대효과	82
〈그림 4-9〉 동등성 체결 시 애로사항	82
〈그림 4-10〉 연간 유기 인증 비용	84
〈그림 4-11〉 동등성 인정 협정 체결 시 인증 신규·유지 의향	85
〈그림 4-12〉 한-EU 수출 현황(2010-2024)	87
〈그림 4-13〉 한-EU 수입 현황(2010-2024)	88
〈그림 5-1〉 국제 동등성 대응 조직(안)	142
〈그림 5-2〉 유기가공식품산업 활성화 관련 가공·유통 분야 주요 신규 기술개발 과제	147

약어 목록

- CFIA(캐나다 식품 검사청):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 COR(캐나다 유기농 제도): Canada Organic Regime
- DEFRA(영국 환경식품농산부):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 EGOP(유기 생산에 관한 전문가 자문단): Expert Group on Organic Production
- MRA(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 NOP(국가 유기농 프로그램): National Organic Program
- OEA(동등성 인정 협정): Organic Equivalency Agreements
- OFIS(EU 유기농 정보시스템): Organic Farming Information System
- TRACES(무역 통제 및 수출 시스템): Trade Control and Expert System
- UKOOG(영국 유기인증기관 연합체): UK Organic Certifiers Group

정책제안

■ 분석 내용 및 방법

1. 국내외 제도 분석, 문헌조사, 전문가 자문을 통해 유기수산물식품의 국내 유기수산물식품 인증 실태 및 제도적 한계점 도출
2. 생산자 설문조사를 통한 국내 유기가공수산물식품 생산자의 국제 동등성 인식을 확인
3. 생산·수출입 통계 분석을 통해 향후 국제 동등성 인정 체결로 인한 효과를 분석하고 제도 정합성 평가를 통해 제도 개선 사항 도출
3. 상기 분석을 통해 향후 국제 동등성 추진 시 고려 사항과 정책 제언을 도출

■ 정책 제안

1. 국제 동등성 추진 방향성 설정
2. 국제 동등성 추진을 위한 국내 여건 조성
3. 유기수산물식품 수출을 위한 국내 기반 조성

요 약

유기수산물식품 국제 동등성 확보 방안

오서연 · 안지은 · 이동림

1. 연구의 배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동등성 인정)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국제 동등성을 인정함
- 동 법에 근거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EU, 미국, 영국, 캐나다와 국제 동등성 인정 협정을 맺고 있음
- 유기가공수산물식품은 동등성 인정 협정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2016년 EU가 동등성 협정 범위를 (기존)농산물가공식품에서 모든 가공 농수산물식품으로 확대하면서 협정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유기가공수산물 식품의 제도적 공백 발생

-
- 한-EU 동등성 협정 범위 제외¹⁾와 EU 제3자 인증기관의 국내 부재²⁾로 유기가공수산식품의 EU 수출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한-EU 동등성 인정은 2026년 만료를 앞두고 있어 재협상이 필요
 - 본 연구는 국제 동등성 인정에 따른 국내 영향을 검토하여, 유기수산식품 수출의 제약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

2) 국정과제 연계성

- 본 연구에서 다루는 유기가공식품 인증 및 국제 동등성 인정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³⁾ 중 (전략 4)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 (국정 68)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에 해당함

2. 연구의 방법

1) 학술적 방법

- 국내(농업), EU,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동등성 협정 체결 사례 검토
- 유기가공식품 업체 대상 국제 유기가공수산식품 실태 및 동등성 인정에

1) 한-EU 동등성 협상 당시 농축산식품만 협정의 범위에 포함됨(농림축산식품부만 협상에 참여)

2) '25. 9. 20 확인 기준

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검색일: 2025.9.3.)

관한 인식 확인

- 전남, 전북, 충청권 유기가공식품 업체 40개소 대상 설문조사 시행
- 유기 생산 및 인증 건수, 수출입 통계 분석
- 국내외 제도 정합성 평가를 하여 제도 개선 사항 도출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Regulation (EU) 2018/848’ 중심으로 제도 정합성 평가

2) 정책화 방안

- 유기수산물식품 인증 현황 및 제도 검토
- KMI-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자문회의(2025.6.16.)
- 수산 부문 국제 동등성 인정 체결 타당성 검토
- KMI-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자문회의(2025.7.21.)
- KMI-오가닉 티앤씨 자문회의(2025.8.12)
- KMI-부경대학교 자문회의(2025.7.27.)
- 정부 정책 지원
- 해양수산부 수출가공과 요청자료 작성 및 제공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 불필요한 무역 장벽 해소 수단으로 WTO/TBT 협정 제2.7조와 국제 식품규격위원회(CODEX) GL-32는 동등성 인정을 권고
 - 국내(농업), 국외(EU,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등)를 중심으로 유기 식품의 동등성 인정 체결 확대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동등성 인정을 명시함. 같은 법 시행규칙은 동등성 인정 기준, 인정 절차, 인정 대상 품목 범위, 인정받은 국가의 의무와 사후관리, 동등성 인정 내용, 유기 표시 등에서 규정함
 - 국내는 농축산가공식품에 한해 EU, 미국, 캐나다, 영국과 동등성 인정을 체결하였으나 유기가공수산식품은 협정 적용에서 제외됨
 - 한-EU 동등성 협정 범위의 변경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유기가공수산 식품의 동등성 협정 체결 필요성 제기
 - 한-EU 동등성 범위가 (기존)농산물가공식품에서 모든 가공농수식품으로 확대되면서, 동등성 협상 당시 논의되지 않았던 가공수산식품이 동등성의 범위에 포함됨
 - 이를 계기로 유기가공수산식품의 EU 수출에 제도적 공백이 발생함. 또한 EU 수출 시 필요한 EU가 인증한 제3자 인증기관의 국내 부재⁴⁾로 유기가공수산식품을 수출할 수 없게 됨
 - 한-EU 동등성 인정 협정은 2026년 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EU는 재협상을 앞두고 기존 약정(Arrangement)에서 무역 협정(Trade Agreement) 형태로 동등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함
 - 동등성 인정으로 인한 생산자 편익 및 수출 효과
 - 생산자는 동등성 인정이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함. 그 이유로 중복인증 해소로 인한 인증 비용 절감, 수출시장 확대, 거래 안정성 확보로

4) '25. 9. 20 확인 기준

응답함

- 최근 3년간 한-EU 교역에서 조미김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EU 수출 상위 2위 품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따라서 한-EU 동등성 인정이 체결될 경우, 유기농수산물식품의 대표 품목인 조미김의 EU 수출 확대가 전망됨. 특히 북서유럽을 중심으로 친환경 식품에 대한 수요가 높고, K-Food에 관한 관심이 확산하고 있어 시장 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
- 반면, EU 내 유기농 생산은 홍콩, 연어(아일랜드), 농어, 도미, 송어 등이나, 역내 수출을 통해 EU 내에서 소비되고 있는 구조를 띠
- 동등성 인정 협정 범위는 가공식품으로 제한되어, 원물 중심의 EU 수산물에 대한 국내 시장에 대규모로 유입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양식 생산의 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 기준 수준으로 제도 개선 필요**
- 동등성 인정 체결을 위해서는 체결국과의 제도적 정합성이 요구됨. 협상국으로 고려될 수 있는 EU의 유기 양식 기준은 국내 기준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특히, EU는 해조류, 어류, 패류, 연체류 등 품목별 세부 기준, 전환기, 수질(유입수, 배출수 관리), 동물복지, 허용 물질, 양식밀도 및 시설, 운반 기준, 지속가능한 계획 수립 등에서 상세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반면, 국내 기준은 품목별 세부 규정이 미비하고, 환경 관리 및 동물복지 등 일부 영역에서 국제 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
- 다만, 제도 수준을 단기간에 국제 기준 수준으로 상향하면 생산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생산자의 수용성과 산업 여건을 고려하여, 점진적 방식으로 제도 개선 추진 필요
- **국내 생산자의 안정적인 유기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동등성 협정 체결 필요**

- 동등성 인정으로 인한 국내 생산자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등성 협상 전 국내 영향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동등성 협정에서 요구되는 제도 정합성 수준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국제 기준 수준의 제도 개선 필요
- 동등성 협정 체결 전·후 유기가공수산물식품 기업의 수출 과정에서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증·통관·유통 단계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함
- 동등성 인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품목 확대가 필요함. 단기에는 유기 전환이 용이하고, EU 소비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품목인 조미김 등을 중심으로 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다시마, 미역, 전복, 새우, 어류로도 범위를 확대할 필요
-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체계를 확립해야 함. 영어조합법인, 협동조합, 수협 등을 기반으로 공동 인증 제도 운영을 통한 비용 절감, 공동 브랜드·마케팅 플랫폼을 통한 EU 시장 인지도 제고, 수출 컨소시엄을 통한 가공·포장·라벨링·물류의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
- 또한 동등성 협정 발효 시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정부-인증기관 관리 체계 강화와 인증기관의 심사 역량 제고가 필요함
- 동등성 체결은 단순히 제도 조화를 넘어, 국내 유가수산물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됨

4. 기대효과

1) 정책적 기대효과

-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향후 한-EU를 비롯한 주요 교역국과의 동등성

협정 추진을 위한 협상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수행한 제도 정합성 평가를 토대로 제시한 제도 개선(안)은 국제 수준의 유기 인증 기준 마련에 근거를 제공하며, 한-EU 동등성 협정을 위한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한-EU 동등성 협정을 위한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 활용

2)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 동등성 협정을 통해 중복 인증 해소와 절차 간소화가 이루어지면, 생산자의 인증 비용과 행정적 부담이 완화되어 소규모 생산자에게도 유기 인증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음
- EU 시장을 비롯한 새로운 시장으로의 유기가공수산물식품의 수출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어가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동등성 협정을 통해 유기가공수산물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친환경 제품에 대한 수요가 충족됨으로써 소비자 복지 증진에도 기여

EXECUTIVE SUMMARY

A Study on Strategic Directions for Achieving International Equivalence of Organic Aquatic Products

Seo-Yeon Oh · Ji-EunAn · DonglimLee

1. Background

1) Background and Purpose

- In accordance with Article 25 (Recognition of Equivalenc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and Fisheries and Management and Support for Organic Foods, etc., the international equivalence of organic processed foods has been recognized.
- Based on this Act,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FRA) has signed equivalence agreements with the EU,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Canada.

-
- However, organic processed aquatic products were excluded from these equivalence agreements. In 2016, when the EU expanded the scope of its equivalence agreements from 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 to all processed agri-fishery products, a regulatory gap emerged for organic processed aquatic products that were not covered by the agreement.
 - As the Korea-EU equivalence agreement only included 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ducts—since only MAFRA participated in the negotiation—organic processed aquatic products were excluded. Moreover, the absence of EU-accredited third-party certification bodies in Korea currently prevents exports of organic processed aquatic products to the EU. Given that the Korea-EU equivalence agreement is set to expire in 2026, renegotiation is necessary.
 - This study aims to examine domestic impacts of equivalence recognition and proposes strategies to address export barriers for organic aquatic products.

2) Relevance to National Projects

- The certification of organic processed foods and recognition of international equivalence, which are addressed in this study, aligns with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Five-Year National Policy Plan¹⁾, specifically Strategy 4:

1) Korea Policy Briefing (Search Date: 2025.9.3.)

"Rural Communities Where Hope is Realized" and National Task 68: "Fostering Agriculture as a National Strategic Industry to Safeguard the Nation's Food Supply.

2. Methodology

1) Academic methodology

- Reviewed cases of equivalence agreements concluded by Korea (agriculture), the EU,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Canada, Japan, and China.
- Assessed the current status and industry perceptions of international equivalence for organic processed aquatic products through surveys targeting organic processed food companies.
- Conducted a survey of 40 organic processed food companies located in Jeonnam, Jeonbuk, and Chungcheong regions.
- Analyzed statistics on organic production, certification, imports, and exports.
- Evaluated the consistency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gulatory frameworks to identify area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 Focused primarily on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and Fisheries and Management and Support for Organic Foods, etc. and Regulation (EU) 2018/848.

2) Policy-making methods

- Reviewed the current status of certification and regulatory frameworks for organic aquatic products.
- Consultative meeting with the Quality Management Division of the National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June 16, 2025).
- Examined the feasibility of concluding an international equivalence agreement for the fisheries sector.
- Consultative meeting with the Quality Management Division of the National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July 21, 2025).
- Consultative meeting with Organic T&C (August 12, 2025).
- Consultative meeting with Pukyong National University (July 27, 2025).
- Provided government policy support.
- Drafted and obtained materials from the Export Processing Division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3. Result

1) Summary

- As a means of eliminating unnecessary trade barriers, Article 2.7 of the WTO/TBT Agreement and th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ODEX) GL-32 recommend the recognition of equivalence.

- The scope of equivalence recognition for organic foods has expanded both domestically (agriculture) and internationally (EU,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Canada, Japan, and China).
- Article 25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and Fisheries and Management and Support for Organic Foods, etc. provides the legal basis for recognizing equivalence.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Act stipulate the standards, procedures, product scope, obligations of recognized countries, post-management, recognized contents, and labeling requirements.
- Korea has concluded equivalence agreements with the EU, United States, Canada, and United Kingdom, but these agreements apply only to organic processed 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ducts, with organic processed aquatic products remaining excluded.
- The need to conclude equivalence agreements for organic processed aquatic products has become more pressing following the expansion of the Korea-EU equivalence agreement and the objective of revitalizing exports.
- As the scope of the Korea-EU equivalence agreement was expanded from 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 to all processed agri-fishery products, organic processed aquatic products—previously excluded from negotiations—were newly included in the scope of equivalence.

-
- Consequently, a regulatory gap emerged in exporting organic processed aquatic products to the EU. Moreover, the absence of EU-accredited third-party certification bodies in Korea prevents such exports.
 - The Korea-EU equivalence agreement is set to expire in 2026, and the EU is shifting from the current “Arrangement” framework to a “Trade Agreement” format in preparation for renegotiation.
 - Benefits for producers and export effects from equivalence recognition were identified.
 - Producers perceive that equivalence recognition will facilitate export growth. They cited reduced certification costs through the elimination of duplicate certifications, expanded export markets, and improved trade stability as the main reasons.
 - Over the past three years, exports of seasoned laver (gim) in Korea-EU trade have continued to increase, making it the second-largest export item to the EU. Therefore, if Korea-EU equivalence is concluded, exports of seasoned laver, the representative item among organic processed aquatic products, are expected to further expand. In particular, strong demand for eco-friendly foods in Northwestern Europe, combined with rising interest in K-Food, presents increasing opportunities for market entry.
 - On the other hand, organic aquaculture production within the EU mainly consists of mussels, salmon (Ireland), sea bass, sea bream, and trout, which are largely consumed within the EU through intra-regional trade.

- Since the scope of equivalence agreements is limited to processed foods, it appears unlikely that raw aquatic products from the EU will be imported into the Korean market on a large scale.
-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align domestic regulations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re necessary to enhance the quality of aquaculture production.
- Concluding an equivalence agreement requires institutional alignment with the partner country.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EU's organic aquaculture standards, which may serve as a negotiation reference, differ to some extent from Korea's domestic standards.
- In particular, the EU has established detailed, product-specific standards for categories such as seaweed, fish, shellfish, and mollusks, addressing areas including conversion periods, water quality (inflow and discharge management), animal welfare, permitted substances, stocking density and facilities, transportation, and sustainable management planning. In contrast, Korea's domestic standards remain broad and less differentiated by product type, particularly in areas such as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animal welfare, thus requiring institutional improvements.
- However, raising domestic regulations to international standards in a short period of time could impose an excessive burden on produc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ursue institutional improvements gradually, taking into account producers' acceptance and overall industry conditions.

-
- To secure a stable foundation for domestic organic production and support export growth, concluding equivalence agreements is essential.
 - A pre-negotiation domestic impact analysis is needed to ensure that producers do not suffer disadvantages from equivalence recognition. The required level of regulatory alignment should be identified in advance to enable timely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 A tailored support system covering certification, customs clearance, and distribution processes should be established to minimize export constraints before and after equivalence agreements take effect.
 - To maximize the benefits of equivalence recognit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products. In the short term, focus should be on items with easier organic conversion and high demand in EU markets, such as seasoned laver. In the medium to long term, the scope should be extended to include kelp, seaweed, abalone, shrimp, and fish.
 - Over the longer term, a producer-led joint respons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enhance competitiveness. This system may include cooperative certification schemes to lower costs, joint branding and marketing initiatives to increase visibility in EU markets, and export consortia to coordinate processing, packaging, labeling, and logistics support.
 - In addition, effective implementation of equivalence agreements will require strengthening government-certification body oversight systems and enhancing the auditing capacity of

certification bodies.

- Ultimately, equivalency agreements are expected to serve as a pivotal turning point—not only harmonizing regulations but also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Korea’s organic aquatic products industry and accelerating entry into the global market.

4. Expected Outcomes

1) Policy effects

- The findings of this study provide evidence-based materials for promoting equivalence agreements with major trading partners, including the EU.
-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proposed based on the regulatory consistency assessment conducted in this study provide a foundation for establishing internationally recognized organic certification standards and can serve as baseline data for institutional reforms required for the Korea–EU equivalence agreement.
- Utilization as baseline data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s for the Korea–EU organic equivalency agreement.

2) Social and economic effects

- If equivalency agreements eliminate duplicate certifications and simplify procedures, producers’ certification costs and

administrative burdens will be reduced, thereby expanding opportunities for small-scale producers to participate in organic certification.

- With the expansion of export opportunities for organic processed aquatic products to the EU market and beyond, producer income stability will improve and local economies will be revitalized.
- Equivalency agreements will also enhance consumer welfare by ensuring consumer choice for organic processed aquatic products and meeting the growing demand for eco-friendly products.

01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최근 전 세계적으로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 소비문화가 확산하면서, 유기식품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유기식품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유기수산물식품 역시 친환경 소비의 핵심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¹⁾ 전 세계 유기식품 시장은 2024년 기준 약 2,301억 달러에서 2033년까지 5,8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연평균 1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²⁾ 이는 유기식품이 새로운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EU,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자국의 유기 인증 제도에 수산물을 포함하

1) Network of Aquaculture Centres in Asia-Pacific(검색일: 2025.2.27.)

2) imarc(검색일: 2025.2.27.)

는 기준을 마련하고 자국 내 유기수산물식품 생산 및 인증을 확대하고 있다. EU는 「유기 생산 및 표시에 관한 규정(Regulation (EU) 2018/848)³⁾」을 통해 양식수산물을 유기 인증 대상으로 포함하였고,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EU의 규정과 유사한 새로운 유기농 규정을 마련하여 독자적인 인증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2021년 「일본농림규격(JAS)」에 해조류 기준을 신설하여 김, 미역 등의 유기 인증을 실시 중이다.⁴⁾

우리나라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김, 미역, 전복 등 일부 양식 수산물을 중심으로 유기 인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수산물은 동등성 인정 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유기가공수산물식품은 국내에서 유기 인증을 받았더라도 수출 시 별도의 인증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제도적 공백이 존재한다.

실제로 2016년 EU가 협정 내 가공식품의 범위를 ‘모든 가공농수산물식품’으로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등성 인정 협정에는 유기가공수산물식품이 포함되지 않아 수출업체가 인증 부담을 겪고 있다. 또한 유기가공수산물식품 수출은 EU가 인정한 제3국 인증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지만, 현재 국내에는 EU의 공인을 받은 유기 인증기관이 없다.⁵⁾ 사실상 EU로의 유기가공수산물식품 수출이 막힌 상태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제3차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2024~2028)」에서 유기수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한 동등성 인정 협정 추진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였다.

3) Regulation (EU) 2018/84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May 2018 on organic production and labelling of organic product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C) No 834/2007.

4) MAFF(검색일: 2025.6.10.)

5)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회의(2025.7.21), 민간 인증기관 유기농 티앤씨 EU 승인 절차 진행 중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유기가공수산식품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 간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 추진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요 국가의 유기수산물 인증 제도를 비교·분석하고, 국내 제도와 의 정합성 여부를 평가함으로써 국제 동등성 인정 가능성을 진단하고자 한다. 또한 동등성 협정 체결 시 기대되는 효과를 파악하고, 정책 추진의 실익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아울러, 동등성 인정 협정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정책 적 요구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3. 연구 내용

본 연구의 범위는 ‘유기가공수산식품’으로만 제한하였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는 동등 성 인정 대상 품목 범위를 ‘유기가공식품’으로 명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범 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동등성 인정을 신청한 해당 국가의 정부와 협의하 여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한 유기식품 동등성 협정의 대상은 모두 유기가공식품에 한한다. 특히 유기 원물의 경우, 상대 국과의 유기 생산 기준과 차이가 크고, 기준 조화를 위해 국내 인증 기준과 관련 제도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동등성 인정 협상의 실현 가능성이 작다.

본 연구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방법론과 선행연구, 동등성 인정의 개념을 설명하여 본 연구의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유기수산물식품의 개념과 범위를 정리하고, 국내 유기수산물식품 생산 및 인증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유기수산물 인증 제도와 유기가공수산물식품의 동등성 인정 제도를 중심으로 관련 제도를 검토하여, 향후 국제 동등성 인정에 필요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동등성 인정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 농업 부문과 국외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수산물을 포함한 동등성 제도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특히 EU, 영국, 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등성 협정의 범위 등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가 향후 동등성 협정을 체결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유기수산물식품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유기가공수산물식품 생산·인증 실태와 수출상의 애로사항, 동등성 인정에 따른 기대효과 등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한-EU 간 유기수산물식품 인증 제도의 정합성을 비교 분석하여, 제도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또한 한-EU 생산 및 수출 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동등성 체결에 따른 효과를 추정하였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동등성 인정 추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국제 동등성 인정이 국내 생산자의 안정적인 유기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수출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정책 제언을 도출하였다.

4.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유기수산물가공식품의 국제 동등성 추진을 위한 방향성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였다. 먼저, 정책 자료, 통계 자료, 관련 법 규정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국내 유기 인증 실태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유기가공수산물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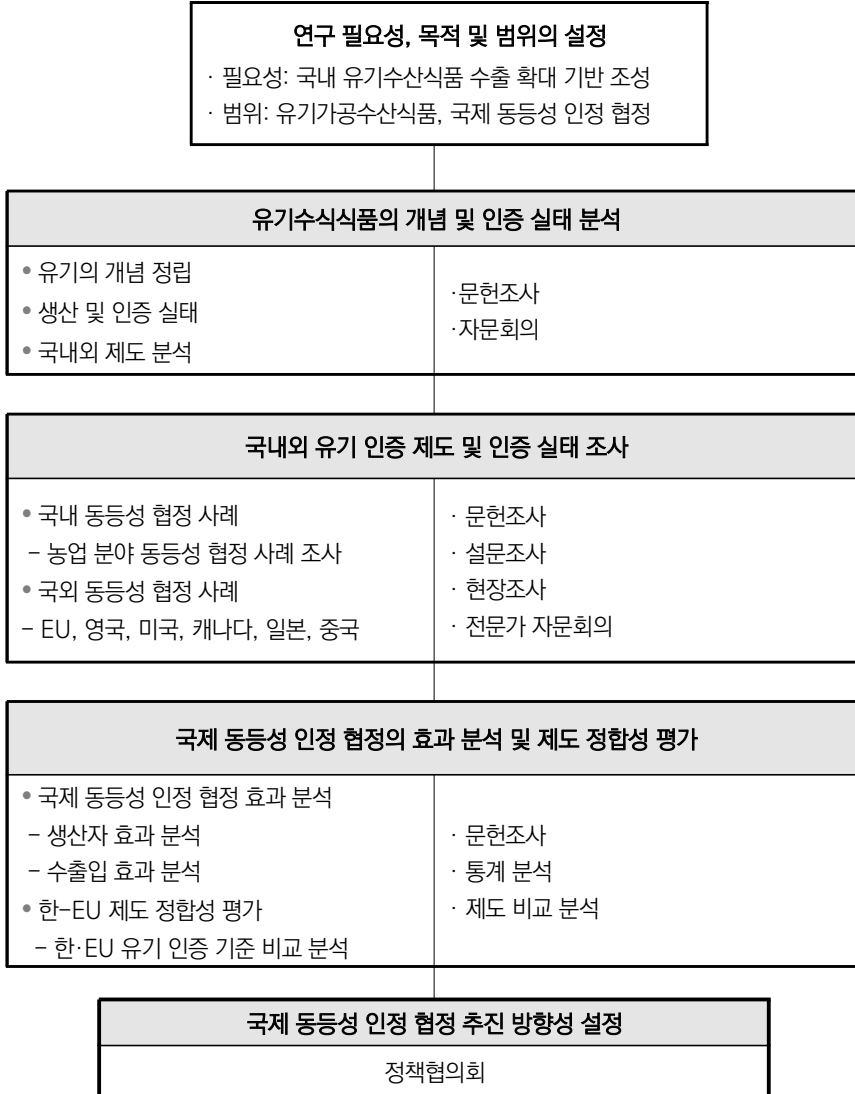
유기 인증 실태와 국제 동등성 인정의 인식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국내외 동등성 협정 현황 및 제도를 비교·분석하였다. 국내 농업 분야의 동등성 협정 사례를 조사하고, EU,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동등성 협정 체결 사례를 검토하였다.

또한 2026년으로 계획된 한-EU 동등성 협정 재협상을 고려하여 EU에 초점을 두고 동등성 협정 체결의 효과와 실익을 추정하였다. 또한 EU 유기 인증 기준과 제도 정합성을 평가하여, 제도 개선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위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 동등성 인정 협정 추진 방향과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표 1-1〉 연구 추진 체계



자료: 저자 작성

제2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 선행연구 분석

「제3차 친환경어업육성계획(2024)」⁶⁾은 유기수산물식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 동등성 협정 체결을 동 계획의 추진 과제로 제시하였다. 특히, 한-EU 간 유기농식품 동등성 협정 재협상을 염두에 두고, 향후 수산분야로의 확대를 위한 사전 준비의 일환으로 국제협약 대응 등 친환경어업육성 전담기관 마련, 한-EU 동등성 협정 추진 등을 제시하였다. 동 계획은 단순히 유기식품 인증 제도 개선에 그치지 않고, 동등성 협정 추진을 통한 무역 장벽 해소 및 유기수산물식품 산업의 수출 확대 기반 조성을 정책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박민규(2011)⁷⁾는 국내 유기식품 표시제도가 수입 유기식품에 대한 동등성 인정 제도를 결여하고 있어, 국제무역에서 기술무역장벽(TBT)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관련 법률(「친환경농업육성법」, 「식품산업진흥법」)이 국내 생산자 보호 중심으로 설계되어 수입품에 대한 인증 절차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이 CODEX 지침에 기반하여 동등성 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외국 인증을 간소하게 수용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다. WTO TBT 및 SPS 협정에 따라, 국제표준을 기술규정의 기초로 삼고, 외국 제도와 동등한 효과가 있다면 이를 수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등성 인정 제도의 도입과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CODEX 기준 기반의 제도 개선을 제안하였다.

6) 해양수산부(2024)

7) 박민규(2011)

송재일(2021)⁸⁾은 한-EU 동등성 인정 협정상 유기가공수산물식품은 협정 제외 품목이었으나, 2016년 EU의 개정으로 유기가공수산물식품도 동등성 협정의 품목에 포함되어,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였다고 하였다. 유기식품 상호 동등성 개념과 인정의 종류, 관련 국내 법률, 한-EU 동등성 인정 협정 내용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수산물 수출 활성화 측면에서 유기수산물식품(김)을 포함하는 한-EU 동등성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Demko & Jaenicke(2018)⁹⁾는 미국과 EU 간 유기식품 동등성 협정의 체결이 미국 유기농산물 수출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유기식품 인증 제도의 국제 상호 인정이 무역에 미치는 정책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동등성 협정이 발효된 이후 미국의 EU 유기식품 수출이 분기당 약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증 비용 감소, 행정 절차 간소화 등 동등성 협정이 중소 생산자에게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Zhang(2025)¹⁰⁾은 유기농 식품의 무역에서 동등성 인정 협정(Organic Equivalency Agreements, 이하 OEA)이 수출국의 시장 점유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미국, 캐나다, 덴마크 등 주요 유기농 수입국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9년까지의 무역 데이터를 바탕으로 OEA가 실제 무역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수입국이 특정 국가와 OEA를 체결할 경우, 해당 수출국은 비체결국에 비해 유기농 제품의 시장 점유율을 유의미하게 높이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시장 내 경쟁국과 유사한 유기농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수출국일수록 OEA의 효과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 간 대체 가능성이 높을수록 OEA 체결 여부가 수출 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8) 송재일(2021)

9) Demko & Jaenicke(2018)

10) Zhang(2025)

2. 본 연구의 차별성

기존 연구들은 유기식품에 한정하여 인증 기준, 제도 비교, 동등성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일부는 국제 규범과의 정합성, WTO 협정에 따른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제기하였으나, 유기수산물식품 산업의 실태 및 국제 동등성 인정의 정책적·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유기가공수산물식품에 초점을 두고 국제 동등성 인정 확보를 위한 국내외 제도 분석, 생산자 실태조사, 생산자 및 교역 효과,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평가를 시도하였다. 또한 국내 유기수산물식품 생산자와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생산 및 인증 현황, 애로사항 등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 동등성 추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유기수산물식품의 국제 동등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정책적·산업적 요건을 분석함으로써,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유기인증 기준의 제도 개선과 유기수산물식품의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표 1-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 분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 과제명: 제3차 친환경어업육성계획 • 연구자(연도): 해양수산부 (2024) • 연구목적: 법정계획인 제3차 친환경어업 육성계획 수립	• 문헌조사 • 설문조사	• 친환경어업 여건 분석 • 제3차 친환경어업 육성계획 수립 • 전략별 추진과제 도출 • 세부과제별 로드맵 및 투융자 계획 수립
	2 • 과제명: 수입 유기식품 동등성 인정에 관한 연구 • 연구자(연도): 박민규(2011)	• 문헌조사 • 법령 분석 • 제도 비교 분석	• 한국 유기식품 인증 제도 현황 • 국제적 유기식품 동등성 인정 필요성

구 분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연구목적: 수입 유기식품의 동등성 인정 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주요 국가의 유기식품 동등성 인정 법제를 비교 분석하여 한국의 법제 개선 방안을 제시	- 국제기준 및 사례연구 - 전문가 자문	- 주요국 유기식품 동등성 관련 법제 - 한국의 법제 개선 방향 및 정책적 시사점
3	- 과제명: 유기수산물공식품 분야 글로벌 법제 연구-동등성인정협정을 중심으로- - 연구자(연도): 송재일(2021) - 연구목적: 유기가공수산물 분야 동등성 인정 협정 관련 글로벌 규범 현황 조사	- 문헌조사 - 법령 분석	- 국제식품안전성관리체계에서 동등성 인정 - 한·유럽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 - 유기가공수산물에 대한 동등성 인정
4	- 과제명: Impact of European Union-U.S. Organic Equivalency Arrangement on U.S. Exports - 연구자(연도): Demko & Jaenicke(2018) - 연구목적: 2012년 발효된 EU-미국 간 유기식품 동등성 협정이 미국의 유기 농식품 수출에 미친 영향 분석	- 문헌조사 - 통계분석	유기동등성 협정은 인증 비용 절감 (약 250달러 수준)으로 소규모 생산자에게 실질적 편익 제공, 특히 중복 인증 제거에 따른 거래 비용 감소
5	- 과제명: Assessing the Impacts of Equivalency Agreements in International Organic Trade - 연구자(연도): Zhang(2025) - 연구목적: 유기농 동등성 협정 (Organic Equivalency Agreement, OEA)이 국제 유기농 무역에 미치는 영향	- 구조모형 - BLP 방법 - 대안 시뮬레이션 분석	- OEA를 체결한 국가들은 유기농 제품 수출 시장에서 점유율이 증가하는 경향 - 특정 국가가 OEA를 체결하면, 유사한 기후 및 농업 환경을 가진 경쟁국들의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 - 시뮬레이션 결과, 미국이 비OEA 국가와 OEA를 체결할 경우, 해당 국가의 유기농 제품 수출이 평균 6.5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 - 기존 OEA 협정이 철회될 경우, 해당 국가의 유기농 제품 수출이 평균 90% 감소

구 분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차별성	-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유기 식품 및 유기수산물 인증 제도의 개별적인 분석에 집중(예: 국내 인증 제도 개선, 소비자 신뢰도 분석, 동등성 인정의 경제적 효과 등) - 개별 국가(한국, EU, 일본 등)의 인증 제도 또는 특정 소비자 시장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주로 개별 제도의 특징 및 영향 분석에 초점	- 문헌분석 - 법률 비교 - 설문조사 - 효과 분석	- 국내 유기수산물 실태 조사 - 국내외 유기수산물 기준 및 동등성 인정 비교 분석 - 유기수산물 생산자 조사(생산, 수출, 인증 애로사항, 동등성 인정 인식 등) - 국제 동등성 인정 대응 방안 제시 (EU를 중심으로)

자료: 저자 작성

02

유기식품산업의 현황 및 제도

제2장에서는 유기수산식품의 현황과 제도를 검토하였다. 먼저, 제1절에서는 유기수산식품의 개념과 범위, 제2절에서는 국내 유기수산식품 생산 및 인증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어 제3절에서는 유기수산식품 인증 제도를 정리하고 국제 동등성 관련 규정을 검토하였다.

제1절 유기수산식품 개념 및 범위

1. 수산식품의 개념 및 범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르면, 수산물은 ‘수산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 정의되며, 수산식품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수산물 또는 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로 정의된다. 또한, 『「식품의기준및규격」에서정하는가공식품이란?』에 따라서 수산가공식품은 ① 수산물에 식품첨가물 또는 다른 식품

을 가하였거나, ②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또는 현격한 성분 변화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가공하였거나, ③ 여러 가공 공정을 거쳐 위해 발생 우려가 있거나 섭취 시 세척, 가열조리 등의 과정 없이 바로 또는 양념만을 혼합하여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¹¹⁾

〈표 2-1〉 수산가공식품의 유형

분류	식품 유형
어육가공품류	• 어육을 주원료로 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 어육살, 연육, 어육반제품, 어묵, 어육소시지 등
젓갈류	• 어류, 갑각류, 연체류, 극피류 등에 식염을 가하여 발효 숙성한 것 또는 이를 분리한 여액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젓갈, 양념젓갈, 액젓, 조미액젓
건포류	• 어류, 연체류 등의 수산물을 건조한 것이거나 이를 조미 등으로 가공한 조미건어포, 건어포 등
가공김 (조미김 또는 구운김)	• 마른김(얼구운김 포함)을 굽거나, 식용유지, 조미료, 식염 등으로 조미·가공한 것
한천	• 우무를 동결탈수하거나 압착 탈수하여 건조시킨 식품
그 밖의 수산물가공품	• 수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

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검색일: 2025.9.12.)

다만,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임, 비가식 부위를 제거하고 단순히 건조한 것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고 다른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제품, 냉동어류를 해동 후 내장 제거, 염장, 반건조, 건조한 제품으로 처리, 유통, 소비되는 과정에서 위해 발생 우려가 적은 경우 등은 가공식품이 아니라 단순 처리 수산물에 해당한다.¹²⁾

1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공식품의 유형'(검색일: 2025.9.11.); 식품의약품안전처(2016), pp. 8-10.

12) 식품의약품안전처(2016), pp. 8-10.

〈표 2-2〉 단순처리 수산물 유형

식품 유형
장어나 콩치 등과 같은 어류의 비가식 부위를 제거하여 세척, 동결, 절단, 진공 포장한 제품
해파리를 단순 절단하여 소금을 가한 제품
고등어를 세척, 머리 및 내장 제거 후 소금을 뿌려 진공 포장한 제품
식용논우렁이를 단순히 자숙한 후 냉장 또는 냉동한 것이나 다른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되거나 가열조리 후 섭취하는 제품
홍합을 선별, 자숙, 냉각, 탈각, 급속냉동, 충전, 포장한 것이나 다른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되거나 가열조리 후 섭취하는 제품
활전복 100%를 세척, 탈각, 내장 제거, 세척 자숙 후 건조한 것이나 원형이 보존된 상태의 제품으로 다른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거나 가열 조리 후 섭취하는 제품
마른미역 또는 마른김
멸치를 데쳐서 건조한 제품
콩치, 청어, 오징어, 명태의 비가식 부위를 제거하고 다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게 단순히 건조한 제품
냉동어류를 해동 후 내장 제거, 염장, 반건조 등 가공처리를 하였으나, 유통, 소비과정에서 위해 발생 우려가 적은 제품 ex) 자반고등어, 코다리(반건조), 오징어(반건조)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2016), pp. 9-10.

2. 유기수산식품의 개념 및 범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2조(정의)에 따르면, ‘친환경농어업’은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화학자재(합성 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여 농업 또는 어업을 수행하는 방식이며, 이러한 방식으로 생산된 농수산물(친환경농수산물(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로 인정된다. 반면 유기농수산물은 친환경농수산물의 하위 개념이면서도 보다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유형으로 정의된다. ‘유기’는 생물다양성과 토양 비옥도를 증

진하기 위해 허용 물질¹³⁾만을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며 유기 인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표 2-3〉 친환경 식품 정의 근거 규정

구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친환경농어업	① 친환경 농어업 :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어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친환경농수산물	친환경농어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유기농수산물, 나. 무농약농산물, 다.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이하 “무항생제수산물등”이라 한다)
유기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의 비옥도를 유지하여 환경을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허용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 하고, 제19조제2항의 인증기준에 따라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이하 “유기식품등”이라 한다)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일련의 활동과 그 과정을 말한다.
유기식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수산식품 중에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 및 수산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을 말한다.
비식용유기가공품	사람이 직접 섭취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여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되는 가공품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용기·포장,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은 제외
무농약원료가공품	무농약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허용물질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자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3)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허용물질)

유기식품은 「수산물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수산물¹⁴⁾ 중에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이 해당한다. 유기수산물식품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유기식품 등의 인증 대상과 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유기수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4조에 따라서 인증대상¹⁵⁾은 유기수산물(식용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양식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유기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하는 식품)에 한한다.

〈표 2-4〉 친환경 인증 종류 및 인증표시

인증명(등록대상)	주요 내용	인증표시
유기수산물 (양식수산물)	사육자재(사료, 약품), 복지 및 질병관리, 양식공정 등을 관리하고 허용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여 생산하는 수산물	
유기가공식품 (수산물 가공식품)	유기수산물 및 유기식품(첨가물)을 원료로 하고 생산 시설, 가공공정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생산되는 수산 가공식품	
무항생제 수산물 (해조류 외 양식수산물)	양식환경을 관리하고 항생제 사용 시 지정 휴약기간의 2배 준수 및 잔류량이 법적 허용 기준의 1/2 이하인 수산물	
활성처리제 비사용 (양식 해조류)	양식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잡조 및 병해 제거를 위해 유기산 등 화학물질이나 활성처리제를 사용하지 않은 수산물	

자료: 해양수산부(2024), p. 6.

14)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수산물 또는 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15)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유기식품의 인증대상), 제9조(유기식품의 인증기준)

제2절 유기수산물 현황

1. 생산 현황

국내 친환경 수산물의 생산량은 공식 통계로는 집계되지 않으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내부 자료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다. 친환경수산물 출하량은 2020년 47,871톤에서 2023년 108,347톤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04년 기준, 106,959톤이 출하되었다. 인증 품목도 2020년 12개 품목에서 2024년 25개 품목으로 확대되었으며, 인증업체 수는 같은 기간 동안 83개소에서 322개소로 증가하였다. 사후관리 실적은 200개소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표 2-5〉 친환경 수산물 인증 현황

구분	친환경 수산물 출하량	인증 품목 수 (중복 포함)	인증 업체 수	사후관리 실적 (업체조사)
2020	47,871톤	12	83	117
2021	54,854톤	17	96	95
2022	83,179톤	19	194	175
2023	108,347톤	25	275	200
2024	106,959톤	25	322	291

주: 출하량은 자원별, 인증기관별 제출 실적
자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내부자료(2024년 9월 기준)

2. 인증 현황

2025년 6월 기준, 가공되지 않은 수산물 중에서 김, 다시마, 매생이, 미역, 전복, 활전복, 톳, 파래가 유기수산물 인증을 취득했으며, 가공식품은

구운김, 마른김, 조미김, 조미김(자반), 액상차(다시마), 마른다시마, 마른다시마가루, 간미역, 마른미역, 마른자른미역이 인증을 받았다. 유기수산물 인증 건수는 169건¹⁶⁾이며, 이 중 김이 37%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미역, 다시마 순으로 나타났다. 유기가공식품 인증은 102건이며, 김(구운김, 마른김, 조미김, 조미김(자반))이 전체 인증의 80%를 차지한다.

〈표 2-6〉 유기 인증 현황 (2025년 6월 기준)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품종	김(63건) 다시마(42건) 매생이(2건) 미역(48건) 전복(9건) 툰(1건) 파래(4건)	간미역(8건) 구운김(23건) 마른김(24건) 마른다시마(5건) 마른다시마가루(2건) 마른미역(10건) 마른미역가루(1건) 마른자른미역(3건) 액상차(다시마)(1건) 조미김(25건)
계	169건	102건

자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검색일: 2025.6.10.) 참고하여 저자 정리

16)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검색일: 2025.6.10.)

제3절 유기 인증 및 동등성 제도

1. 유기 인증 제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은 친환경 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며,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법령으로는 시행령과 (해양수산부 소관)시행규칙이 있으며, 시행령은 인증의 유기식품 등 인증의 소관¹⁷⁾, 인증기관 지정 등의 평가 등을 규정하며, 시행규칙은 유기식품의 인증 대상, 인증 기준, 허용 물질, 인증 신청 등을 규정한다. 특히 시행규칙 [별표 3]은 유기수산물 생산자, 유기가공식품 제조·가공자, 유기식품 취급자의 유기 인증 심사사항 및 구비요건을 제시한다.

또한 해양수산부 고시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를 통해 보다 세부적인 기준과 운영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유기가공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해양수산부 고시)은 외국산 유기 원료의 인정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은 인증기관의 자격 및 관리, 인증절차의 세부 기준, 동등성 인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17) 유기수산물의 비율이 유기농산물·축산물·임산물의 비율보다 큰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표 2-7〉 유기수산물 인증 관련 규정

관련 법류	주요 내용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 농어업의 발전과 유기식품의 인증 및 유통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개별 시행령·시행규칙, 고시·지침 등의 상위 법적 근거로 작용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해양수산물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해양수산물 소관 사항 규정)
「유기가공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해양수산물 고시)」	「해양수산물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별표 3 제3호나목1)다)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가공원료로 사용 가능한 외국에서 생산, 제조·가공된 유기가공식품을 정함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제29조제4항 및 제31조의2제6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5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4조제4항, 제18조 제4항, 제34조의2, 제35조제7항, 제38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

자료: 상기 표에 명시된 법률을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2. 인증 절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에 따라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유기식품 인증 업무를 수행한다. 유기 인증 신청 절차는 서류 접수, 서류심사, 현장심사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개인, 법인, 단체)는 가장 먼저 인증 신청서 및 첨부서류¹⁸⁾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지정 인증 기관¹⁹⁾에 제출해야 한다.

〈그림 2-1〉 유기 인증 신청 및 절차



- 민원처리기간 : 2개월

자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검색일: 2025.9.10.)

인증 심사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지정한 인증심사원²⁰⁾을 통해 이루어진다. 인증 기준은 「해양수산물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허용물질, [별표 3] 유기식품(유기수산물의 생산자, 유기가공식품의 제조·가공자,

18) 생산계획서 또는 제조가공취급계획서, 경영 관련 자료,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생산, 제조·가공,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 있는 경우)

19) (유)위써트인증원, (주)컨트롤유니온코리아, (유)오가닉티앤씨

20) 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인증심사원을 지정하여 인증 심사 실시

유기수산물 또는 유기가공식품 취급자)의 인증 기준을 따른다. 심사를 통해 인증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유기수산물’ 또는 ‘유기가공식품’으로 표기가 가능하다.

또한 인증품의 사후관리를 위해 생산과정조사(반기 1회 또는 반기 2회)²¹⁾, 유통과정조사(반기 1회)²²⁾, 불시 심사²³⁾가 이루어지고 있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이며, 유효기간 이후에도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갱신·연장 신청을 해야 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림 2-2〉 유기 인증 갱신·연장 인증 절차



자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검색일: 2025.9.10.)

- 21) 경영 관련 자료 기록 여부, 인증품 출하내역 여부, 인증품 표시사항 적정 여부, 금지물질 구입·보관 및 사용 여부, 이행계획서 실행 여부, 원료 수산물을 생산자가 직접 출하하였는지 여부(제조·가공자 및 취급자의 경우), 기타 인증 기준의 준수 여부
- 22) 인증품 표시사항 적정 여부, 구매내역 및 판매내역 일치 여부, 산지에서 실제 출하 여부, 취소·표시 정지 중인 인증품 유통 여부, 인증품이 아닌 제품 혼합 여부
- 23)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유통되는지 여부, 표시사항 적정 여부

3. 유기수산물식품 동등성 제도

1) 동등성 제도

동등성 인정이란 외국 정부 또는 그 나라의 인증기관이 운용하는 유기식품 인증 체계가 우리나라 제도와 같은 수준(또는 그 이상)의 원칙과 기준, 사후관리를 확보했다고 국가 간에 상호 검증·합의하여 별도의 국내 인증 절차 없이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이다.²⁴⁾ 동등성 제도는 WTO/TBT 협정 제2.7조와 CODEX GL-32가 기술규정의 상호 인정을 권고하고 있어 국제무역 관점에서도 필수 과제로 여겨져 왔고, 국내에서는 수입 원료의 원활한 조달·통상마찰 예방을 위해 2011년부터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됐다.²⁵⁾

유기식품의 동등성 인정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²⁶⁾에 규정되어 있다. 동등성 인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유기가공식품의 품목 범위²⁷⁾, 동등성을 인정한 국가 또는 인증기관의 의무와 사후관리 방법, 유기가공식품의 표시 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다룬다.

2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 제2조(제2024-14호) 참조

25) 김창길 외(2011), pp. 34-39.

26) 제25조(동등성 인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에 대한 인증을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정부 또는 인증기관이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의 적합성을 보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인증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검증을 거친 후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유기가공식품 인증과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7)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동등성 인정 대상 품목 범위),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유기가공식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동등성 인정을 신청한 해당 국가의 정부와 협의하여 정한다.

〈표 2-8〉 동등성 관련 규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물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5조(동등성 인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에 대한 인증을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정부 또는 인증기관이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의 적합성을 보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인증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검증을 거친 후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유기가공식품 인증과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동등성을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는 <u>유기가공식품의 품목 범위, 동등성을 인정한 국가 또는 인증기관의 의무와 사후관리 방법, 유기가공식품의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u> <개정 2013. 3. 23.>	• 제20조(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기준) • 제3조제1항에 따른 허용물질 • 제9조에 따른 유기식품의 인증기준 • 제11조에 따른 인증심사 절차 • 제27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 제35조에 따른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 제21조(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 절차) • 제22조(동등성 인정 대상 품목 범위) -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유기가공식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동등성 인정을 신청한 해당 국가의 정부와 협의하여 정한다. • 제23조(동등성을 인정받은 국가의 의무와 사후관리) • 제24조(동등성 인정 내용 게시) 1. 국가명 2. 인정 범위(지역·품목 및 인증관 범위 등) 3. 동등성 인정의 유효기간 4. 동등성 인정의 제한조건 등 협정 전문(全文) • 제25조(동등성 인정제품에 대한 유기표시)

자료: 상기 표에 명시된 법률을 참고하여 재작성

동등성 인정 및 관리의 실제 업무 이행은 별도 고시²⁸⁾를 통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였다. 동등성 인정 절차는 해당 국가의 정부가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하면, 인증 제도의 기준

28)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

동등성 여부를 검토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동등성 인정 대상 품목의 범위는 신청 국가와의 협의를 통해 정하며, 동등성 인정을 받은 국가는 국내에 수출하는 유기가공식품이 국내 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리할 의무가 발생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국내 유통 중인 동등성 인정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할 수 있으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인증표시의 제거 또는 정지, 판매금지, 표시사항 변경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동등성 인정 협정이 체결되면, 해양수산부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국가명, 인정 범위(지역·품목 및 인증기관 범위 등), 유효기간, 제한조건 등 협정 전문(全文)을 즉시 게시해야 한다. 또한 동등성 인정 제품의 유기표시 방법은 국내 제품과 같은 방식으로 관리된다.

〈표 2-9〉 동등성 협정 추진 절차

협정 추진 절차: 사전협의를 → 신청서 교환 → 인정기준 비교표 상호검증 → 현장검증 → 차이점 해소방안(제한조건 설정 등) 상호협의를 →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 결과 검토 → 협정 체결

자료: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검색일: 2025.8.30)

한편, 동등성 인정에 대한 고시²⁹⁾가 제정 및 시행되었으나 수산물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동등성 인정은 아직 체결된 바 없다. 수산물이 아닌 농산물 및 축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³⁰⁾의 경우, 한-미(2014년 발효), 한-EU(2015년 발효), 한-영(2021 발효), 한-캐나다(2023 발표)³¹⁾ 동등성 인정 협정이 체결되었다.

29) Ibid.

30) 양국 제도에 따라 유기 인증을 받은 제품 중 양국 내에서 최종 가공되고 95% 이상 유기원료를 함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검색일: 2025.5.13.).

31) 수산물 원료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유기수산물의 비율이 전체 유기원료의 50% 이하인 경우는 동등성 인정 대상에 포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검색일: 2025.5.13.).

유기가공수산물식품은 동등성 협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016년 EU 측이 우리 측과 별도의 협의 없이 개정하여 (기존) 농산물가공식품에서 모든 가공농수산물식품으로 확대하였다. 따라서 EU로 주로 수출되는 조미김은 수산물을 원료로 한 유기가공식품이지만, 동등성 협정 체결 당시 협정 적용의 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였다.

〈표 2-10〉 EU의 동등성 협정 대상 변화

구분	변경 전	변경 후(2016.10.14.)
C	• Aquaculture products and seaweeds	• Unprocessed aquaculture products and algae
D	• Processed agriculture products for use as food	• Processed agriculture products for use as food

자료: European Commission(검색일: 2025.6.20.)

협정 당시, 동등성 인정 범위가 농산물 및 축산물 가공식품에 한정되어 논의되었고, 조미김과 같은 유기가공식품은 해당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조미김은 국내에서 유기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EU 수출 시 별도의 EU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면서 수출업체에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현재 국내에는 EU의 공인을 받은 인증기관이 존재하지 않아, 조미김을 포함한 유기가공식품의 EU 수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한-EU 상호 동등성 인정이 2026년에 만료되어 재협상을 앞두고 있다.³²⁾

32) European Commission(검색일: 2025.6.20.)

제4절 시사점

국내 유기수산물식품 인증 제도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생산자·가공자·취급자 각각에 대해 유기 인증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 유기 인증 대상 품목은 김, 다시마, 전복 등 해조류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수산물의 국내 유기 인증이 확대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상호 인정을 받은 사례는 없다. 농업의 경우, EU, 캐나다, 미국, 영국 등과 동등성 협정을 체결하여 상대국의 규정에 따른 인증을 별도 획득할 필요 없이 유기로 표시하여 수출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수산물의 경우, 유기가공식품 형태로 수출 시 인증심사기관의 인증을 통해서 수출되었으나, EU의 경우 동등성 협정 시 고려되지 않았던 수산물이 동등성 협정 체결 후 EU의 갑작스러운 변경으로 유기가공수산물식품이 유기가공식품 범위에 포함되면서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였다. 또한 국내에는 EU가 인정한 제3국 인증기관이 존재하지 않아, EU 수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동등성 협정 미체결로 인한 제도적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서, 유기가공식품(수산물)의 국제 동등성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이어지는 제3장에서는 EU,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의 유기식품 동등성 협정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유기수산물식품의 국제 동등성 추진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03

유기식품 동등성 협정 사례 분석

제3장에서는 국내외 유기식품 동등성 협정 사례를 분석하였다. 먼저, 제1절에서는 농업 부문의 유기식품 동등성 제도와 동등성 협정 체결 사례를 검토하였으며, 제2절에서는 EU, 영국, 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를 중심으로 동등성 협정 체결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비교 분석을 통해 국내외 동등성 협정의 특징을 정리하고, 향후 수산 부문에서 동등성 협정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1절 농업 부문 유기식품 동등성 제도 및 사례

1. 유기식품 동등성 제도

2013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동등성 인정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듬해인 2014

년에는 각 관할 부처 및 담당 기관 소관의 하위 법령이 마련되면서 유기식품 동등성 제도가 도입·운영되었다.

농업 부문에서의 유기식품 동등성 규정은 수산 부문과 마찬가지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다. 다만, 동등성 인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품목 범위, 사후관리, 표시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시행규칙³³⁾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부문’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행정적 명확성을 확보한 법체계를 구축하였다. 동법 및 하위 법령의 실제 이행에 관한 내용은 별도 행정규칙³⁴⁾을 통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실효성과 행정 부담 경감을 동시에 달성하였다.

〈표 3-1〉 유기식품 동등성 제도 관련 법체계

법률	시행규칙(해양수산부)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 제25조(동등성 인정)	• 제20조(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기준) • 제21조(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 절차) • 제22조(동등성 인정 대상 품목 범위) • 제23조(동등성을 인정받은 국가의 의무와 사후관리) • 제24조(동등성 인정 내용 게시) • 제25조(동등성 인정제품에 대한 유기 표시)	• 제26조(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기준) • 제27조(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 절차) • 제28조(동등성 인정 대상 품목 범위) • 제29조(동등성을 인정받은 국가의 의무와 사후관리) • 제30조(동등성 인정 내용 게시) • 제31조(동등성 인정제품에 대한 유기 표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조하여 작성

비록 관할 부처 이원화로 수산과 농업 부문에 적용되는 하위 법령은 상이하나, 적용 범위를 ‘유기가공식품’에 한정하였다는 점, 동등성 인정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사후관리, 표시 방법, 정보 공개 등 대부분의 내용은 유사

33)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

하게 구성되었다. 다만, 유기식품 인증 동등성 인정에 관한 권한과 업무의 위임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있다는 점과 상세한 동등성 인정 기준, 유통·표시·사후관리 등 업무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의 특성에 맞게 규정된 부분이 존재한다.

먼저, 농업 부문의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기준은 다섯 가지 영역에서 국내 기준과의 실질적 등가성이 확보·입증되어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에 따른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표 3-2>와 같다.

<표 3-2> 농업 부문 유기가공식품 인증 동등성 인정 기준

구분	주요 내용
허용 물질	• 신청국의 허용물질 종류·사용조건·선정절차가 CODEX GL-32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해야 함 • 국내 규칙 별표 1·2(허용물질·선정절차)와 비교했을 때 위해 수준이나 관리 강도가 열위가 아니어야 함
인증 기준	• 원재료 함량, 가공공정 관리, 기록 관리 등 시설·위생 기준이 규칙 제11조의 요구 사항과 동등하거나 상위 수준 여부를 검증
인증 심사 절차	• 심사방법·빈도·판정 기준이 ISO/IEC 17065에 부합하고, 규칙 제13조(서류·현장심사 절차)와 비교해 투명성·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함
인증기관 지정 기준	• 인증기관의 조직·인력·품질경영체계가 ISO/IEC 17011 수준이며, 규칙 제33조(지정요건)와 실질적 차이가 없어야 함
사후관리	• 인증품·사업자에 대한 정기점검·시판품 검사·위반 처분 체계가 규칙 제45조(연 1회 이상 현장·시판 조사)와 동등 이상이어야 함
기타	• 상기 다섯 항목에서 모두 동등성이 확보되어야만 협정 체결이 가능하며, 일부 항목이 미흡할 경우 '제한조건'(특정 품목 제외)을 부가해 인정 범위를 좁힐 수 있음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 참조하여 작성

동등성 인정 절차는 해당 국가의 정부가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하면, 서류 비교표 작성 및 평가, 보고 절차를 거쳐 상호주의 원칙 아래에 정부 간 동등성 협정을 체결한다. 이때, 동등성을 신청하는 외국 정부는 허용 물질 목록, 인증 기준 전문, 심사·처분 절차 등 자료

를 제출해야 하며, 우리 정부는 필요시 전문가 파견 또는 제3기관 위탁을 통해 인증기관과 감독기관의 운영 실태 등 현지 시스템을 실사할 수 있다.

동등성 인정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국가명, 범위(품목·지역·인증기관 등), 유효기간, 제한 조건 등 협정 전문(全文)을 즉시 게시하고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한, 동등성 인정의 모든 단계는 ISO 17065/17067의 동등성 평가 절차 논리에 맞춰 투명성과 일관성을 늘 확보해야 한다.

동등성 인정을 받은 제품이 국내 유통될 때는 통관 단계, 표시 요건, 유통 사후관리 및 지속적 정합성 확인 등이 이루어진다. 먼저, 통관 단계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 협업하에 필요시 서류 확인 및 위험성 평가, 사료 검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유기 인증 표시의 경우, 주표시면에는 국내 ‘유기’ 문구 대신 ‘○○국 동등성 인정제품’ 등의 용어와 인증 번호를 병기하고, 국내 인증 로고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연 1회 이상 시판품 조사 및 인증 사업자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기준 미달 시 판매정지·회수·인정취소·형사고발을 포함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만일, 협정 상대국의 기준·절차가 개정되면 반드시 다른 상대국에 통보해야 한다.

2. 동등성 협정 체결 사례

국내 유기농식품 동등성 협정에 관한 법체계가 완성된 이후, 현재까지 총 4건의 국제적 동등성 인정 협정을 체결하였다. 2014년 7월 발표한 한-미 동등성 인정 협정을 시작으로, 이듬해인 2015년에는 한-EU, 2021년에는 한-영국, 2023년에는 한-캐나다 간의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이 체결되었다.

상기 동등성 인정 협정은 유기가공식품 범위와 기준, 상호 문서화 절차, 관리감독 거버넌스, 라벨링 호환성 등의 공통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네 협정 모두 유기원료 95% 이상 함유한 제품만을 대상으로 하고, 최종 가공 국적 제한 및 금지된 물질(농약, 방사선 조사, GMO 등)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였다. 또한, 전자 수입증명서 체계 구축으로 위·변조 방지 및 통제 확보, 용이한 사후추적성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ISO 17011 표준을 활용하여 양국 인증기관의 정기적인 관리·감독 시행과 지속적인 보고 및 현장점검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였으며, 양국의 유기 로고 병행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양국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다만, 국가별 동등성 인정 협정은 제한조건 형태나 협정 기간, 표준 체계, 관리시스템 등에서 차이가 있어 행정 절차상의 유의점이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이 요구된다. 제한조건과 관련하여 미국과 캐나다는 특정 원료·공정(항생제 과수·파라핀꿀·생장조절제 등)에 대한 제한조건을 명시하지만, EU와 영국은 일반적인 금지물질 사용 규정에 대해서만 명시하였다. 유효기간의 경우, EU와 영국은 각각 2026년과 2028년까지로 명확한 종료일을 지정하였다. EU의 경우, 초기 협정에서는 무기한 연장 체결임을 밝혔으나, 이후 EU 측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2025년과 2026년(유예기간 포함)까지로 두 차례 종료일이 변경된 바 있다.³⁵⁾ 미국과 캐나다는 별도 협의 시까지 무기한 협정을 유지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또한, 국가별로 각기 다른 수입증명서 관리시스템을 운용하여 절차상의 차이가 발생한다. 동등성 인정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이라 하더라도 수입 시 국가별로 구축하고 있는 수입증명서 관리시스템에서 요구하는 형태와 내용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밖에, 동등성 협정 체결 모니터링 등에서도 차이가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작업반’ 형태의 실무 협의

35) European Commission(검색일: 2025.6.20.)

중심의 협정이 체결되지만, EU는 공동협약체 설치를 통한 연례 보고를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표 3-3〉 농업 부문 유기농식품 동등성 인정 협정 현황

구분	미국	EU	영국	캐나다
발효일	2014.7.1.	2015.2.1. *2018년 재체결	2021.1.1.	2023.11.1.
유효기간	별도 협의 시까지	2026.12.31.	2028.12.31.	별도 협의 시까지
법적근거	• 미국 유기식품생산법 • 국가유기프로그램(NOP)	• (EC) No 852/2004, • (EC) No 834/2007 • (EC) No 889/2008 • (EU) 2018/848 • COM(2022) 728 final	• Organic Products Regulations 2009 (SI 2009/842) • 유기식품 표시·광고 관련 가이드라인 • EU 규정 적용	• 캐나다 식품검사법 • 캐나다 식품안전법
인정범위	• 95 % ↑ 유기원료 • 美·韓에서 최종 가공한 식품	• 95 % ↑ 유기원료 • EU·韓에서 최종 가공한 식품	• 95 % ↑ 유기원료 • UK·韓에서 최종 가공한 식품	• 95 % ↑ 유기원료 • CAN·韓에서 최종 가공한 식품
제한요건	• (한국) 항생제 처리한 사과, 배 • (미국) 항생제 사용 축산원료	• 제품-특정 제외 없음 (일반 금지물질 준수)	• 제품-특정 제외 없음 (일반 금지물질 준수)	• 파라핀 함유 양봉제품 • 성장조절제 사용 원료 제품 금지
표시로고	양국 로고 병행 사용 가능	양국 로고 병행 사용 가능	양국 로고 선택 사용 가능	양국 로고 병행 사용 가능
관리시스템	미국 유기 인증 프로그램(NOP 2110) 수입증명서(美 인증 기관 발급)	TRACES-COI (EU 인증기관)	Great Britain COI(UK 인증기관)	CFIA Export Certificate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입증명서
감독협력	양국 '유기작업반' 설치, 상호 현장평가 허용	공동협약체 및 연례보고 의무	실무 작업반, 연례 보고	실무 작업반, 5년 내 협정 검토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검색일: 2025.5.13.) 참고하여, 저자 재정리

제2절 주요국의 동등성 제도 및 사례

1. EU

1) 동등성 협정

EU는 국제 동등성 인정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동등성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인정된다. 첫 번째는 유기제품 교역 협정(Agreements on trade in organic products)을 통해 동등성이 인정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국가로는 스위스, 영국, 칠레가 있다. 두 번째 방식은 동등성 인정 체결³⁶⁾ 방식이다. 그러나 동등성 인정 방식은 2026년 12월 31일부로 일괄 만료되며³⁷⁾, 이후에는 EU와의 교역 협정을 기반으로 한 체계로 전환될 예정이다.³⁸⁾³⁹⁾

2) 동등성 협정 체결 현황

EU는 유기 제품 수입 경로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는 EU의 생산 및 표시 기준을 그대로 따르며 EU가 승인한 인증기관(inspection and certification bodies)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이고, 둘째는 EU와 양자

36) Council Regulation (EC) No 834/2007 of 28 June 2007 on organic production and labelling of organic products and repealing Regulation (EEC) No 2092/91 Article 33

37) 「Regulation (EU) 2018/848」 Article 48(1)

38) European Commission(검색일: 2025.5.3.)

39) In accordance with Article 48 of Regulation (EU) 2018/848, as amended by Regulation (EU) 2020/169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5, the recognition for the purpose of equivalence of third countries on the basis of Article 33(2) of Council Regulation (EC) No 834/2007 6 will expire on 31 December 2026.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open negotiations with a view to concluding the relevant agreements with the third countries concerned.

간 협정(agreements on trade in organic products)을 체결하여 유기농 관련 기준과 통제 시스템이 상호 동등하다고 인정된 국가로부터 수입된 제품, 셋째는 규정⁴⁰⁾에 근거하여 동등성을 부여받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이다. 이 중 세 번째 방식은 과도기적 조치로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해당 일 이후에는 모두 유기 제품 교역 협정에 근거한 동등성 인정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⁴¹⁾

EU와 동등성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총 13개국이며, 이 중 스위스, 칠레, 영국은 EU와 무역 협정을 통해 동등성이 인정된 국가이며, 나머지 국가들(미국, 일본, 한국, 캐나다, 호주 등)은 기존 규정(EC No. 834/2007) 제33조 제2항에 따라 동등성이 인정된 경우다.⁴²⁾ 동등성 인정은 제품 범주별(Category of Products)로 부여된다. 일부 국가는 식물성 원물(A), 식품용 가공농산물(D), 종자(F) 등만 인정받고 있으며, 해조류 및 양식수산물(C), 사료용 가공농산물(E), 동물성 제품(B) 등은 제외되기도 한다.

영국은 모든 제품 카테고리에서 동등성을 인정받았고, 스위스, 캐나다, 미국도 C를 제외한 A, B, D, E, F 등에서 동등성을 인정받았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A와 F, 일본은 A, D, 한국은 D 범주만 인정받았다. 이는 EU가 동등성 평가 시 해당 국가의 제도적 기반, 관리 시스템, 인증 절차, 위반 사례 등에 따라 범주별로 차등화된 인정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식수산물 및 해조류 동등성 인정은 영국만 부여받고 있다.

40) EU(검색일: 2025.5.10.)

41) European Commission(검색일: 2025.5.3.)

42) EU(검색일: 2025.5.10.)

〈표 3-4〉 EU의 Category of products

범주	구분
A	• Unprocessed plant products(가공되지 않은 식물성 제품)
B	• Live animals or unprocessed animal products(동물 또는 비가공 동물성 제품)
C	• Aquaculture products and seaweeds(양식 수산물 및 해조류)
D	• 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 for use as food(식품용 가공 농산물)
E	• 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 for use as feed(사료용 가공 농산물)
F	• Vegetative propagating material and seeds for cultivation(번식용 식물 및 종자)

자료: EU(검색일: 2025.5.14.)

동등성 인정은 단순히 일방적 공표에 그치지 않고, 양자 간 정기적인 정보 교환 체계를 바탕으로 운영된다. 동등성 인정 사후 조치에는 유기 생산 기준 및 관리 조치에 대한 정보 교환, 모니터링, 인증기관의 운영 실태, 위반 사례 발생 시 보고 및 대응 절차 등에 대한 협의가 포함된다. 2021년 인도에서 EU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오염 물질이 다수 검출되자, EU는 해당 사례의 원인 규명과 관리기관의 대응 부족을 이유로 인도 정부가 공인한 5개 인증기관의 자격을 박탈한 바 있다.⁴³⁾ 이러한 조치는 EU가 제3국의 관리 체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동등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43)EU(검색일: 2025.5.18.)

〈표 3-5〉 국가별 동등성 협정의 Category of products 인정 범위

국가	인정 범위
칠레	• A, D, F
스위스	• A, B, D, E, F
영국	• A, B, C(양식수산물 및 해조류), D, E, F
아르헨티나	• A, B, D, F
호주	• A, D, F
캐나다	• A, B, D, E, F
코스타리카	• A, D, F
이스라엘	• A, D, F
인도	• A, F
일본	• A, D
한국	• D
뉴질랜드	• A, B, D, F
튀니지	• A, D, F
미국	• A, B, D, E, F

자료: EU(검색일: 2025.5.17.)

유기 제품의 관리와 인증에 있어, 협정 당사국은 해당 정부가 지명한 관리기관(control body 또는 control authority)이 검사와 인증을 수행할 수 있다. 반면, 동등성이 인정되지 않은 기타 국가에 대해서는 EU가 직접 지정한 제3국 관리기관(control body)이 인증을 담당한다.

또한 EU로 수입되는 모든 유기농 제품은 EU의 무역 통제 및 수출 시스템(Trade Control and Expert System, 이하 TRACES)을 통해 전자 검사 증명서(e-COI: electronic Certificate of Inspection)를 발급받아야 한다. 증명서가 없으면, EU 내 통관이 불가능하다. 특히 특히 2025년부터는 특정 고위험국 제품에 대해 추가 검사 조치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추가 조치로는 ▲수입 통관 단계에서 해당 모든 선적물에 대한 서류 검사,

▲위험 국가·품목별로 차등화된 샘플링 및 비허용 물질 분석, ▲수출국 인증기관에 의한 연 2회 현장검사(1회는 불시) 및 추적성·회계 검증 강화 등이 포함된다.⁴⁴⁾ 이는 EU 유기농 정보시스템(Organic Farming Information System, 이하 OFIS)에 반복적으로 보고된 오염 및 위반 사례에 따른 조치로, EU 집행위원회(DG AGRI)와 회원국, 제3국의 관리기관(Control bodies/authorities)이 협력하여 강화된 검사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산 차(Tea)는 전체 수입 물량의 20%, 터키산 석류(Pomegranates)는 30%, 페루산 바나나는 5% 등 국가·품목별로 차등적인 샘플링 비율이 설정되어 있다.⁴⁵⁾

2. 영국

1) 동등성 협정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자체 유기식품 인증 및 동등성 제도를 수립하였다. 기존에 EU의 유기 규정을 따르던 체제에서 벗어나, ‘The Organics (Equivalence and Control Bodies Listing) Regulations’ 등을 기반으로 유기식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동등성 인정 절차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⁴⁶⁾ 영국의 동등성 제도는 제3국의 유기 인증 기준이 영국의 기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호 인증을 면제하고 ‘유기’로 표시된 제품의 수입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동등성 인정은 통상적으로 양자 간 협정이나 무역 협력 협정을 통해 이루어진다.⁴⁷⁾

44) EU(검색일: 2025.4.12.)

45) Ibid.

46) legislation.gov.uk(검색일: 2025.5.24.)

47) EU(검색일: 2025.4.16.)

〈표 3-6〉 상품의 범위

구분	내용
A	• Unprocessed plant products
B	• Live animals or unprocessed animal products (includes honey and beeswax)
C	• Aquaculture products and seaweeds
D	• 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 for use as food
E	• 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 for use as feed
F	• Seeds and propagating material

자료: EU(검색일: 2025.4.16.)

유기 동등성 인정 여부는 환경식품농산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이하 DEFRA)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이 과정에서 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스·북아일랜드 정부가 참여하는 ‘Four Nations Working Group on Organics’와 유기 생산에 관한 전문가 자문단 (Expert Group on Organic Production)의 검토를 거친다.⁴⁸⁾⁴⁹⁾ 또한, DEFRA와 영국 유기인증기관 연합체(UK Organic Certifiers Group)는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며, 제3국 또는 해당국 인증기관의 동등성 신청에 대해서는 문서 검토 및 기준 비교 등을 통해 영국 유기 기준과의 정합성을 평가한다.

48) GOV.UK(검색일: 2025.9.24.)

49) UK Parliament(검색일: 2025.9.2.)

〈표 3-7〉 영국의 동등성 적용 범위 및 인정 절차

구분	내용
적용 대상	유기 가공식품, 식품 원료, 사료, 수산물 등
대상 국가	한국,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등 16개국 ⁵⁰⁾ (2024년 기준)
요건	한국(또는 영국)의 규정에 따라 유기 인증을 받고, 양국 내에서 최종 가공된 식품 유기원료 95% 이상 포함 GMO, 방사선, 합성농약 등 사용금지
유효기간	5년 단위로 인정 및 갱신
제출문서	Certificate of Inspection(COI) 필수 한국 수출 시: 영국 양식에 따른 COI 첨부 영국 수출 시: NAQS 수입증명서 eNAQS 시스템 입력

자료: GOV.UK(검색일: 2025.6.14.)

2) 동등성 협정 체결 현황

현재 영국은 EU, 미국, 캐나다, 한국 등과 동등성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⁵¹⁾ 우리나라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상호 동등성 인정을 체결하였고, 2021년 1월 1일 발효되었으며, 유효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다.⁵²⁾ 협정에 따라 양국에서 유기 인증을 받고 최종 가공된 제품 중 유기 원료가 95% 이상 포함된 경우, 추가 인증 절차 없이 ‘유기(organic)’로 표시하여 수출이 가능하다. 다만, 라벨 표시와 금지물질 검사 등은 수입국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영국 내 유통을 위해서는 반드시 영국 유기 인증기관의 승인 코드(영국산 유기식품 번호 형식: GB-ORG-XX 또는 외국산 유기식품 번호 형식:

50)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칠레, 코스타리카, 인도, 이스라엘, 일본, 스위스, 대만, 튀니지, 미국, 뉴질랜드, 한국, EU, EEA(아이슬란드, 노르웨이)

51) GOV.UK(검색일: 2025.8.12.)

5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검색일: 2025.8.13.)

Non-EU-ORG-XX)와 로고를 표시해야 한다.⁵³⁾⁵⁴⁾ 한국에서 영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은 영국 유기농 수입 시스템을 통해 검사 인증서(Great Britain Certificate of Inspection, GB COI)를 받아야 한다. COI의 경우, 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스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영국 GB COI 양식을, 북아일랜드는 EU TRACES 시스템 기반 COI를 제출해야 한다.

EU와 마찬가지로, 영국도 동등성 인정 협정의 대상 제품을 카테고리별로 구분하였다. 제품의 대상은 가공하지 않은 식물(A), 산 동물, 가공하지 않은 동물성 상품(꿀, 밀랍 포함)(B), 양식수산물 및 해조류(C), 식용 가공 농산물(D), 사료용 가공농산물(D), 종자 등(E)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식용으로 사용되는 가공 농식품(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s for use as food)만 협정이 적용되고 있다.

〈표 3-8〉 동등성 협정의 상품 범위

국가	인정 범위
아르헨티나	• A, B, D, F
호주	• A, D, F
캐나다	• A, B, D, E, F
칠레	• A, D, F, 꿀
코스타리카	• A, D, F
인도	• A, F
이스라엘	• A, D, F
일본	• A, D
스위스	• A, B, D, E, F
대만	• D

53) All organic products imported to Great Britain must be accompanied by a GB certificate of inspection (COI) and must be labelled with the code number of the UK control body responsible for the certifier." "The code number format is GB-ORG-XX for Great Britain or XI-ORG-XX for Northern Ireland." (GOV.UK, 검색일: 2025.6.13.)

54) GOV.UK(검색일: 2025.6.13.)

국가	인정 범위
튀니지	• A, D, F
미국	• A, B, D, E, F
뉴질랜드	• A, B, D, F
한국	• D
EU	• A, B, C, D, E, F
EEA(아이슬란드, 노르웨이)	• A, B, C, D, E, F

자료: EU(검색일: 2025.4.16.)

한편, 다만 북아일랜드는 탈퇴 협정의 부속 문서인 ‘북아일랜드 의정서(The Protocol on Ireland/Northern Ireland)’에 따라 여전히 EU 유기농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 간의 유기 제품의 교역에는 규제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공동 프레임워크를 통해 정부 간 조정이 이루어진다. 영국 본토에서 수입된 유기농 제품이 북아일랜드로 반입되려면 EU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영국-북아일랜드 간 무역에 영향을 주고 있다.⁵⁵⁾

3. 일본

1) 동등성 협정

일본 ‘JAS법’은 일본 정부가 외국과의 협정 또는 국제적 상호 인정 체계를 통해 유기식품 인증 제도의 ‘동등성(同等性)’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⁵⁶⁾ 이에 따라 일본에서 유기JAS 인증을 받은 농산물, 축산

55) UK Parliament(검색일: 2025.8.3.)

56) MAFF (검색일: 2025.5.3.)

물 및 가공식품은 동등성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수출할 경우, 상대국 인증을 추가로 받을 필요 없이 ‘유기’로 표시·판매할 수 있다.⁵⁷⁾ 또한 JAS법 시행규칙 제77조는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표시방법 및 표시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본은 ‘유기’, 또는 ‘オーガニック’ 등과 같은 표시를 유기JAS 인증을 받은 제품에만 한정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2) 동등성 협정 체결 현황

2025년 5월 기준, 일본은 미국, EU, 캐나다, 대만, 영국,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등 총 9개국과 유기 동등성을 상호 승인하고 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일본은 농산물과 농산가공식품(주류 제외), 축산물 및 축산가공품에 대해 동등성을 적용하나, 일부 국가와는 주류나 축산물이 제외된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 뉴질랜드와는 농산물과 농산가공품만 동등성이 인정되며, EU 및 캐나다와는 주류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동등성 협정이 체결되어 있다.⁵⁸⁾

57) 일본 농림수산성(검색일: 2025.4.6.)

58) MAFF (검색일: 2025.5.4.)

〈표 3-9〉 일본 유기 동등성 상호 승인 국가 현황(2025년)

구분	농산물	농산물가공식품 (주류 제외)	주류	축산물 및 축산가공식품
미국	○	○	-	○
EU	○	○	○	○
캐나다	○	○	○	○
대만	○	○	○	-
영국	○	○	-	-
스위스	○	○	-	○
호주	○	○	-	○
뉴질랜드	○	○	-	-
아르헨티나	○	○	-	-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검색일: 2025.4.6.)

일본이 가장 처음 유기식품 동등성 상호 승인을 맺은 국가는 미국이다. 일본과 미국은 각각 'JAS법'과 'National Organic Program(이하 NOP)'을 통해 유기식품을 관리해 왔다. 이후 양국은 2013년 동등성 협정을 체결하고, 2014년 발효하여 양국 간의 유기농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상호 수출입 시 동등성을 체결하는 데 합의하였다. 이후 2020년 일본 농림수산성은 유기축산물까지 동등성 범위를 확대하는 협정에 추가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해 7월부터 유기축산물 및 축산가공식품의 상호 수출입이 가능해졌다.⁵⁹⁾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유기식품은 반드시 일본 국내에서 유기 JAS 기준에 따라 최종적으로 생산·가공·포장되어야 하며, 유기농산물의 경우 농림수산성 고시 제1605호(2005), 가공식품은 고시 제1606호(2005), 축산물은 고시 제1608호(2005)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축

59) USDA(검색일: 2025.6.10.)

산물과 축산가공식품은 유기 JAS 관리 방식에 따라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았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반대로 미국에서 일본으로 수입되는 유기식품은 미국의 국가 유기농 프로그램(NOP) 기준에 따라 미국 내에서 최종적으로 생산·가공·포장되어 인증받은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일본 내에서 ‘유기’로 표시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기 JAS 인증을 보유한 수입업자를 통해 수입 및 유통되어야 한다.⁶⁰⁾

양국 간 동등성 협정을 통해 유기식품은 자국 인증마크(USDA 마크, 유기 JAS 마크)를 함께 표시할 수 있으며, 상대국의 표시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다만, 각 국가 내에서만 판매되는 제품에 상대국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것은 금지되며, 관련 사항을 위반할 시 일본 농림수산업성 또는 USDA가 상대국 당국에 보고한 후 해당국 규제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진다.

〈표 3-10〉 일본-미국 간 유기 동등성 협정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발효일	• 2014년 1월 1일(축산물 2020년 7월 16일 추가)
동등성 범위	• 유기농산물, 유기농산물가공식품, 유기축산물, 유기축산물가공식품 • 유기사료의 경우 항생제 관리 등 조건으로 일부 인정
적용기준	• (일본) 유기농산물 규격(平成17年10月27日 농수성 고시 第1605号), 유기가공식품 규격(同 第1606号), 유기축산물 규격(同 第1608号) • (미국) National Organic Program(NOP)
기타 기준	• (일본) 항생제 미사용 증명 필요 • (미국) 일본 내 ‘유기’ 표시 위해 JAS 인증 수입업자 경유 필요

자료: 일본 농림수산업성(검색일: 2025.5.18.)

일본과 캐나다는 2012년부터 동등성 인정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015년부터 농산물 및 가공식품 동등성이 발효되었다. 이후 2020년 7월 유기축산물과 축산가공식품까지 동등성을 확대했고, 2023년 유기주류까지 포

60) 일본 농림수산업성(검색일: 2025.5.18.)

함하며 캐나다가 유기주류의 첫 상호 승인국이 되었다.

일본에서 캐나다로 수출되는 유기식품은 유기 JAS 기준에 따라 일본 내에서 최종적으로 생산·가공·포장된 유기농산물, 가공식품, 축산물, 축산가공식품 및 유기주류여야 한다. 적용 규격의 경우, 농산물은 2005년 농림수산성 고시 제1605호, 가공식품은 같은 해 고시 제1606호, 축산물은 고시 제1608호, 주류는 2022년 고시 제18호에 따르며, 캐나다로 수출 시 별도의 캐나다 인증 없이 유기식품으로 인정받아 ‘유기(organic)’ 표시를 할 수 있다.

반대로 캐나다에서 일본으로 수입되는 유기식품은 캐나다 유기농제도(Canada Organic Regime, COR)에 따라 캐나다 내에서 최종적으로 생산·가공·포장된 것이어야 하며, 표시 기준은 CAN/CGSB-32.310-2006 규격(2020년 최신개정 포함)에 따른다. 단, 캐나다산 유기사료는 동등성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본 내에서 유기사료로서 유통될 수 없으며, 사료 분야에서는 별도의 인증이 요구된다.

양국에서 상호 수출되는 유기식품에는 유기 JAS 마크와 캐나다 유기 마크를 함께 표시할 수 있으나, 각국 국내 전용 제품에는 상대국 인증마크를 표시하지 않도록 규제한다. 아울러, 양국 간의 협정 내용을 위반할 시, 일본의 농림수산성 또는 캐나다 식품검사청(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이하 CFIA)에 통보하며 각국 법령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진다.

〈표 3-11〉 일본-캐나다 간 유기 동등성 협정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발효일	• 2015년 1월 1일 (축산 2020년 7월 16일 / 주류 2023년 8월 31일 추가)
동등성 범위	• 유기농산물, 가공식품, 축산물, 축산가공식품, 주류
적용기준	• (일본) 유기농산물 규격(平成17年10月27日 第1605号), 유기가공식품 규격(同 第1606号), 유기축산물 규격(同 第1608号), 유기주류 규격(令和4年9月1日 第18号) • (캐나다) CAN/CGSB-32.310-2006
기타 기준	• (캐나다) 유기飼料(사료)는 동등성 적용 제외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검색일: 2025.5.18.)

일본과 EU의 유기식품 동등성 협정은 2013년 EU가 일본을 ‘EU 유기 동등국 리스트(Third Country List)’에 공식 등록하면서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동등성을 처음 승인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일본이 2020년 유기축산물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2022년 유기주류 규격을 고시함에 따라, 양측은 이를 포함한 동등성 확대를 지속 협의하였다. 결과적으로 2025년 5월 기준, EU는 일본과의 동등성 인정 범위를 농산물, 가공식품을 넘어 유기축산물과 주류까지 확대하여 상호 수출입에서 별도의 인증 없이 ‘유기(Organic)’ 표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동등성 협정 이후, 일본에서 EU로 수출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일본 내에서 유기 JAS 기준에 따라 생산·가공·포장된 제품이어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TRACES 시스템을 통해 발급된 수출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반대로 EU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EU 유기 규정(Regulation (EU) 2018/848)’을 기준으로 인증된 제품만 일본에서 ‘유기’로 표시·판매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은 EU 정부 또는 EU 내 지정된 준정부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이를 통해 JAS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정한 사항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에서 EU로 수출하는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유기축산물 포함)은 유기JAS 마크를 부착할 수 있으며, EU에서 요구하는 'EU Organic Logo' 표시도 병행 부착이 가능하다. 단, TRACES 시스템을 통해 발급된 증명서류(유기 수출서류)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며, 이를 EU 세관 및 인증기관이 확인한다. 반대로 EU에서 일본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EU의 유기 로고(EU Leaf)를 부착할 수 있고, 일본 내 '유기' 표시를 위해서는 JAS 인증을 받은 수입업체가 절차를 통해 유기JAS 표시를 허가받아야 한다.

일본과 EU는 유기 동등성 협정에서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각국의 감독기관(농림수산성, DG AGRI 등)이 즉시 상대방에 통보하고 현지 점검, 인증서 취소, 표시 제거, 벌칙 부과 등 자국법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EU는 Regulation (EU) 2018/848의 의무에 따라 연례 감사(peer review) 체계를 통해 일본 유기 제도 운영 실태를 검증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즉각 동등성 유지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

〈표 3-12〉 일본-EU 간 유기 동등성 협정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발효일	• 2013년 (축산 2020년 / 주류 2022년 추가)
동등성 범위	•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가공식품(유기주류 포함)
적용기준	• (일본) 유기농산물 규격(平成17年10月27日 第1605号), 유기가공식품 규격(同 第1606号), 유기축산물 규격(同 第1608号), 유기주류 규격(令和4年9月1日 第18号) • (EU) Regulation (EU) 2018/848
기타 기준	• (일본) 유기 해조류 가공식품 제외 • (EU) 일본 내 '유기' 표시 위해 TRACES 인증서 필수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검색일: 2025.5.18.)

스위스는 2012년 일본을 자국의 유기 동등성 협정국 리스트에 등재하면서 유기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동등성을 승인하였다. 이후 일본이 2020년 유기축산물 인증제를 시행하자, 스위스는 유기축산물 및 축산가공식품에 대한 동등성 인정 협의를 진행하여 같은 해 7월 정식으로 상호 승인을 체결하였다.

일본에서 스위스로 수출하는 경우, 유기 해조류 가공식품(5% 이상 포함) 및 유기주류는 동등성 적용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러한 품목은 별도의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스위스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제품은 스위스의 ‘유기농업 및 표시법(910.18)’과 ‘EAER 유기농업법(910.181)’에 따라 인증되어야 하며, 일본 내 JAS법 시행규칙에 부합하는 증명서가 필수적으로 첨부되어야 한다.

동등성 협정에 따라 일본에서 스위스로 수출되는 유기식품(유기축산물 포함)은 유기JAS 마크를 유지할 수 있으며, 스위스 내 유기식품 표시 규정에 따라 ‘Bio Suisse’ 로고를 별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기 해조류(5% 이상 포함) 및 유기주류는 동등성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별도의 인증표시를 받아야 한다. 스위스에서 일본으로 수입되는 유기식품은 스위스 유기법(910.18)에 따라 인증된 제품만이 일본 내에서 JAS 로고 및 ‘유기’ 표시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일본 농림수산성에 등록된 수입업체를 통한 통관·표시 허가가 필수이다.

일본과 스위스는 양국 인증기관 간 정보 교환 시스템을 운영하며,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 즉시 상대국에 통보 후 등록 취소, 인증 무효화, 해당 제품 회수 및 표시 정지 등 강력한 사후조치를 취한다. 이를 위해 스위스는 농산품법(910.18) 및 EAER 유기규칙(910.181)에 근거해 일본산 유기제품의 수입, 표시, 판매 실태를 지속적으로 감독한다.

〈표 3-13〉 일본-스위스 간 유기 동등성 협정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발효일	• 2012년 (축산 2020년 7월 추가)
동등성 범위	•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적용기준	• (일본) 유기농산물 규격(平成17年10月27日 第1605号), 유기가공식품 규격(同 第1606号), 유기축산물 규격(同 第1608号) • (스위스) Organic Farming Ordinance(910.18), EAER Ordinance(910.181)
기타 기준	• (일본) 유기 해조류(5% 이상 포함) 및 유기주류 제외 • (스위스) 유기해조류(5% 이상 포함) 및 유기주류 제외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검색일: 2025.5.18.)

일본과 영국의 유기식품 동등성 협정은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이후에도 양국 간 유기식품 교역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의에 이른 것이다. 영국은 기존 EU 규정(Regulation (EC) No 834/2007, Regulation (EU) 2018/848)에서 이탈하면서, 자국의 ‘The Organic Products Regulations 2009(UK)’ 및 이후 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스 독립 규정을 통해 유기 제도를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일본 농림수산성은 유기JAS 인증 제도⁶¹⁾에 따라 양국 동등성을 지속 유지하기 위한 협의와 가이드라인을 발행하였고, 2022년 일본 농림수산성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로 수출되는 경우 영국 독자 COI(GB COI), 북아일랜드로 수출되는 경우는 EU TRACES 기반 COI(Certificate of Inspection)를 통한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유기식품 교역이 제도적으로 완비되었다.

양국의 동등성 인정 기준은 일본의 유기농산물 및 유기농산물가공식품에 관한 JAS 규격과 영국의 ‘The Organic Products Regulations

61) 農林物資の規格化及び品質表示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昭和25年法律第175号)

2009'(Statutory Instrument 2009 No. 842) 및 DEFRA가 공인한 관리 기관(Control Body) 등록 제도를 준거법으로 삼아 상호 인증 체계를 인정하고 있다. 일본에서 영국으로 수출되는 유기식품은 반드시 일본 내에서 JAS 규격에 따라 최종적으로 생산(파종, 수확), 가공(열처리, 포장 등), 포장을 완료해야 하며, 그 생산 공정과 품질관리는 JAS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해 유효성을 확보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JAS 인증서와 검사증명서(COI)를 첨부해야 한다.

반대로 영국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유기식품은 영국 내에서 UK 'Organic Products Regulations 2009' 및 영국 DEFRA가 공인한 Control Body(Soil Association, Organic Farmers & Growers 등) 인증을 통해 최종적으로 영국 내에서 생산, 가공, 포장된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식품이어야 하며, 일본의 JAS법 시행규칙(令和5年4月28日農林水産省令第57号) 제29조에 의거하여 유기 수입 증명서를 첨부해 일본 내에서 '유기(有機)', 'オーガニック' 표시를 허가받을 수 있다. 단, 일본과 영국 간 동등성 인정 범위는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식품에 한정되며, 유기축산물, 유기축산물 가공식품, 유기주류는 동등성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별도의 수출국 인증과 일본 JAS 인증을 이중으로 요구받게 된다. 또한 영국에서 일본으로 수입되는 경우, 반드시 일본 내 JAS 인증 수입업체를 통해 신고·검사 과정을 거쳐야 하며, 위반 시 유기 표시가 제거되거나 재수출, 폐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

〈표 3-14〉 일본-영국 간 유기 동등성 협정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발효일	• 2020년
동등성 범위	• 유기농산물 및 유기농산물 가공식품
적용기준	• (일본) 유기농산물 규격(平成17年10月27日 第1605号), 유기가공식품 규격(同 第1606号) • (영국) 영국 OP Regulation 및 DEFRA 등록 Control Body 기준
기타 기준	• (일본) 유기축산물, 유기주류는 동등성 제외 • (영국) 일본 JAS법 시행규칙(第29条)에 따른 증명 필요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검색일: 2025.5.18.)

일본과 대만은 2019년 10월 일본대만교류협회와 대만 농업위원회 간에 체결된 ‘유기식품 교역 협력 각서(MOU)’를 통해 양국 유기식품 동등성 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고, 2020년 2월 1일부터 유기농산물 및 유기농산물가공식품의 동등성이 발효되었다. 또한 일본은 2022년 유기주류 규격⁶²⁾을 고시하면서, 2024년 1월 1일부터 대만과 유기주류에 대한 동등성도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다.

일본에서 대만으로 수출하는 유기식품의 경우, 일본 JAS 규격에 따라 일본 내에서 최종적으로 생산·가공·포장되고 JAS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또한 대만은 일본에서 전환기간(Conversion Period) 농산물에 대해서는 동등성을 인정하지 않아, 전환기간 표기된 제품은 JAS 인증을 받았더라도 대만에서 유기식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반대로 대만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유기식품은 대만 ‘유기농산물 및 유기전환기 농산물 인증 기준 및 허용물질 규정(농업위원회 고시)’⁶³⁾을 준수하여 인증받아야 하며, 최종적으로 대만 내에서 생산, 가공, 포장된 제품이

62) 令和4年9月1日農林水産省告示第18号

63) 有機農產品及有機轉型期農產品驗證基準及允許物質

어야 한다. 이 경우 일본 JAS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대만 측 인증 서류(Approval Number 포함)를 첨부해 일본 세관과 농림수산성이 정한 방식으로 통관 및 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만산 유기식품은 일본에서 판매 시 일본 JAS 인증에 근거한 표시와 수입업체 관리 번호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대만에서 수출되는 유기식품에 대만 유기 로고를 부착할 수 있는 것은 대만에서 생산·가공된 제품에 한정되며, 일본에서 대만으로 수출되는 JAS 인증 제품은 대만에서 승인한 번호만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유기주류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1일부터 발급된 증명서를 소지한 제품만이 동등성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이전 증명서는 유효하지 않다. 이는 대만 측에서 2023년 유기주류 관리 규정을 재개정(주세법 하위 규정 포함)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양국은 동등성 협정을 통해 이중 인증은 요구하지 않지만, 반드시 수출 인증기관이 발행한 COI(유기수출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상호 협의 내용을 위반한 제품은 표시 제거 후 재표시, 재수출 또는 폐기 처리된다.

〈표 3-15〉 일본-대만 간 유기 동등성 협정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발효일	• 2020년 2월 1일(농산물), 2024년 1월(주류)
동등성 범위	• 유기농산물 및 유기농산물 가공식품, 유기주류
적용기준	• (일본) 유기농산물 규격(平成17年10月27日 第1605号), 유기가공식품 규격(同 第1606号), 유기주류 규격(令和4年9月1日 第18号) • (대만) 대만 ‘有機農產品有機轉型期農產品驗證基準’
기타 기준	• (일본) 전환기간 중 제품 제외 • (대만) 대만 Approval Number 부여 및 표시 필수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검색일: 2025.5.18.)

4. 중국

1) 동등성 협정 및 체결 현황

중국은 자국 식품의 대외 진출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뉴질랜드, 호주 등과 상호 유기식품에 대한 동등성 인정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⁶⁴⁾

뉴질랜드는 중국과 유기식품 인증에 관한 상호 동등성 협정을 체결한 유일한 국가로, 2024년 기준 수입량 1.12만 톤, 무역 규모 0.69억 달러를 기록하며 중국의 유기식품 최대 수입국에 자리했다.⁶⁵⁾ 양국 간 유기식품 무역은 뉴질랜드의 유제품과 육류, 과일, 중국의 커피, 냉동 채소, 잡곡 등의 품목에서 높은 상호 보완성을 보인다.

중국과 뉴질랜드는 2016년 ‘유기제품 인증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을 체결하고⁶⁶⁾, “하나의 인증서로 양국에서 모두 통용”⁶⁷⁾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후 2024년 양국 간 유기제품 무역량 증가 및 새로운 무역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 협정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협상을 재개했고, 2025년 ‘유기제품 인증 협력 2025-2026 행동계획(Cooperation on Organic Products Certification Action Plan 2025-2026)’을 체결하였다.⁶⁸⁾ 이를 통해 양국은 법·표준·인증 제도 변경사항을 실시간 공유하고, 인증기관과 산업 관련 정보도 상호 제공해 지속적인 제도 동등성 유지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64) 央视新闻(검색일: 2025.7.8.)

65) 市场监管总局(검색일: 2025.7.8.) 참조 작성

66) CIRS(검색일: 2025.9.25.)

67) 中国农业农村信息网 (검색일: 2025.7.8.).

68) 中华人民共和国驻奥克兰总领事馆经济商务处(검색일: 2025.6.15.)

〈표 3-16〉 중국-뉴질랜드 유기식품 동등성 협정 체결 연혁

구분	주요 내용
2016년 최초 협정 체결	• 상호인정 체계의 출발점
2024년 협정 강화	• 운영 체계의 실효성과 범위 확장
2025년 행동계획 수립	• 실행력을 담보하는 공동 운영 메커니즘 확립 ① 유기식품 인증 제도의 기술적 협의 및 표준·규정 공동 연구를 진행하여 인증 기준 상호 간의 실질적 동등성을 유지하고 제도적 신뢰성을 확보함 ② 정기적 생산지 방문 및 교류활동을 통한 현장 검증으로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함 ③ 양국의 인증서가 상대방에서 직접 통용되도록 하여, 기업의 인증 획득 비용 절감 및 기간 단축을 실현함

자료: 市场监管总局(검색일: 2025.7.8.)

동 협정은 중국이 최초로 체결한 국가 간 유기제품 상호 인정 협정으로, 자국 유기식품 인증 제도의 국제적 신뢰성을 제고하고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 to Trade, TBT) 완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실제 무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증 비용·시간을 절감하여 양국 간 유기식품 무역 활성화를 촉진하였고, 수출입되는 모든 유기제품에 유기 인증 마크와 코드 부착을 의무화하여 생산 이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생산 및 시장 환경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중국과 호주 간 농식품 및 유기식품 분야의 상호 교역은 최근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인다.⁶⁹⁾ 2023년 기준, 호주의 대(對)중국 유기제품 수출 규모는 약 2.4억 위안에 달해 중국이 수입하는 유기식품의 주요 공급국 중 6위를 차지하였다⁷⁰⁾. 같은 해 중국의 대(對)호주 유기제품 수출 규모 또한 1.07억 위안에 이르러⁷¹⁾, 양국 간 유기식품 분야에서 상당한 교역 규모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69) 央视新闻(검색일: 2025.7.8.) 참조 작성

70) Ibid.

71) Ibid.

그러나 이러한 교역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중국과 호주 간에는 정식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이하 MRA)이 체결된 바가 없다. 이에 따라 양국 간 유기식품 교역 시 별도의 국가별 인증 절차를 반복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이로 인한 인증 비용 및 소요 시간이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완화하기 위해, 중국과 호주는 2024년 새롭게 ‘중국-호주 유기제품 인증 협력 의향서(MOU)’를 체결하였다. 이 MOU는 양국 유기식품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상호 번영을 지지하기 위한 것으로, 비록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정식 상호 인정 협정은 아니지만, 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유기식품 인증 제도의 협력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확인하고, 향후 MRA 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중국-호주 MOU는 양국이 향후 유기제품 인증 제도의 상호 동등성 인정 가능성을 열어 두고, 인증 기준 및 기술 규정, 협력을 위한 플랫폼 운영 등에 관한 단계적 협력 사항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MOU는 향후 정식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MRA)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술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초기 단계 문서’의 성격을 지닌다.

〈표 3-17〉 중국-호주 유기제품 인증 협력 의향서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인증 기준·표준·법규 정보 공유	• 유기제품 관련 인증 기준, 기술 표준, 법규 정보 등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상대국의 규제 체계에 대한 이해 증진
기술 규정 비교연구	• 양국 유기제품 인증 제도 및 관련 기술 규정에 대한 비교·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여 상호 호환성 및 규제 조화 가능성 탐색
공동 세미나 및 실무작업반 운영	• 전문가 세미나, 워크숍, 실무협의체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상호 인증 체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기술적·제도적 장벽을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기로 합의

자료: 央视新闻(검색일: 2025.7.8.)

중국이 이번 대(對)호주 MOU를 체결한 것은 단순히 양자 교역 활성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이미 뉴질랜드와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상호 인정 모델을 태평양권 전체로 확장하려는 중국의 ‘국제화 및 시장 확대(走出去)’ 전략의 연장선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은 점진적으로 태평양 및 아시아-오세아니아권 내에서 품질인증 상호인정 네트워크를 확대·심화하고 있으며, 자국 유기식품 산업의 글로벌 신뢰도와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한편, 호주 또한 이번 MOU를 통해 중국 시장 진출의 비관세장벽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자국 유기농산물의 수출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동향은 향후 양국 간에 정식 MRA가 체결될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중요한 전 단계로 평가할 수 있다.

5. 미국

1) 동등성 협정

미국 농무부(USDA)는 유기농 식품 교역을 촉진하기 위해 캐나다, EU, 일본, 한국, 스위스, 대만, 영국 등 7개의 국가와 유기식품 동등성 협정(Organic Equivalence Arrangements)을 체결하고 있다. 동등성 협정의 범위는 농산물, 가공식품, 가축 제품 등의 주요 품목에 적용된다.⁷²⁾ 동등성 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경우, 별도의 미국 내 인증 절차 없이 유기 제품을 수출할 수 있으며, 'USDA ORGANIC' 라벨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개별 협정의 조건에 따라 인정 품목이나 표시 요건, 인증서 제출 방식에 차이가 존재한다.

2) 동등성 협정 체결 현황

미국과 캐나다는 2009년 6월 동등성 협정을 체결하였다. 본 협정은 농산물, 가공식품, 가축 및 그 부산물에 적용된다. 단, 캐나다 수출 시, Sodium Nitrate, Hydroponics(수경재배) 등이 예외 조항으로 관리된다. 또한 본 협정은 7 CFR Part 205.606을 적용받아, 일부 미국산 수산가공품(해조류, 어유 등)에 대해서는 캐나다에서 유기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⁷³⁾

미국과 EU는 2012년 6월 동등성 협정을 발효하였다. 유기농산물과 가공식품, 가축 및 관련 제품 대부분에 대해 상호 인정이 이루어지지만, 수산

72) USDA(검색일: 2025.6.10.)

73) USDA(2022), p. 1.

물은 협정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한, 와인에 대한 황산염 기준, 항생제 사용 여부, 유전자 조작 기술(GMO) 금지 수준 등 세부 항목에서 양국 간 기준 차이에 따라 제한이 존재한다.

일본은 2014년부터 식물 기반 유기 제품에 대한 동등성 협정을 맺었으며, 2020년부터는 가축 제품까지 적용 대상을 확장하였다. 일본 농림수산업이 발급하는 JAS 인증 제품은 미국 시장에서 유기 제품으로 인정되나, 일본으로 수출하려면, 제품 구성성분 중 최소 95% 이상이 되어야 유기식품으로 인정된다⁷⁴⁾. 한국은 2014년 7월 1일부터 미국과 동등성 협정을 맺고 있다. 동 협정은 가공식품이 대상이며, 양국 모두 유전자조작생물(GMO)을 유기제품에서 배제한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미국과 별도의 동등성 협정을 체결하였다. 협정은 농산물, 가축, 가공품을 포함하며, EU와 마찬가지로 수산물은 제외된다. 또한, 와인 관련 표시 요건과 검사증명서(COI) 발급 절차가 요구된다.

미국과 스위스는 농산물, 가공품, 가축 제품에 대해 상호 인증을 인정하고 있으며, 다른 유럽 국가들과 동일하게 수산물은 제외하였다. 유전자 변형 금지, 유기사료 기준 등에서 두 국가 간 기준 차이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졌다. 대만은 2020년 미국과 동등성 협정을 체결하였다. 농산물 및 가공품이 대상이며, 우유, 꿀 등 일부 품목은 제외되었다. 또한 유기식품 동등성 협정 외에도 미국은 유기식품 상호 인정 협정도 이스라엘과 뉴질랜드 두 국가와 맺고 있으며, 동 협정을 맺은 국가는 해당국의 인증기관이 미국의 USDA 유기농 표준에 맞춰 제품을 생산·인증을 해야만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74) 일본 농림수산업 (검색일: 2025.4.6.).

〈표 3-18〉 미국 유기식품 동등성 협정 현황

협정 유형	협정국	협정 발효 연도	명시된 유기수산물 관련 내용
동등성 협정 (Equivalency Agreement)	캐나다	2009년	(미국산) 일부 가공식품의 성분 (해조류, 어류 등)으로 허용
	EU	2012년	수산물(어류, 갑각류), 소금 불가
	일본	2014년	없음
	한국	2014년	없음
	스위스	2015년	수산물(어류, 갑각류), 소금 불가
	대만	2020년	수산물(어류, 갑각류), 소금 불가
	영국	2021년	수산물(어류, 갑각류), 소금 불가
상호 인정 협정 (Recognition Agreement)	이스라엘	2006년	없음
	뉴질랜드	2002년	없음

자료: USDA(검색일: 2025.7.2.)

6. 캐나다

1) 동등성 협정

캐나다의 유기식품은 캐나다 유기농 제도(COR)하에서 관리된다. 동 제도는 유기농 제품의 인증, 라벨링, 거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 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캐나다 유기농 제품의 국내외 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표 3-19〉 캐나다 유기농 제도(Canada Organic Regime)

구분	섹션	제목	주요 내용 요약	주요 조항
1. 서문	Preface	Preface (서문)	캐나다 유기농 제도의 전반적인 목적, 적용 범위, 그리고 제도의 법적 근거 및 목표를 간략하게	• OPR (Organic Products Regulations) 2009 개요 • 캐나다 유기농 로고 사용 원칙

구분	섹션	제목	주요 내용 요약	주요 조항
			설명한다. 유기농 제품의 무결성 보장과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	
2. 일반 정보	General information	General Information (일반 정보)	캐나다 유기농 제도의 구조, 역할 및 책임, 그리고 제도에 참여하는 주요 주체들(CFIA, CVB, CB, 운영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유기농 제품의 '유기농' 주장을 뒷받침하는 인증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	• CFIA의 역할 • CVB(적합성 검증 기관)의 역할 • CB(인증 기관)의 역할 • 운영자 (Operator)의 책임 • 캐나다 유기농 표준(COS) 참조
3. CVB 평가 및 지정	Part A.1 ~ A.10	Assessment and Designation of Conformity Verification Bodies(CVB) (적합성 검증 기관 평가 및 지정)	CFIA가 적합성 검증 기관(CVB)을 어떻게 평가하고 지정하는지에 대한 절차와 요건을 설명한다. CVB는 인증 기관(CB)의 역량을 평가하고, 유기농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 A.2 CVB 지정 요건 • A.4 평가 절차 • A.5 CFIA와 CVB 간의 계약 관계
4. CB 인증	Part B.1 ~ B.15	Part B: Accreditation of Certification Bodies(CB) (인증 기관 인증)	적합성 검증 기관(CVB)이 캐나다 유기농 제도를 준수하는 인증 기관(CB)을 어떻게 인증 (accredit)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절차와 기준을 명시한다.	• B.2 CB 인증 요건 • B.3 CB의 역량 및 절차 평가 • CB 인증 범위 및 관리

구분	섹션	제목	주요 내용 요약	주요 조항
			CB는 유기농 운영자(생산자, 가공업자 등)를 직접 인증하는 역할을 한다.	
5. 유기농 제품 인증 및 CB 요건	Part C.1 ~ C13	Part C: Certification of Organic Product and CB Requirements (유기농 제품 인증 및 인증 기관 요건)	유기농 운영자가 유기농 제품을 생산하고 인증을 받는 과정, 그리고 인증 기관(CB)이 유기농 운영자를 인증할 때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요건을 다룬다. 유기농 표준 준수, 인증 범위, 라벨링, 기록 유지 등의 세부사항이 포함된다.	• C.1 유기농 인증 시스템 일반 원칙 • C.2 운영자의 유기농 계획 및 준수 의무 • CB의 감사 및 검사 절차 • C.6 라벨링 요건 • C.11 유기농 표준 위반 시 조치
6. 부록	Appendix	Appendix A ~ H (부록 A ~ H)	각 부록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추가적인 세부 정보, 양식, 체크리스트, 지침 또는 참조 문서 목록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신청 양식, 감사 체크리스트, 동등성 협정 관련 정보 등이 부록	•

자료: Canada Food Inspection Agency(검색일: 2025.7.5.)

캐나다 유기 규정(COR)은 외국과의 유기식품 수출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유기식품 동등성 협정’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동 규정은 수입국의 요건이 캐나다의 유기 규정(COR)과 동등하거나 이를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캐나다 식품 검사청(CFIA)의 유기식품 동등성 결정 절차⁷⁵⁾는 동등성 인정 신청, 협상, 이행의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신청 단계에서 상대국은 자국의 관리 시스템에 대한 상세 정보와 캐나다의 유기농 표준과의 비교 자료를 제출하고, CFIA는 이를 검토하고 현장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 협상 단계에서는 양국은 기술적 차이점을 해결하고, 협정의 범위와 조건을 설정하며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 합의한다. 이행 단계에서는 서명된 협정을 바탕으로 각국의 관리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효과적인지 연례 보고와 주기적인 상호 검토를 통해 확인한다. 또한, 양측은 법률 변경 사항이나 인증 프로그램의 무결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상황을 서로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다.

〈표 3-20〉 캐나다 동등성 협정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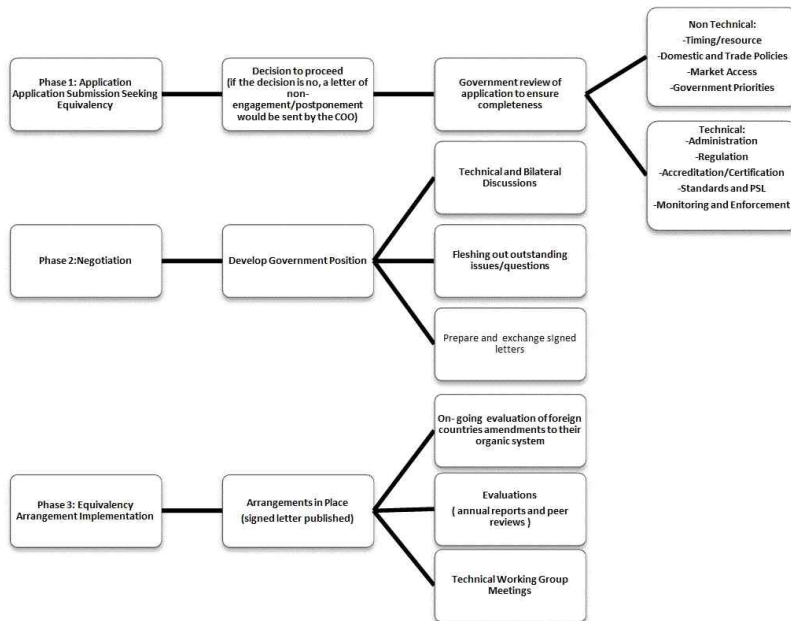
조항/섹션	주요 내용
1. 범위 및 목적 (Scope and purpose)	- CFIA가 외국 관할 당국과 유기농 동등성 협정을 협상하고 기존 협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접근 방식 설명 - 유기식품 동등성은 두 규제 시스템의 원칙과 결과가 동등한지 평가하고 비교하여 결정
2. 권한(Authority)	캐나다 식품 검사청법(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Act), 캐나다 농산물법(Canada Agricultural Products Act), 캐나다 식품 안전 규정(Safe Food for Canadians Regulations, SFCR) 파트 13(유기 제품)에 따라 수립
3. 동등성 신청 및 결정 요건(Requirements for equivalency application and determination)	
3.1 신청 단계 (Application phase)	- 외국 국가가 동등성 결정을 위한 자국 규제 시스템, 규정 범위, 그리고 캐나다 유기농 표준과의 기술적 요건 비교 자료 등 상세 정보가 포함된 서면 요청서를 CFIA에 제출 - CFIA는 요청서의 완전성을 확인하고, 문서 검토 및 필요시 현장 감사를 통해 평가를 진행
3.2 협상 단계 (Equivalency negotiation phase)	- 신청 단계 이후 진행 - CFIA는 외국 당국과 기술적 논의를 통해 식별된 차이점이나 문제를 해결하고, 동등성 협정의 범위와 조건을 설정하며, 모니터링 시스템 합의

75) CFIA procedure for organic equivalency determination and on-going monitoring of the existing arrangements.

조항/섹션	주요 내용
4. 동등성 협정 이행 단계(Equivalency arrangement implementation phase)	• 동등성 협정 서한이 서명되면 시작 • 이 단계에는 각 당사자의 통제 시스템의 지속적인 효과를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포함되며, 연례 보고서 제출 및 주기적인 상호 검토가 이루어짐
5. 당사자의 의무 (Obligations of the parties)	• 양측은 법률 변경, 인증 기관 변경 또는 유기농 인증 프로그램의 무결성을 위협하는 사례 등과 같은 중요한 변경 상황이 발생하면 서로에게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생김
부록(Annex 1)	• 동등성 신청 및 결정 절차 흐름도 • 연례보고서 양식

자료: Canada Food Inspection Agency(검색일: 2025.7.4.)

〈그림 3-1〉 캐나다 동등성 결정 절차 흐름도



자료: Canada Food Inspection Agency(검색일: 2025.7.4.)

캐나다 유기식품 로고는 제품의 유기식품 성분 함량이 95% 이상일 때만 사용할 수 있으며⁷⁶⁾, CFIA가 공인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로고 사용은 의무는 아니지만,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중요한 상징으로 작용한다. 수입 제품은 로고 근처에 ‘원산지(Product of)’ 또는 ‘Imported (수입품)’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 70% 이상 95% 미만 유기식품 함량 제품은 “Contains X% organic ingredients”로 정확한 비율을 명시한 문구는 사용할 수 있으나, 캐나다 유기식품 로고를 사용할 수 없고, 제품명이 아닌, 성분 목록에만 ‘organic’을 표기할 수 있다⁷⁷⁾. 70% 미만 유기식품 함량 제품도 오직 성분 목록에만 ‘organic’을 표기할 수 있다.⁷⁸⁾

〈그림 3-2〉 캐나다의 유기식품 로고(Canadian Organic Logo)



자료: Canada Food Inspection Agency(검색일: 2025.7.6.)

76) Canada Food Inspection Agency(검색일: 2025.7.4.)

77) Canada Organic Trade Association (2018).

78) Ibid.

2) 동등성 협정 체결 현황

캐나다는 유기식품 교역을 촉진하고 국제 유기식품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유기식품 동등성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동등성 협정은 COR에 따라 인증된 유기식품이 상대국에서 별도의 추가 인증 없이 유기식품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하며, 반대로 상대국에서 인증된 유기식품도 캐나다 시장에서 동일하게 유기식품으로 인정받아 유통될 수 있도록 한다.

동등성 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경우, 캐나다 내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유기식품을 캐나다로 수출할 수 있으며, ‘Canada Organic’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캐나다는 미국, 영국, EU, 한국, 일본 등 9개 국가와 동등성 협정을 맺고 있다. 캐나다와 코스타리카 유기식품 동등성 협정은 2013년 유기농산물에 대해 동등성을 체결하였다. 캐나다와 EU 유기식품 동등성 협정은 2011년부터 발효되어 식물성, 동물성 유기식품 및 와인 등을 인정한다.

캐나다와 일본의 동등성 협정은 2014년 발효되어 식물성, 가축 제품, 주류 등이 동등성을 적용받고 있다. 꿀, 양식수산물, 해조류는 범위에서 제외되나, 일본산 유기수산물(양식 수산물, 해조류 등)도 CFIA 공인 인증기관에서 유기식품 인증을 받으면, 유기식품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캐나다와 멕시코 유기식품 동등성 협정은 2023년부터 발효되어, 식물성 농산물·가공식품, 양봉 제품 등이 동등성을 인정받았다. 캐나다와 한국의 동등성 협정은 2023년 발효되었으며, 유기가공식품만 동등성을 체결하였다.

캐나다와 스위스의 동등성 협정은 2012년에 발효되어 양국 유기농산물(생물 또는 미가공, 가공 농산물, 씨앗, 사료 및 와인)에 동등성이 적용되었다. 캐나다와 대만의 유기식품 동등성 협정은 2020년에 발효되었으며 식물성 농산물, 가공식품, 가축 제품, 양식수산물이 동등성을 인정받았다. 캐나다와 영국의 유기식품 동등성 협정은 2021년에 발효되었고, 식물성/동

물성 미가공 및 가공 제품, 와인 등이 동등성을 인정받았다. 캐나다와 미국의 유기식품 동등성 협정은 2009년에 발효되었고, 협정의 범위는 식물성 미가공·가공품, 재배용 씨앗 등이다.

〈표 3-21〉 캐나다 유기식품 동등성 협정 현황

협정 유형	협정국	협정 발효 연도	명시된 유기수산물 관련 내용
동등성 협정	미국	2009년	(미국산) 일부 가공식품의 성분 (해조류, 어류 등)으로 허용
	EU	2011년	(양국) 수산 양식 유기식품은 범위에서 제외
	스위스	2012년	없음
	코스타리카	2013년	없음
	일본	2014년	(일본산) 유기수산물(양식 수산물, 해조류 등)도 CFIA 공인 인증기관에 인증을 받으면, 유기식품으로 판매 가능
	대만	2020년	(양국) 양식수산물 허용
	영국	2021년	(양국) 수산 양식 유기식품 (해조류 제외)은 범위에서 제외
	멕시코	2023년	없음
	한국	2023년	없음

자료: Canada Food Inspection Agency(검색일: 2025.7.4.)

제3절 시사점

앞서 살펴본 각국의 동등성 협정 체결 사례 분석을 통해, 각국과 우리나라의 차이점과 향후 동등성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국가별 국제 동등성 협정 체결의 담당 부처를 살펴보면, EU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농업총국(DG AGRI), 영국은 환경식품농무부(DEFRA), 미국은 농무부(USDA), 캐나다는 캐나다식품검역청(CFIA), 일본은 농림수산성(MAFF)이 각각 담당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동등성 협정의 주체가 될 수 있어, 농업과 수산이 분리된 이원적 구조를 갖는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 차별성을 지닌다.

또한 동등성 인정 기준에서도 국가별 차이가 존재한다. EU와 영국은 동등성 협정에서 농산물, 축산물, 양식 및 해조류, 가공식품, 사료용 가공품, 종자 등으로 세분화된 범주를 설정하고, 각 범주별로 동등성을 인정한다. 우리나라는 EU와의 협정에서 가공식품(D category)만 동등성 대상으로 인정받았는데, 이는 EU가 품목별 카테고리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이다.

반면 미국은 범주화 방식보다는 협정문에 예외 조항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제도 간 차이를 보완한다. 대표적으로 수경재배(Hydroponics)와 질산나트륨(Sodium Nitrate)은 미국의 유기 규정에서는 제한적으로 허용되지만, EU와 캐나다에서는 금지되므로, 협정문에 “해당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은 동등성 인정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예외가 규정되어 있다⁷⁹⁾. 또한 유기

79) USDA(2022), p. 1.

와인의 경우 EU는 황산염(Sulphites) 사용을 일정 기준까지 허용하는 반면 미국은 'Organic Wine'에는 황산염 무첨가 원칙을 고수하여, 협정에서 표시·인증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미국은 불일치를 제도적으로 완전히 해소하기보다는 구체적 예외 항목 설정을 통해 정합성을 유지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캐나다는 유기 동등성 협상에서 제도적 불일치가 큰 품목에 대해서는 동등성 범위에서 제외하거나 조건부로 인정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실제로 캐나다-미국 협정(2009)에서는 수경재배(Hydroponics), 질산나트륨(Sodium Nitrate), 일부 가축 사육 조건이 예외로 명시되었다. EU-캐나다 협정(2011)은 식물성·동물성 제품, 가공식품, 와인을 포함하지만, 애완동물 사료·화장품·섬유 등 비식품 분야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수산물 은 협정문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지는 않았으나, 초기에는 적용 범위가 불명확하여 사실상 제외된 것으로 취급되었다. 일본-캐나다 협정(2014)은 처음에는 식물성 제품에 한정되었다가, 2020년 축산물·축산 성분 가공식품, 2023년 유기 알코올 음료로 단계적으로 확대되었다. 캐나다는 제도적 불일치를 일거에 해소하기보다는 제외-조건부 인정-단계적 확대라는 유연한 협상 방식을 통해 정합성을 확보하고 있다.

EU는 동등성 협정국의 자체 유기 로고 병행 표시는 허용하지만, EU 로고(Euro-leaf) 사용이 의무이며 상대국 로고는 선택적 보조에 불과하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EU 로고 사용이 불가능해졌고, 동등성 협정국 제품도 영국 유기 라벨 규정을 따라야 한다. 다만 북아일랜드는 EU 규정을 계속 적용하므로 EU 로고 병행 사용이 가능하다. 미국은 USDA Organic Seal을 단일 로고로 관리하며, 법적 의무는 없지만 사실상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동등성 협정국 제품도 NOP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캐나다는 CFIA가 관리하는 Canada Organic Logo를 COR 기준 충족 제품에만 사용하도록 하며, 이는 국내 제품뿐 아니라 동등성 협정

국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병행 표시도 가능하지만, 인증기관 코드·원산지 표기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일본은 가장 엄격한 체계를 유지하여, 동등성 협정국에서 생산된 유기 제품이라 하더라도 일본에서 유기 제품으로 판매되려면 일본 내에서 인증을 받은 수입업자가 유기 JAS 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일본은 유기 표시 시 JAS 로고 사용을 요구하므로, 상대국의 유기 로고를 일본 내 제품에 병행해 표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표 3-22〉 주요국의 동등성 협정 비교

구분	EU	영국	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
• 관할 기관	European Commission	DEFRA	MAFF	SAMR, CNCA	USDA	CFIA
• 관련 제도	Regulation (EU) 2018/848	Organic Products Regulations 2009, Retained EU Law	JAS법	유기제품인증관리 방법 (有机产品认证管理办法)	Organic Foods Production Act, NOP	Organic Products Regulations, Safe Food for Canadians Regulations, Part 13
• 인증 범위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사료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사료	농산물, 가공식품 중심, 일부 수산물 인증 추진	농축산물, 가공식품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사료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사료
• 유기수산물 인증 기준 유무	있음	있음	해조류 인증	없음	있음	있음(2012 Aquaculture Standard)
• 유기 인증기관	EU 지정 인증 기관	영국 지정 인증 기관	JAS 등록 인증기관	CNCA 등록 인증기관	USDA 지정 인증기관	CFIA 지정 인증기관
• 동등성 협정	한·EU 등 다수 국가와 협정 체결	EU, 미국, 캐나다, 일본 등	미국, EU, 스위스 등	뉴질랜드	한국, 일본, 캐나다, EU 등	미국, EU, 일본, 영국 등
• 수산물 동등성 인정 여부	인정 (EU-영국)	인정 (EU-영국)	해조류	미포함	미포함	인정 (캐나다-대만)

자료: 제3장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04

실태조사 및 동등성 효과분석

제4장에서는 설문조사, 전문가 조사,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동등성 협정에 대한 생산자의 인식과 협정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제1절에서는 유기가공식품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유기가공수산식품의 생산·수출·인증 실태와 동등성 협정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였다. 제2절과 제3절에서는 2026년 만료되는 한-EU 동등성 인정 협정 재협상 가능성을 고려하여, EU에 초점을 두고 수출효과와 양국 유기 인증 제도의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제1절 동등성 협정에 관한 생산자 인식

1. 설문조사 개요

본 절에서는 유기가공식품 생산·수출·인증 실태와 동등성 협정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은 ‘유기수산식품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하였고, 조사 지역은 유기 인증의 주요 품목인 김, 미역, 다시마의 주요 생산지인 전남, 전북, 충청권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표본 수는 40개로 전남 34개, 전북 1개, 충청권 5개 업체가 대상이며, 김 생산이 많은 전남 지역의 생산업체가 다수 포함되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본오차는 $\pm 10.2\%$ 이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방문 면접을 진행하였으며, 조사 기간은 2025년 8월 4일에서 8월 20일, 약 2.5주 동안 실시하였다.

〈표 4-1〉 설문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유기수산물 가공업체
표본 수	40개소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대면 면접조사
조사 항목	유기수산물 실태, 동등성 협정에 대한 인식
조사 기간	2025년 8월 4일(월) ~ 8월 20일(수) (약 2.5주)

자료: 저자 정리

〈표 4-2〉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 수(명)		비율(%)
전체	40		100
유기가공수산물제품 수출 여부	수출함	16	40
	수출 안 함	24	60
유기수산물 (중복응답)	김	34	85
	다시마	4	10
	미역	17	42.5
생산 제품 (중복응답)	조미김	12	30
	조미김(자반)	1	2.5
	구운김	6	15
	마른김	15	37.5
	마른다시마	2	5
	마른다시마 가루	2	5
	마른미역	7	17.5
	마른미역 가루	4	10

구분	사례 수(명)		비율(%)
전체	40		100
소재지	마른 자른 미역	2	5
	염장 미역	4	10
	충청권	5	12.5
	전북	1	2.5
	전남	34	85

자료: 저자 정리

조사항목은 유기수산물식품 실태와 동등성 협정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되며,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유기가공식품 생산량, 수출 여부, 수출량, 수출국, 유기 인증 동기 및 취득의 어려움, 유기 인증 비용, 수출 애로사항 등을 조사하였다. 동등성 인정 협정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동등성 인정 협정의 인지도, 체결 희망국, 기대효과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표 4-3〉 조사 항목

구분	조사 항목
1. 유기수산물식품 실태	1) 2024년 유기가공수산물식품 생산량 및 전체 생산량 대비 비중
	2) 유기가공수산물식품 수출 여부 및 수출 품목, 국가, 수출량
	3) 유기 인증 취득 동기
	4) 유기 인증 취득 과정 어려움
	5) 수출 과정 중 유기 인증 관련 애로사항
	6) 연간 유기 인증 비용
2. 동등성 협정에 대한 인식	1) 국제 동등성 인정 협정 인지도
	2) 동등성 인정 체결 희망국 및 희망국 선택 이유
	3) 동등성 인정 협정 체결 시 수출 확대 도움 정도
	4) 동등성 인정 협정 체결 시 기대 효과
	5) 동등성 인정 협정 체결 시 인증 신규·유지 의향
	6) 동등성 인정 협정 체결 시 예상 애로사항
	7) 유기 인증의 국제 동등성 인정 협정에 관한 건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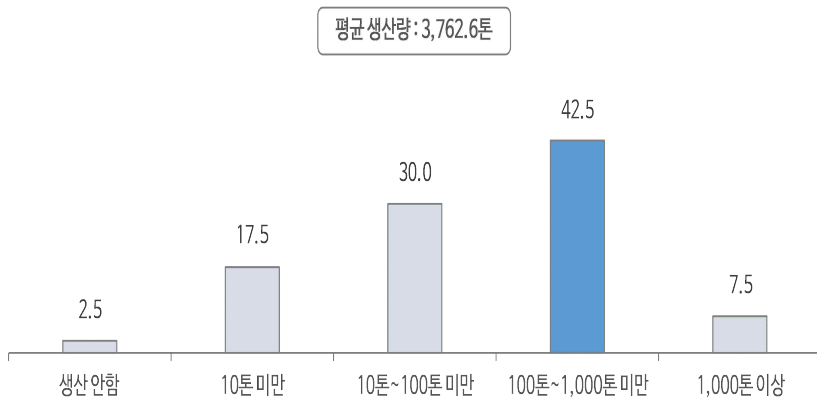
자료: 저자 정리

2. 조사 결과

2024년 기준 전체 생산량 대비 유기가공수산물식품의 평균 생산 비중은 35.8%(3,762.6톤)이며, 업체당 유기가공수산물식품 생산량은 ‘100톤~1,000톤 미만’이 42.5%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10톤~100톤 미만’(30.0%), ‘10톤 미만’(17.5%), ‘1,000톤 이상’(7.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 유기가공식품 생산량(2024년)

단위: %, N=40



자료: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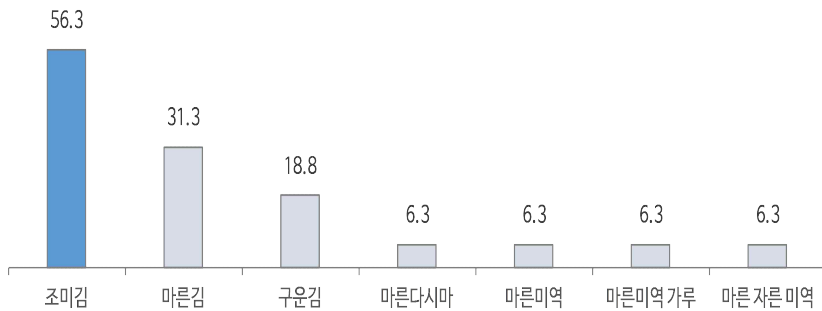
수출은 ‘수출 안 함’ 60%, ‘수출함’ 40%⁸⁰⁾로 수출하지 않는 기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하는 업체(n=16)를 대상으로 수출 품목에 대해 살펴본 결과, ‘조미김’이 56.3%로 가장 높았고, ‘마른김’(31.3%), ‘구운 김’(1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출국 비중은 ‘일본’이 68.8% 가장 높았고, ‘미국’과 ‘중국’(각 56.3%), ‘베트남’(25.0%), ‘캐나다’(1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4년 수출량은 평균 3,314.5톤으로 전체 유기가공수

80) 물량 측면에서 대형 업체의 비중이 높음

산식품 생산량의 43%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10톤 미만’과 ‘100톤~1,000톤 미만’이 37.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10톤~100톤 미만’과 ‘1,000톤 이상’(각 12.5%) 순으로 나타났고, 평균 3,314.5톤을 수출하였다.

〈그림 4-2〉 수출하는 유기 가공수산물

단위: 중복응답 %, N=16(수출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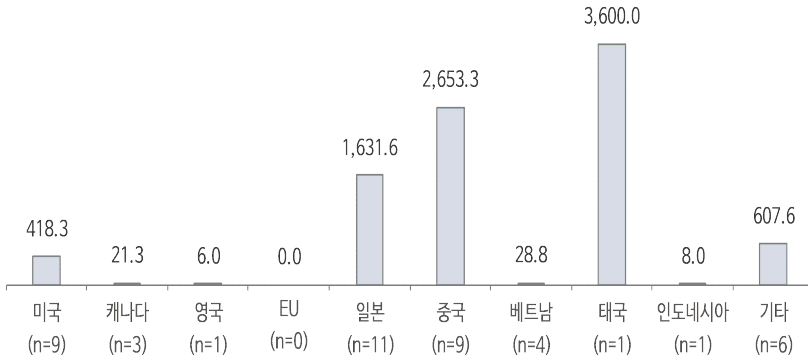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

2024년 국가별 평균 수출량은 태국 3,600톤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국 2,653.3톤, 일본은 1,631.6톤, 미국 418.3톤, 베트남 28.8톤, 캐나다 21.3톤, 인도네시아 8톤, 영국 6톤, EU⁸¹⁾는 ‘없음’으로 나타났다.

81) EU에서 인증받은 제3자 인증기관이 국내에 존재하지 않아 수출하지 못함('25. 9. 20 확인 기준)

〈그림 4-3〉 국가별 유기가공수산물식품 수출량

단위: 중복응답 %, N=16(수출업체)



자료: 설문조사 결과

유기 인증 취득 동기는 ‘수산물 품질이 향상될 것 같아서’가 70%로 가장 높았고, ‘수산물 판매가 늘어날 것 같아서’(65%), ‘수출 확대’(40%), ‘수산자원 및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35%), ‘수산물 생산량이 늘어날 걸 기대해서’(30%)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유기 인증 취득 과정 어려움은 인증 서류 준비 및 교육 이수 등 ‘인증 획득에 드는 비용과 시간 부담’(47.5%), 경영 관련 자료 증빙 등 ‘관련 서류의 복잡함⁸²⁾’(45.0%), 서류 및 현장심사 등에 따르는 준비 절차로 인한 ‘인증 절차 복잡⁸³⁾’(35%), 유기농수산물의 조달 어려움에 따른 ‘친환경 원재료 사용조건⁸⁴⁾’(2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출 과정 중 유기 인증 관련 애로사항은 국내 인증의 애로사항과 유사하게 인증에 드는 ‘비용 부담’이 47.5%로 가장 높았고, 인증 서류 제출 등

82) 제출서류: ‘생산계획서’, ‘경영 관련 자료’,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생산, 제조·가공,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 있는 경우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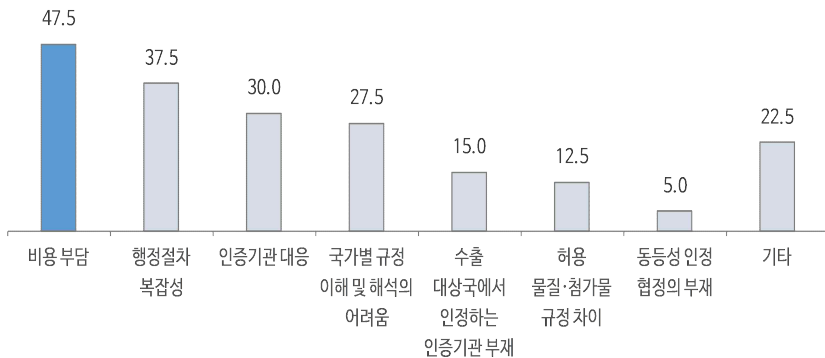
83)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은 2개월이며, 인증 신청 전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실시하는 인증 기준 이행교육 이수가 요구됨. 수수료는 신청비, 출장비, 심사관리비 포함

84)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어야 함

에 따르는 ‘행정 절차 복잡성’(37.5%), 미비점 보완 등에 따른 ‘인증기관 대응’(30%), ‘국가별 규정 이해 및 해석의 어려움’(2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4〉 수출 과정 유기 인증 관련 애로사항

단위: 중복응답 %, N=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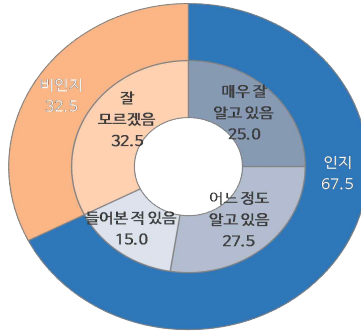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

국제 동등성 협정 인지도는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7.5%⁸⁵⁾이며, 비인지는 32.5%(‘잘 모르겠음’ 32.5%)로 나타났다.

85) ‘매우 잘 알고 있음’ 25.0%, ‘어느 정도 알고 있음’ 27.5%, ‘들어본 적 있음’ 15.0%

〈그림 4-5〉 국제 동등성 인정 협정 인지도

단위: %, N=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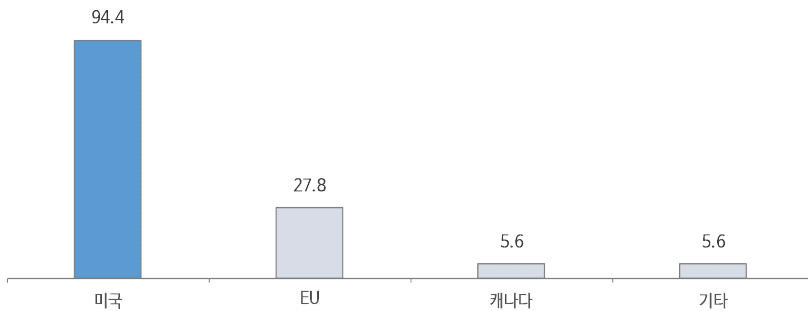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

동등성 인정 체결 희망국 여부는 있다 45%, 없다 30%, 잘 모르겠다 25%로 나타났으며, 체결 희망국은 ‘미국’이 94.4%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EU’(27.8%), ‘캐나다’(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의 선택 이유는 ‘수출 잠재력’이 50%로 가장 높았고, ‘인증 비용 절감’(38.9%), ‘인증 절차 간소화 기대’(2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6〉 동등성 체결 희망국

단위: 중복응답 %, N=18(동등성 인정 체결 희망국 있는 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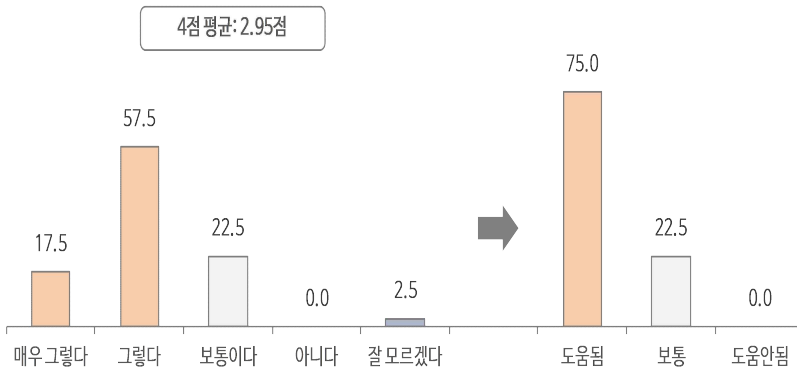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

동등성 체결 시 수출 확대 도움 정도는 ‘도움됨’ 75%⁸⁶⁾, ‘도움 안 됨’ (‘아니다’ 0%), ‘보통이다’(22.5%), ‘잘 모르겠다’(2.5%)로 나타나, 동등성 인정 협정 체결 시 수출 확대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림 4-7〉 동등성 협정 체결 시 수출 확대 도움 정도

단위: 중복응답 %, N=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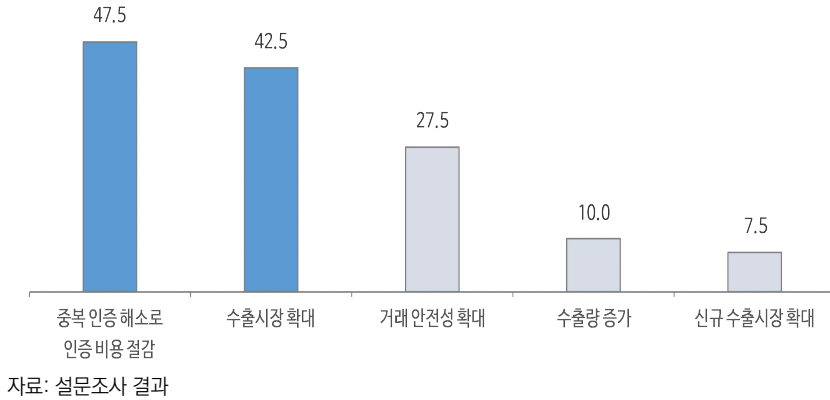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

동등성 체결 시 기대효과는 국내 인증과 수출국이 인정하는 인증기관을 통한 인증 등 ‘중복 인증 해소로 인증 비용 절감’이 47.5%로 가장 높았고, ‘수출시장 확대’(42.5%), ‘거래 안전성 확대’(2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동등성 인정 협정 체결 시 인증 신규·유지 의향은 ‘현재 인증을 유지할 계획이며, 협정 체결로 인해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음’이 47.5%로 가장 높았고, ‘인증 유지에 대한 의향은 있으나 비용 때문에 고려 중’(35%), ‘유기 인증을 신규로 받을 의향 있음’(17.5%) 순으로 나타났다.

86) ‘매우 그렇다’ 17.5%, ‘그렇다’ 57.5%

〈그림 4-8〉 동등성 체결 시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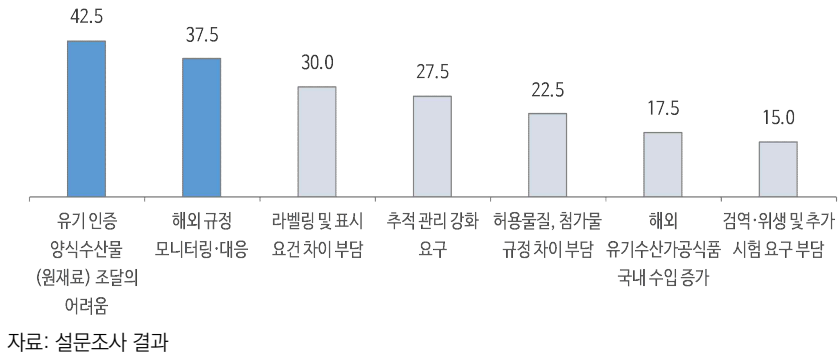
단위: 중복응답 %, N=40



동등성 체결 시 예상 애로사항은 ‘유기 인증 양식수산물 (원료) 조달의 어려움’이 42.5%로 가장 높았고, ‘해외 규정 모니터링·대응’(37.5%), ‘라벨링 및 표시 요건 차이 부담’(30%), ‘추적 관리 강화 요구’(2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9〉 동등성 체결 시 애로사항

단위: 중복응답 %, N=40



제2절 동등성 인정 효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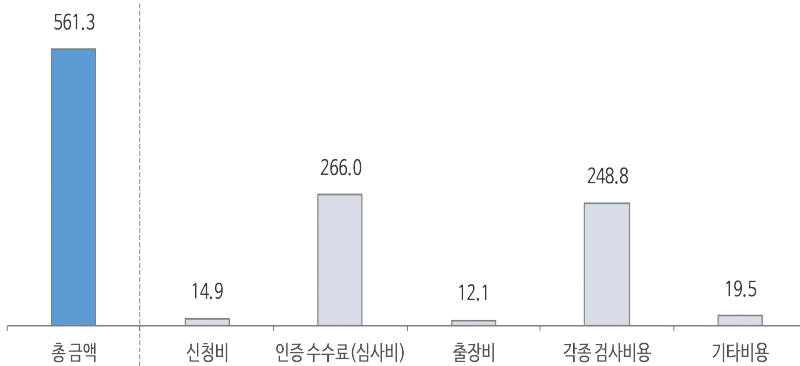
한-EU 유기농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은 2015년 2월부터 발효되어 농축산물에 적용되고 있다. 단, 수산물을 원료로 한 유기농식품은 동등성 인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한-EU 유기농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은 2026년 12월 만료될 예정이다. 향후 동등성 인정 재협상 시 수산물을 포함한 유기농식품의 상호 인정 여부는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제2절과 제3절에서는 향후 한-EU 동등성 협정 추진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1. 생산자 효과 분석

먼저, 제1절의 생산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약 75%가 동등성 협정이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국내와 수출국의 인증 요구에 따른 중복 인증이 해소되어 비용 절감 효과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기 인증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연간 평균 561.3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이 중 심사비(인증 수수료)와 각종 검사 비용이 전체 비용의 약 91.7%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협정을 통해 인증 부담이 해소되면 인증 절차에 드는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림 4-10〉 연간 유기 인증 비용

단위: %, N=40



자료: 설문조사 결과

〈표 4-4〉 인증 수수료

납부대상	신청비	출장비	심사 · 관리비
가. 인증을 받으려는 자 또는 갱신 · 연장하려는 자	5만 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4만 5천 원)	공통 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금액	공통 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금액
나. 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외국의 정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금액 (상호주의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금액 (상호주의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금액 (상호주의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다.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거나 인증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	10만 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9만 원)	공통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금액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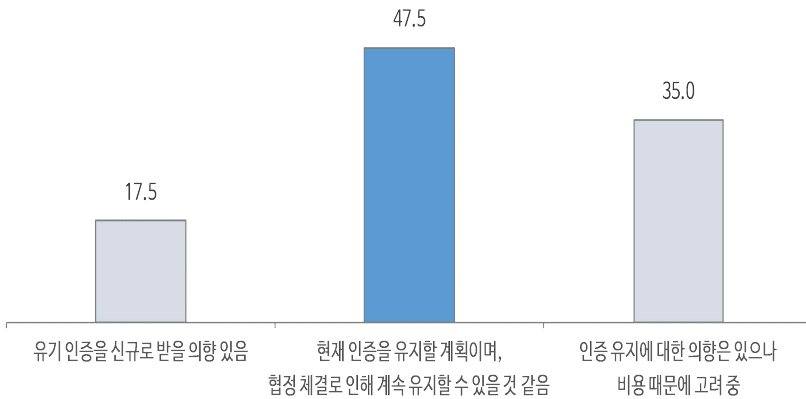
자료: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또한, 협정 체결은 수출시장 확대와 거래 안정성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는 EU 시장 진출 시 각국의 인증 체계를 별도로 충족해야 했으나, 동등성 인정이 이루어지면 국내 인증만으로도 수출할 수 있어 시장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 안정적인 거래 관계 형성과 장기적인 수출 기반 구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나듯, 동등성 체결 시 현재 인증을 유지하겠다는 응답률이 47.5%에 달했고, 신규 인증을 고려하는 비율도 17.5%로 나타났다. 이는 협정 체결이 생산자의 인증 유지 동기를 강화하고, 동시에 신규 진입을 유도함으로써 유기수산물 산업 전반의 저변 확대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림 4-11〉 동등성 인정 협정 체결 시 인증 신규·유지 의향

단위: %, N=40



자료: 설문조사 결과

그러나 동등성 체결의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유기 인증 원료의 안정적 조달이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으로 꼽혔다. 특히 수산물을 원료로 한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높은 기준을 충족하는 원료를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이와 더불어 해외 규정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하며, 상호주의에 따라 상대 협정국 수준의 강화된 추적 관리 요구로 인해 행정적·관리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표 4-5〉 생산자 효과 분석

구분	긍정적 효과	잠재적 애로 사항
인증 비용	중복 인증 해소로 인증 비용 절감 가능	해외 규정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대응
수출 확대	시장 접근성 개선 및 거래 안정성 확대	원료(사료·원재료) 조달 및 유기 인증 요건 충족의 어려움
관리·운영	인증 유지 동기 강화, 산업 저변 확대 가능성	추적 관리 강화 시 행정 부담 증가

자료: 저자 작성

2. 수출입 효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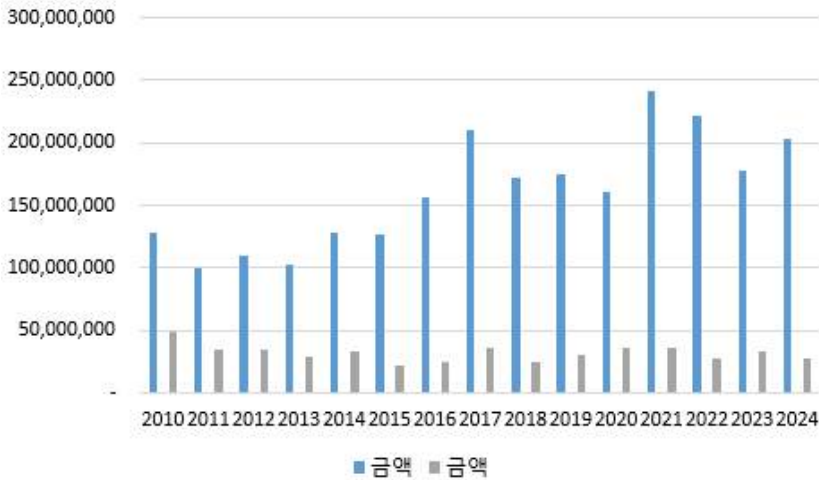
1) 한-EU 수출입 동향⁸⁷⁾

한-EU 수산물 교역은 지난 10년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수출의 경우 2010년 약 1억 2천 8백만 달러에서 2017년과 2021년에 각각 2억 달러를 돌파하며 고점을 기록하였다. 특히 2021년에는 2억 4천 1백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2023년에는 전년 대비 19% 감소하였지만, 2024년에는 2억 377만 달러를 기록하며 다시 반등하였다. 물량 기준으로는 2023년에 일시적으로 확대되었다가 2024년 다소 줄어든 가운데, 평균단가(USD/kg)는 2022년 8달러 수준에서 2023년 5달러로 급락한 뒤, 2024년에 7달러 이상으로 회복하는 흐름을 보였다.

87) KMI 해외시장분석센터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그림 4-12〉 한-EU 수출 현황(2010-2024)

단위: 달러, 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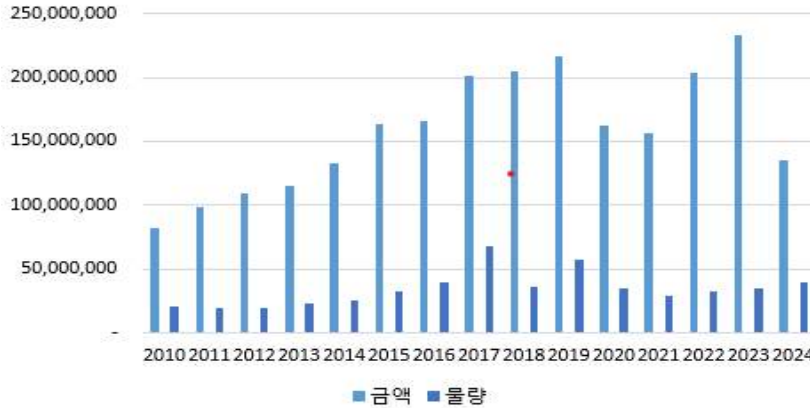


자료: KMI 해외시장분석센터 내부자료

반면, 수입은 확대 추세를 보였다. 2010년 8천만 달러 수준에서 2017년에는 2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2023년에는 2억 3천 3백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24년에는 1억 3천 4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42% 급감하였다. 반면 물량은 같은 기간 오히려 증가하였다. 2024년 총수입량은 약 4천만 톤으로, 전년 대비 15%가량 확대되었다.

〈그림 4-13〉 한-EU 수입 현황(2010-2024)

단위: 달러, kg



자료: KMI 해외시장분석센터 내부자료

최근 3년간 품목별 흐름을 보면 수출은 참치와 김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참치류⁸⁸⁾는 2022년 1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23년 다소 주춤했으나 2024년 약 9천 8백만 달러로 회복하였다. 참치는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교역 변동성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김은 2022년 2천 7백만 달러에서 2024년에는 4천 7백만 달러까지 확대되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이 외에도 일부 참치 세부 품목이나 오징어, 게살 가공품 등이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수출 구조는 여전히 ‘참치와 김’에 집중되어 있다.

88) HS 0304879000

〈표 4-6〉 대(對) EU 수출 품목

단위: 천 달러

2022		2023		2024	
참치 (0304879000)	110,858	참치 (0304879000)	82,097	참치 (0304879000)	97,648
김 (2008995010)	27,598	김 (2008995010)	34,267	김 (2008995010)	47,024
대구 (0303630000)	17,295	참치 (0303420000)	13,132	참치 (0303420000)	9,523
참치 (0303570000)	12,590	고등어 (0303540000)	8,943	오징어 (0307432010)	7,888
참치 (0303420000)	11,027	어류 가공품 (1604204010)	4,749	어류 가공품 (1604204010)	4,867
어류가공품 (1604204010)	5,116	게살 (1605101091)	4,465	오징어 (0307432090)	4,279
게살 (1605101091)	3,849	바지락 (0307723000)	3,762	김(마른김 등) (1212211010)	4,040
연어 (0303110000)	3,696	기타 해조류 가공품 (2008995090)	3,736	기타 해조류 가공품 (2008995090)	3,802
김(마른김 등) (1212211010)	2,860	김(마른김 등) (1212211010)	2,860	게살 (1605101091)	3,281
왕게 (0306142000)	2,619	어묵 (1604204090)	2,576	어묵 (1604204090)	2,661

주: 괄호 안의 숫자는 HS Code를 가리킴

자료: KMI 해외시장분석센터 내부자료

수입의 경우 2022~2023년 동안 참치류가 전체 수입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주력 품목이었으나, 2024년 들어 참치류의 수입액이 약 4,880만 달러로 전년 대비 68% 이상 급감하면서 점유율 역시 36%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오징어⁸⁹⁾, 블루 화이팅스⁹⁰⁾ 등 대체 어종이 매우는 구조로 전환되었다. 오징어 수입은 2023년 급감 이후 2024년 다시 1천 3백만 달러 규모로 회복되었고, 블루 화이팅스 역시 2024년에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89) HS 0307432090

90) HS 0303680000

한편, 볼락⁹¹⁾, 골뱅이⁹²⁾, 소금⁹³⁾ 등은 전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안정적 수입 흐름을 유지하였다.

연어의 경우 EU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에 불과하였다. 2022년 연어 수입은 약 787톤, 59만 달러 규모였으며, 2023년에는 886톤, 98만 달러로 물량과 금액 모두 증가하였다. 그러나 2024년에는 1,140톤으로 물량은 확대되었으나 금액은 86만 달러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연어 수입은 주로 필렛, 훈제 등⁹⁴⁾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원물보다는 가공된 형태로 수입되고 있다.

〈표 4-7〉 대(對) EU 수입 품목

단위: 천 달러

2022		2023		2024	
참치 (0304871000)	110,417	참치 (0304871000)	154,133	참치 (0304871000)	48,809
오징어 (0307432090)	13,778	볼락 (0303899050)	14,855	오징어 (0307432090)	13,689
볼락 (0303899050)	11,192	골뱅이(가공) (1605591090)	9,284	볼락 (0303899050)	13,164
골뱅이(가공) (1605591090)	9,362	오징어 (0307432090)	5,438	골뱅이(가공) (1605591090)	7,574
이빨고기 (0303830000)	7,091	참치 (0302351000)	3,793	블루 화이팅스 (0303680000)	5,306
캐비아(기타) (1604320000)	4,950	기타 연체동물 (가공) (1605599090)	3,751	소금 (2501009020)	4,852
소금 (2501009020)	3,999	이빨고기 (0303830000)	3,442	참치 (0302351000)	3,568
기타 수산물 (2301201000)	3,636	소금 (2501009020)	3,516	기타 연체동물 (가공) (1605599090)	2,954

91) HS 0303899050
92) HS 1605591090
93) HS 2501009020
94) HS 1604119000

2022		2023		2024	
참치 (0302351000)	3,475	블루 화이팅스 (0303680000)	2,617	이빨고기 (0303830000)	2,166
기타 연체동물 (가공) (1605599090)	3,276	기타 수산물 (2301201000)	1,530	기타 연체동물 (기타) (0307929000)	2,012

주: 괄호 안의 숫자는 HS Code를 가리킴
자료: KMI 해외시장분석센터 내부자료

2) EU 유기수산물 생산 및 수출입 동향⁹⁵⁾

2020년 유기수산물 생산은 약 74,032톤으로 전체 양식의 6.4%를 차지하였다. 2015년 대비 60%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유기 홍합 생산 확대 덕분이다.

주요 품목은 홍합(41,936톤)이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연어(12,870톤), 송어(4,590톤), 잉어(3,562톤), 굴(3,228톤), 농어·도미류(2,750톤) 순으로 많다. 주요 생산국은 아일랜드(연어·홍합), 이탈리아(홍합·어류), 프랑스(굴·홍합·송어), 네덜란드(홍합), 스페인(홍합·철갑상어), 독일, 덴마크, 불가리아(홍합) 등이다.

유기 홍합과 굴 생산은 증가하고 있지만, 어류(연어·송어·잉어 등)는 생산이 감소 또는 정체 상태에 있다. 농어·도미류만 증가 추세를 보인다. 패류의 경우 일반 양식과 생산 방식 차이가 크지 않아 유기 전환이 쉬운 편이지만, 수질 요건을 A등급 수역(high ecological status)으로만 제한하여, 유기 전환에 제약이 되고 있다.⁹⁶⁾

95) EU(2022), pp. 10-43.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96)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Regulation (EU) 2018/84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May 2018 on organic production and labelling of organic product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C) No 834/2007.)

어류는 유기사료와 종묘 확보 문제, 기존 양식 방식(복합양식, 순환여과식 양식)과의 불일치, 기존 제도와 불일치로 생산 확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표 4-8〉 EU 유기수산물 생산 동향(2020)

단위: 톤

국가	유기 생산량	전체 양식 생산량	유기 비중	유기 생산 품목
아일랜드	18,050	37,709	47.9	연어(12,870t), 홍합(5,180t)
이탈리아	9,608	122,778	7.8	홍합(7,759t), 대합(1,320t), 무지개송어(323t), 농어(125t), 도미(223t), 굴(13t), 새우(4.5t)
프랑스	8,955	191,000	4.7	굴(3,178t), 홍합(3,135t), 송어(2,346t), 농어/도미(250t), 잉어류 등(43t), 기타 패류(3t), 송어 알(16t)
네덜란드	7,978	39,940	20	홍합 중심, 굴 소량 생산
스페인	7,476	276,562	2.7	홍합(3,104t), 철갑상어 (2,520t), 송어(916t, 카), 해조류(564t), 농어(210t), 도미(124t)
독일	6,746	32,258	20.9	홍합(6,500t), 송어(250t), 잉어(15t), 기타 어종(35t)
덴마크	5,487	42,607	12.9	홍합(4,818t), 송어(642t), 해조류(22t, sugar kelp 중심)
불가리아	3,004	15,047	20	홍합(3,000t), 해조류(4t)
헝가리	1,743	18,373	9.5	잉어류 등
그리스	1,574	131,645	1.2	농어, 도미 등
루마니아	808	12,200	6.6	잉어(761t), 송어(47t)
슬로베니아	713	1,673	42.6	홍합(623t), 어류(finfish, 90t)

국가	유기 생산량	전체 양식 생산량	유기 비중	유기 생산 품목
리투아니아	614	4,477	13.7	잉어
폴란드	282	47,700	0.6	잉어
크로아티아	280	21,718	1.3	도미(145t), 농어(100t), 홍합(35t)
오스트리아	233	4,527	5.1	잉어(147t), 송어(52t), 송어(2t)
벨기에	11	209	5.3	송어 소량 생산
라트비아	8	717	1.1	

주: EU 회원국 27개국을 기준으로 함
 자료: EU(2022), pp. 10-43.

2020년 기준 EU 유기수산물 교역을 살펴보면, 아일랜드와 크로아티아는 내수 소비보다는 수출 중심의 생산 구조를 보인다. 아일랜드의 경우 전체 유기 연어 생산량의 약 85%, 유기 홍합의 전량(100%)을 프랑스, 독일 등으로 수출하였다. 크로아티아 또한 관광 성수기 동안 서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되며, 일반 수산물보다 약 25% 높은 프리미엄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한편, 스페인은 유기 홍합, 철갑상어, 송어, 농어 등을 수출하고 있으나, 국내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아 수출 규모보다 수입 의존도가 크다. 수입 측면에서는 독일과 프랑스가 대표적인 수입국으로 나타난다. 독일은 아일랜드·노르웨이·영국 등으로부터 유기 연어와 송어를 주로 수입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마다가스카르와 에콰도르산 유기 새우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또한 헝가리는 잉어류 생산량 감소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해 유기 연어 수입을 확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EU 역내에서 생산되는 유기수산물은 상당 부분 EU 내부 시장에서 소비되고 있으며, 특정 품목(연어·새우 등)에 대해서는 제3국 의존도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동등성 인정에 따른 수출입 효과 분석⁹⁷⁾

대(對) EU 수출 가공식품 중 물량이 가장 많은 조미가공김(HS 2008995010), 마른김(HS 1212211010)은 EU 동등성 협정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對) EU 김 수출은 2010년대 초반까지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으나, 2015년 이후 본격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수산물 수출의 주요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2020년 이후 김은 수출 주력 품목으로 부상하였고, 2024년에는 4,702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였다. 최근 3년간의 흐름을 보면, 수출 금액은 2022년 3,046만 달러에서 2023년 3,713만 달러, 2024년에는 5,106만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물량도 같은 기간 1,135톤에서 1,441톤으로 확대되었다. 동시에 평균 단가가 26.8달러/kg에서 35.4달러/kg로 상승하면서 고부가가치·프리미엄 제품 중심의 구조 전환이 뚜렷해졌다.

품목 구성 측면에서 보면, (가공)김(HS 2008995010)이 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가공 중심’ 구조가 정착되었다. 이는 단순한 원초 수출이 아니라 간편 스낵형, 조미김 등 부가가치를 더한 형태의 가공식품이 EU 소비자 수요와 맞물려 성장해 왔음을 보여준다. 한편, 마른김(HS 1212211010) 역시 2024년 404만 달러를 기록하며 비록 규모는 작지만, 증가세를 이어갔다.

97) KMI 해외시장분석센터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표 4-9〉 대(對) EU 김 수출 동향

단위: 천 달러, 톤

구분	금액	물량	(조미) 가공김 ⁹⁸⁾ 비중
2022	30,459	1,135.3	90.6%
2023	37,128	1,338.1	92.3%
2024	51,064	1,440.8	92.1%

자료: KMI 해외시장분석센터

EU와 유기수산물식품 동등성 인정 협정이 체결되면, 조미가공김을 중심으로 한 유기김 수출 효과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 평균 조미가공김 수출액은 약 3,955만 달러, 수출 물량은 1,305톤, 평균 단가는 30달러/kg 수준이다. 이 기준으로 유기 인증 제품의 시장 비중을 5%, 10%, 20%로 가정하면, 각각 약 255만 달러(72톤), 510만 달러(144톤), 1,020만 달러(288톤)의 잠재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표 4-10〉 EU 동등성 인정에 따른 (김) 효과 분석

단위: 천 달러, 톤

구분	금액	물량	평균단가(USD/kg)
(조미) 가공김 최근 3년 평균	39,551	1,305	30.0
유기(5%)	2,553	72.0	35.4
유기(10%)	5,107	144.1	35.4
유기(20%)	10,215	288.2	35.4

자료: KMI 해외시장분석센터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특히 유기 인증 제품은 일반 제품 대비 10~30% 수준의 가격 프리미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물량 확대에 그치지 않고 수출 단가와 총액의 상승효과가 함께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EU 시장에서 친환경

98) HS 2008995010

경·건강 지향 소비가 확산하는 추세와 맞물려, 한국 김의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한편, 수입 측면에서는 부정적 영향도 예상된다. EU는 유기 연어, 홍합, 굴, 송어 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아일랜드, 프랑스, 독일, 덴마크 등의 유기수산물도 EU 역내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동등성 협정이 체결되면 이들 품목의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 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유럽산 유기 연어와 홍합은 ‘친환경·프리미엄’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국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어, 프리미엄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과의 경쟁 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

또한 EU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노르웨이산 연어가 EU로 수입된 후 가공을 거쳐 국내로 재수출되는 경우⁹⁹⁾, 원산지 표시제도에 따라 사실상 EU산 유기 연어로 인식되어 국내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기 연어 수요가 있는 식품산업, 외식 산업, 건강·영양 산업 등에서 유기 연어의 프리미엄 원료 활용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가공식품, 고급 외식 메뉴, 건강기능식품(오메가-3 오일, 단백질 보충제), 화장품·바이오 제품(콜라겐·펩타이드 원료)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EU산 유기 연어가 적극적으로 채택될 경우, 국내 수산물은 프리미엄 시장 진입과 가치사슬 확대 측면에서 상당한 경쟁 압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EU의 유기수산물 생산량 자체가 크지 않고 현재로서는 상당 부분이 역내 소비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시장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99) 노르웨이산 연어는 대부분 폴란드, 프랑스, 리투아니아에서 가공되고 있음 (EU(2022), pp. 10-43.)

〈표 4-11〉 EU 동등성 인정 효과

품목		효과
수출 품목	김	동등성 인정으로 EU 시장 진입 장벽 해소
	전복	신규 시장 개척 가능, 고부가가치 수요 잠재력 확보
	새우	향후 유기 인증 취득 시 EU 내 높은 소비 수요를 기반으로 진출 가능
수입 품목	(아일랜드, (재가공) 노르웨이) 연어	‘친환경·프리미엄’ 이미지로 국내산보다 높은 가격 경쟁력 형성
	(아일랜드) 홍합	(연어) 식품·외식·건강·화장품 등 산업에서 원료 확보 가능
	(프랑스) 굴	

자료: 저자 작성

제3절 동등성 제도 정합성 평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유기 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 기준은 허용물질, 유기식품의 인증 기준, 인증 심사 절차, 인정기관의 지정 기준,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로 구분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이 중 허용물질과 유기식품 인증 기준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EU의 제도 정합성 평가를 하였다.

〈표 4-12〉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 기준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조제1항에 따른 허용물질
- 제9조에 따른 유기식품의 인증기준
- 제11조에 따른 인증심사 절차
- 제27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 제35조에 따른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자료: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1. 허용물질

1) 국내 허용 물질 기준

허용물질은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다루고 있다. 허용물질은 사료, 사료 첨가제, 청소, 소독, 유기가공식품 등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규정하였다. 사료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나목1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용 단미사료와 사용조건에 적합해야 하며, 어분과 어유는 유기수산물 인증 기준에 맞게 생산된 가공 부산물 또는 식용으로 어획된 어류의 가공부산물에서 유래된 것만 허용한다. 사료 첨가제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나목2에서 명시된 보조사료 및 사용조건(천연 유래, GMO 사용 금지)에 적합해야 한다.

청소에 허용되는 물질은 양식생물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며, 양식생물이

없는 경우, 사람의 건강 및 양식장의 환경에 위해가 되는 물질은 허용하지 않는다. 소독물질도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조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으로 제조품목허가 또는 제조품목 신고한 물질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료와 양식생물에 접촉해서는 안 된다.

유기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과 가공보조제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다목1에 적합해야 한다. 기기, 설비 세척, 살균 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은 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제로 사용이 가능한 물질과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하여 고시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만 사용할 수 있다.

〈표 4-13〉 국내 허용물질 기준

허용물질 기준	
사료 원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다목1)의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물질 중 단미사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다목1)의 사용가능 조건에 적합한 것
	식물성: 곡물, 곡물부산물류 등 동물성: 단백질류, 낙농가공부산물류 (양식하지 않은 수산물(곰뱅이 포함), 포유동물 유래 사료는 반추가축 사용 금지) 곤충류, 플랑크톤류, 무기물류, 유지류 광물성: 식염, 인산염류 및 칼슘 염류, 다량광물질류, 혼합광물질류(천연 유래, 야생의 것은 잔류농약 검출되지 않은 것, 천연의 것, 유지류 반추동물 사용 금지, 광물성의 경우, 천연에서 조달 할 수 없는 경우, 화학적으로 충분히 정제된 유사 물질 사용 가능) 어분과 어유(유기수산물 인증 기준에 맞게 생산된 것의 가공부산물 또는 식용으로 어획된 어류의 가공부산물에서 유래된 것)
사료 첨가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다목2)의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물질 중 보조사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다목2)의 사용가능 조건에 적합한 것

허용물질 기준	
	천연결착제, 천연유화제, 천연보존제, 효소제, 미생물제제, 천연향미제, 천연 착색제, 천연 추출제, 올리고당, 규산염제, 아미노산제, 비타민제, 완충제(천연 유래, 합성농약 성분 또는 동물의약품 성분 함유 금지, GMO 유래 사용 금지)
청소	양식생물(수산동물)이 없는 경우 • 오존, 식염, 차아염소산나트륨, 석회, 수산화나트륨, 알코올, 과산화수소, 아세트산, 젖산, 구연산, 요오드포, 과산화아세트산 등 • 일부 물질(차박)은 새우 양식에 한정하여 허용 • 사람의 건강 또는 양식장 환경에 위해(危害)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사용할 수 없음 양식생물이 있는 경우 • 석회석(탄산칼슘) 및 백운석만 허용 • pH 조절 목적에 한함. 백운석은 새우 양식 한정
소독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조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외품으로 제조품목허가 또는 신고된 물질만 사용 가능 • 사용 시 사료 또는 양식생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유기가공식품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다목1)의 식품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로 사용이 가능한 물질 • 식품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로 사용 시 허용 여부와 허용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다목1)을 준용 • 기구·설비의 세척·살균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 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제로 사용이 가능한 물질과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하여 고시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만 사용

자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2) EU 허용물질 기준

EU는 ‘Regulation (EU) 2018/848’ 제24조(Authorisation of products and substances for use in organic production)를 통해 허용물질의 범위와 승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허용물질은 작물 보호, 비료 및 토양 개량, 사료 및 첨가제, 가공보조제, 청소 및 소독제 등 목적별로 구분된다. 이들 물질은 자연 유래(식물·동물·조류·미생물·광물)¹⁰⁰⁾ 물질이어야 한다. 그러나 충분한 양이나 품질의 천연·유기 대체재를 확보할 수 없거나 기능적으로 적합한 대체재가 없는 경우에는 비천연물 또는 비유기물의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사료의 원료와 첨가물은 동물의 건강, 복지, 생리적, 행동학적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 사료에 사용되는 수산물은 반드시 지속가능한 어업을 통해 어획된 것만 사용해야 한다. 광물성 사료, 미량 원소, 비타민 등은 천연 유래 제품의 사용이 우선된다. 다만, 수량이나 품질이 부족하여 천연 제품을 확보할 수 없을 때만 예외적으로 대체품 사용이 허용된다. 또한, 허브, 향신료, 당밀 등과 같은 비유기 사료 원료는 화학 용매를 사용하지 않고 생산·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비유기 사료 원료의 사용량은 전체 사료 건조물 기준 연간 1% 이내로 제한된다.¹⁰¹⁾

가공 유기식품 및 식품용 효모를 생산할 때 사용하는 물질(식품 첨가제, 가공 보조제, 기타 첨가물, 비유기 농산물 등)은 기존에 승인된 대체 물질이나 생산 기술이 없고 해당 물질 없이는 식품의 생산·보존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사용되는 물질은 자연에서 유래한 것이 원칙이며, 처리 과정은 기계적, 물리적, 생물학적, 효소적, 미생물적 방법으로 제한된다.

청소·소독 허용 물질은 알칼리성 세정제, 산류, 산화제, 천연 에센스, 알코올 등 다양한 종류를 포함한다.

100) plant, algal, animal, microbial, mineral origin

101) the use of non-organic spices, herbs and molasses is necessary because such products are not available in organic form; they have to be produced or prepared without chemical solvents and their use is limited to 1 % of the feed ration for a given species, calculated annually as a percentage of the dry matter of feed from agricultural origin. (Regulation (EU) 2018/84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May 2018 on organic production and labelling of organic product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C) No 834/2007.)

〈표 4-14〉 EU 허용 물질

EU		
허용물질	유기 생산	(a) 작물 보호제 성분(plant protection products) (b) 비료·토양 개량제·영양소 (c) 비유기 사료 원료(식물·조류·동물·효모·미생물·광물성) (d) 사료 첨가물 및 가공 보조제 (e) 축산·양식시설, 식물 생산 시설, 저장 및 가공시설의 청소·소독제
	식품 및 사료용 유기 가공식품·효모 생산	(a) 사료 첨가물 및 가공 보조제 (b) 비유기 농산물 원료(유기 원료 부족 시 제한적 사용) (c) 효모 및 효모 제품의 가공 보조제

자료: Regulation (EU) 2018/84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May 2018 on organic production and labelling of organic product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C) No 834/2007, Article 24

EU는 유기식품의 생산과정에서 유기 원료의 일시적 부족이나 기술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경우에 한 해 비유기 원료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¹⁰²⁾ 이 경우, 집행위원회는 승인된 허용 목록(restrictive lists)에 따라 특정 제품이나 물질을 유기생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다. 또한, 회원국은 특정 비유기 원료를 유기 형태로 충분히 확보할 수 없을 때, 사업자의 요청을 받아 최대 6개월간 비유기 원료 사용을 임시로 허가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최대 2회(총 18개월)까지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102) The Commission may authorise certain products and substances for use in organic production, and shall include any such authorised products and substances in restrictive lists, for the following purposes, (Regulation (EU) 2018/84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May 2018 on organic production and labelling of organic product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C) No 834/2007.)

〈표 4-15〉 EU 허용 물질

사료	비유기 식물성 원료	• 곡물 및 부산물 • 유지 작물 • 두류 • 괴근 및 뿌리 • 기타 종자, 과일, 부산물 • 조사료 등 • 기타 식물성 원료
	동물 유래 원료	• 원유, 분유, 유청, 카세인 등 우유 및 유제품 • 어류 • 정제하지 않은 어유 및 대구간유 • 연체류·갑각류 자가용해물 • 효소작용으로 얻은 가수분해물 • 계란 및 계란 가공품
	무기질 원료	• 나트륨, 칼륨, 칼슘, 인, 마그네슘, 황 등
사료 첨가물		• 천연 또는 자연과 동일한 비타민 • 미량원소: 철, 요오드, 코발트, 구리, 망간, 아연, 몰리브덴, 셀레늄 등 • 보존제(산류): 개미산, 초산, 젖산, 프로피온산, 구연산(사일리지 한정) • 향산화제: 천연 토코페롤 • 결합제/응결방지제: 규조토, 벤토나이트, 칼슘스테아레이트 등 • 사일리지 첨가물: 효소, 효모, 박테리아 등 • 효모(<i>Saccharomyces cerevisiae</i>, <i>S. carlsbergiensis</i>) • 사일리지 생산용 원료: 해염, 암염, 당밀, 유청, 곡물가루, 사탕무 펄프 등
청소·소독		• 알칼리성 세정제, 유기산, 산화제, 광물성 소독제, 천연 유래, 착유기구 전용 제품 등

자료: EU(검색일: 2025.9.1.)

우리나라와 EU 모두 유기 배합사료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 기준과 예외 허용 방식에서는 차이가 존재한다. 수산물 원료 사용의 경우, EU는 지속가능어업에서 어획된 수산물 원료를 사용할 것으로 정하

지만, 우리나라는 유기 인증 기준에 적합한 방식으로 생산된 원료 또는 식용으로 어획된 어류의 가공된 부산물을 사용할 것으로 규정하였다.

사료 첨가제와 관련, EU는 비타민과 미량원소 같은 영양첨가물, 산류 기반의 보존제, 항산화제, 효소, 미생물, 사일리지 첨가물 등 동물 건강·복지 유지와 사료 보존에 필요한 기능성 물질을 포괄적으로 허용한다. 이는 사료의 영양학적 완성도와 동물복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보조사료’로 고시된 일부 물질만 사용 가능하고, 기능별 구분이나 사용 목적에 대한 명시가 없다. 이에 따라 제도 적용의 유연성이 부족하고, 현장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나타난다.

청소·소독제에 관한 규정에서도 정합성의 간극이 존재한다. EU는 알칼리성 세정제, 산류, 산화제, 천연 에센스, 알코올 등 다양한 물질을 구체적이면서도 포괄적으로 제시하여 현장 적용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법령상 허용 물질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용 범위가 협소하다.

EU는 비유기 원료의 제한적 사용, 기능성 기반의 사료 첨가제 허용, 현장 적용성을 고려한 청소·소독제 규정 등을 통해 다소 포괄적이고 유연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허용 물질 목록에 근거한 제한적·엄격한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EU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포지티브 방식¹⁰³⁾을 취한다고 볼 수 있다.

103) 법률과 정책에서 허용되는 것들을 나열하고 이외의 것들은 모두 허용하지 않는 규제를 의미

〈표 4-16〉 한-EU 허용물질 기준 정합성 검토

정합성: 높음 - ●, 보통 - △, 낮음 - ▽

항목	한국	EU	정합성 수준
사료	- 유기 배합사료 사용 원칙 - 어분 및 어유: 원료 출처를 유기·식용 부산물로 한정	- 유기 배합사료 사용 원칙 - 비유기 원료 제한적 허용(유기 원료를 충분히 조달할 수 없는 경우 예외 적용) - 수산물: 지속가능 어업 유래만 가능	△
사료 첨가제	유기 배합사료 제조용 물질 중 보조사료로 인정된 일부 물질만 허용	- 동물 건강·복지·생리 요구 충족 - 영양첨가물, 미량원소, 보존제, 향산 화제, 사일리지용 첨가물 등 포괄적 허용	▽
청소	- 양식생물 유무 따라 허용물질 상이 - 허용물질 범위 제한적	- 청소용 허용물질 구체적: 포괄적 명시 - 알칼리성 세정제 산류(젖산, 구연산, 아세트산), 산화제(과산화수소, 차아염소산), 알코올(에탄올, IPA), 일부 천연 에센스 등 구체적·다양	▽
소독	동물용 의약외품 허가/신고 물질만 허용		▽

자료: Regulation (EU) 2018/84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May 2018 on organic production and labelling of organic product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C) No 834/2007, Article 24, EU(검색일: 2025.9.1.)
상기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재정리

2. 유기 생산 기준

1) 국내 유기 생산 기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은 유기식품의 생산, 제조, 가공 또는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생산자와 유기가공식품의 제조·가공자, 유기수산물, 유기가공

식품 취급자의 심사사항과 구비요건을 각각 명시하였다.

유기수산물 생산자에 대한 인증 기준(심사사항)으로는 경영관리, 양식장 환경, 수산종자 선택 및 번식 방법, 양식 밀도 및 시설, 양식관리, 동물복지 및 질병 관리, 생산 기자재 위생관리, 사료 및 영양 관리, 생산물의 기준, 생산물의 채취, 운반관리, 기타 등이 있다.

우선, 유기수산물 생산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장이 요구하는 자료(경영 관련 자료, 인증품 생산계획서 등) 제공의 의무가 있으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실시하는 인증 기준 이행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양식장 환경에 대한 심사사항은 양식장의 사용용수(해수, 하천, 호소, 지하수 등)에 관한 것으로 관련 법의 수질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종자의 경우, 모든 병력과 사육 또는 자연채취·포획 이력이 분명해야 한다. 수입된 종자의 경우 병성 감정 결과와 구입 내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유전자 변형 종자 사용은 불허하며, 인위적 개입을 통한 번식은 최소한으로만 허용하며, 수정란 이식기법, 번식 호르몬 처리, 유전공학을 통한 번식기법은 금지된다.

양식 밀도 및 시설은 양식생물의 건강, 영양균형 및 환경영향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거나 권장하는 기준이 있을 경우, 해당 기준 준수가 요구된다. 시설의 경우,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¹⁰⁴⁾, 제42조 제1항¹⁰⁵⁾에 따른다.

또한 모든 양식 과정(종자 도입부터 출하까지)에 대한 기록 유지를 위하여 해당 양식시설에는 식별번호가 부착되어야 한다. 사육 이력 및 병성 감

104) 제9조(양식업의 종류별 양식장 구역의 한계 등) ① 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양식업의 종류별 구역의 한계, 양식장 사이의 거리, 양식방법 및 양식장의 시설 비율은 별표 3과 같다.

105) 제42조(허가 양식업의 양식수산물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의 종류별 양식수산물의 종류 및 시설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4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육상 등 내수양식업의 종류별 양식수산물의 종류 및 시설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정이 되지 않은 수산종자 또는 양식 생물은 입식을 금지한다. 인증품의 채취 및 운송 등을 전후하여 동물의약품 또는 화학 약품 사용이 금지되며, 장비 또는 시설 청소는 허용물질로만 가능하다. 부착생물의 구제는 건조 또는 고압수 사용이 권장된다. 해조류 양식과정에 잡조 제거 시 유기산 등의 화학물질 사용도 금지된다.

동물복지 및 질병 관리 사항으로는 백신 사용은 전염병 발생 또는 확산 예방을 위해서만 허가된다. 질병에 걸린 양식 생물 치료 시 약초, 천연물질을 이용한 자연적인 치료 요법이 우선시되며, 이러한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을 때만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의 처방 및 감독에 따라 동물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 동물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사용 내역과 처방전을 보관 및 관리해야 하며, 출하 제한 기간(휴약기간의 2배)을 준수해야 한다. 휴약기간이 불필요한 경우 최소 1주일 이후 판매용으로 출하할 수 있다.

가두리 양식장의 경우, 일부 가두리에 의약품을 사용하였다면, 출하 제한 기간이 전체 가두리에 적용된다. 의약품을 투약한 수조 또는 가두리에는 투약 사항, 휴약 기간 및 출하 제한을 기록한 표지판을 부착하여 관리해야 한다. 의약품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관리되어야 한다. 성장 촉진제, 호르몬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치료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양식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유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사용 전, 후에 세척해야 한다.

사료 및 영양관리와 관련하여,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되거나 식용으로 어획된 수산물 또는 부산물을 사용할 수 있다. 유기수산물 생산과정 중 심각한 천재지변, 기후 조건으로 유기사료 급이가 어려우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인증기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예외가 적용된다.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 유래 물질, 합성화학물, 항생제 등도 사용할 수 없다. 출하되는 수산물에는 의약품의 잔류가 있어서는 안 되며, 예외적으로

수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의사의 관리에 따라 의약품이 사용되었을 경우, 잔류 허용 기준의 10분 1 이하여야 한다. 생산물의 채취는 위생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인증품 출하 내역이 기록, 관리되어야 한다.

인증품의 운반은 수산물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여 운반하고, 운반에 사용되는 기자재 및 작업종사자로 인해 유기수산물에 위해가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표 4-17〉 유기식품의 인증 기준(생산자)

인증 기준	요건
경영관리	• 경영 관련 자료 기록·보관·생산계획서 등 정보제공 의무(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인증기관 요청 시) • 생산자단체 인증신청서 제출 전 요건 및 자료 보관 • 사업자(대표자 또는 품질관리자), 생산자 대표 또는 생산관리자의 인증 기준 이행교육 이수(최초 인증 전 및 인증 갱신 전)
양식장 환경	• 육상양식장의 용수(해수) 또는 해상가두리 해역의 수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 1)·4)에 적합해야 하며, 수질 시험방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준수 • 내수면양식장의 수질 기준(하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1)에 적합하고 같은 목 2)의 1b등급 이상), 호소(「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1)에 적합하고 같은 목 2)의 1b등급 이상), 지하수(「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수질 기준, 시험 방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준수
수산종자의 선택 및 번식방법	• 전체 병력·사육/자연 채취·포획 이력 명확하고, 병성 감정 결과통지서(수입된 종자)를 첨부하여 종자 구입내역 기록·관리 • 원칙적으로 유기수산종자사용(유기수산종자 구입 불가 시 예외) • GMO 수산 종자 금지 • 생물의 물리·행동 특성 존중, 인위적 개입 통한 번식 최소화 • 수정란 이식기법, 번식 호르몬 처리, 유전공학적 번식기법 금지
양식밀도 및 시설	• 양식밀도는 양식 생물의 건강·영양균형·환경영향을 고려해 적절히 설정(권장 기준이 있을 경우 해당 기준 준수) • 양식장 구역 한계·어장 거리·시설기준 등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수산물의 지속 생산 가능하도록 관리

인증 기준	요건
양식 관리	- 모든 양식시설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유기수산물의 식별과 사육이력 확인 가능하도록 관리 - 사육 이력·병성 감정 없는 수산 종자 및 관행 양식장의 양식 중인 수산물 입식 금지 - 위생적인 인증품 채취·취급, 손상 최소화 - 인증품 채취·운송 전후 수산용 동물용의약품·화학약품 사용 금지 - 양식 장비·시설 청소는 물리·기계적 방법으로 실시(불충분 시 허용물질만 사용하여 청소 가능 [별표 1] 제1호 가목2) - 부착생물 구제 시 건조·고압수 등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 이용 - 해조류 양식 과정에서 잡조(파래, 규조) 제거·병해 방제 시 유기산 등 화학물질 사용 금지
동물복지 및 질병 관리	- 양식 생물에 질병이 없으면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투약 금지 - 전염병 발생 및 확산 예방 차원의 백신 사용 허용 - 수산생물 전염병 우려 시 선제적 방역 조치 가능 - 치료 시 약초·천연물질 등 자연 치료요법 우선 활용 - 예방 백신 및 방역조치, 자연치료 효과 없을 경우 수산질병관리사/수의사 처방·감독하에 동물용의약품 사용(사용 내역·처방전 보관, 출하 제한 기간 준수). - 동물용의약품 사용 시 휴약기간 2배(휴약기간이 불필요한 경우, 최소 1주일) 경과 후 판매용 출하 가능 - 일부 가두리 양식장에 투약 시 전체 가두리에 동일한 휴약기간 적용 - 투약 수조·가두리에 투약 사항, 휴약 기간, 출하 제한 기간 등을 기록한 표지판 부착 - 동물용 의약품은 잠금장치 보관함에 별도 보관·관리 - 성장촉진제·호르몬제 사용 금지(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처방 및 감독에 따라 치료 목적 시 처방 필요) - 스트레스 최소·건강 유지 위한 관리 체계 구축
생산 기자재 위생관리	사료 제조기, 뜰채 등 생산에 사용되는 기자재: 사용 전·후 세척 등 위생적으로 관리
사료 및 영양 관리	-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 식용으로 어획된 수산물의 부산물, 식용이 가능한 수산물 - 천재지변 등으로 유기 사료 급여 곤란 시 일정 기간 예외적 급여 허용(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기준 준수) - 사료에 GMO 원료 함유 금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정한 범위에서 비의도적 혼입 예외 적용) - 대사기능 촉진을 위한 합성화합물, 합성질소, 비단백대질소, 항생제·합성항균제, 성장촉진제, 호르몬제, 기타 인위적 합성·유전자 조작에 의해 제조·변형된 물질 첨가 금지

인증 기준	요건
	여과섭식수산동물은 자연에서 필요한 모든 영양 섭취(부화장 및 양식장에서 키우는 유생 제외)
생산물의 기준	- 유기수산물로 출하된 수산물에 동물약품 잔류 불허 - 단,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의 관리·처방하 사용 시 잔류량은 식약처 공전 동물약품 잔류허용기준의 1/10 이하
생산물의 채취	- 위생적인 채취 및 채취작업자의 위생관리 철저(오염방지) - 병충해 피해 또는 외관 손상 수산물 선별·제거 - 채취한 생산물은 유해동물에 의한 오염 또는 이물질의 혼입 방지, 야외 방치 금지 - 인증품 출하 내역(일자, 품명, 판매처, 주소, 판매량 등) 기록·관리 - 해조류: 생태계 환경 피해 최소화, 지속가능한 양식·채취
운반관리	- 수산물의 스트레스 최소화 - 운반차량 사용 용수(유기수산물 양식장 환경 기준 충족) - 위생적으로 제조한 얼음 사용 - 장거리 구간 운반 시 수산물 스트레스 최소화(용존산소 공급 등 적절한 관리 방법 적용) - 수산물의 생물, 화학, 물리학적 위해 방지를 위한 운반 기자재 및 작업 종사자의 위생 관리 철저 및 장거리 운반을 이유로 약품 사용 금지
기타	인증품은 수산종자 도입부터 판매까지 상기 기준을 준수하여 양식

자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을 바탕으로 저자 재정리

2) EU 유기 생산 기준

EU ‘Regulation (EU) 2018/848¹⁰⁶⁾’의 제3장(Chapter III. Production Rules)은 유기농축수산물·가공 등의 유기 생산의 기본 원칙 및 의무사항을 규정한다. 구체적인 생산 규칙은 부록 II(Annex II)¹⁰⁷⁾를 통해 부문별로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부록 II의 Part 3(Production rules for

106) Regulation (EU) 2018/84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May 2018 on organic production and labelling of organic product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C) No 834/2007

107) Detailed Production Rules Referred to in Chapter III

algae and aquaculture animals)은 해조류, 양식생물, 이미패류 등에 대한 유기 생산 규칙을 명시하고 있다.

유기생산의 일반 규칙은 유기생산에 적합한 환경 조건, 오염방지, 사업장 관리, 지속가능한 관리계획 수립, 환경영향 최소화, 포식자 대응, 폐기물 감축, 에너지 사용 절차 등을 포함한다.

장소의 경우, 유기생산에 적합한 환경 조건을 갖춘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오염 방지가 최우선 원칙이다. 따라서 유기 생산 단위는 유기와 비유기 단위를 명확히 분리하여 운영해야 하며, 이는 지형적 조건, 수계의 흐름, 조류(潮流) 방향, 상류·하류 위치 등을 고려한 최소 분리 거리 확보를 통해 보장된다. 만약 해당 지역이 회원국 당국에 의해 유기 생산에 부적합하다고 지정된 경우, 해당 장소에 생산된 제품은 유기 인증을 받을 수 없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연간 20톤 이상 생산하는 신규 사업자로 ‘환경영향평가 지침(Directive 2011/92/EU)’ 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기존에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었으면 기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맹그로브와 같은 민감한 생태계의 훼손은 금지된다.

모든 사업자는 생산 단위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경영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매년 갱신되어야 한다. 계획에는 사업 운영이 환경에 미칠 영향, 환경 모니터링, 수질과 영양염 배출 관리, 장비의 점검 및 수리 기록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포식자 방지를 위한 조치 역시 EU 서식지 지침(Directive 92/43/EEC)과 각국의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은 모두 지속가능한 경영계획에 기록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접한 양식장 운영자들과 협력하여 공동의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아울러 사업자는 양식장 운영 시점부터 폐기물 감축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동 계획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절차를 포함하며,

에너지 사용 측면에서도 가능하다면 재생에너지의 잔여 열을 활용하도록 권장된다.

〈표 4-18〉 조류 및 수생동물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조항	주요 내용	
1.1	오염 방지	• 유기 생산에 허용되지 않은 물질이나 오염 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운영 불가
1.2	유기·비유기 단위체 간 격리	• 회원국이 정한 최소 분리 거리, 수계(상·하류), 조류 흐름 등을 고려해 명확히 분리 • 회원국이 '부적합 지역'으로 지정한 장소에서의 양식·해조류 생산은 유기 생산으로 인정되지 않음
1.3	환경영향평가 의무	• 연간 20톤 이상 생산 신규 운영자: 환경영향 평가 의무화
1.4	맹그로브 보호	• 맹그로브 산림의 손실이나 파괴 금지
1.5	지속가능한 관리계획 수립	• 모든 양식업자
1.6	관리계획 내용	• 매년 갱신되어야 하며, 수질·영양물질 유출, 장비 관리, 환경 감시 조치 등을 포함
1.7	포식자 대응 기록	• 포식자 방지 조치
1.8	인근 사업자와 조정	• 인접 운영자와의 협력·조율 가능
1.9	폐기물 감축 및 에너지 사용	• 폐기물 감축계획 포함, 잔여열 사용은 재생 에너지 우선
1.10	가공 외 처리 작업	• 해조류 및 수생동물에 대한 세척, 선별 등의 비가공 처리작업에는 Part IV의 1.2~2.2.3 조항을 준용

자료: Regulation (EU) 2018/84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May 2018 on organic production and labelling of organic product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C) No 834/2007 Annex II를 바탕으로 저자 재정리

부속서 II(ANNEX II)의 제3장(Part III)에서는 유기 해조류 및 양식 동물의 생산에 필요한 규칙을 정하고 있다. 우선, 해조류 생산 기준은 전환기, 채집지역의 생태적 요건, 야생조류의 지속가능한 채집 기준, 해면 및 육상 재배 조건, 재배 장비의 재사용·재활용 기준 등을 포함한다.

유기 생산 전환을 위해 채집용 생산단위체는 6개월, 재배용 생산단위체는 6개월 또는 한 번의 완전한 생산주기 중 더 긴 기간을 전환기로 설정해야 한다. 야생 조류의 채집이 유기 생산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집 지역이 양호한 생태환경을 유지해야 하며, (EC) No 854/2004에 따른 A급 또는 B급 생산 구역이거나¹⁰⁸⁾, 2019년 12월 14일부터는 (EU) 2017/625 제18조 8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¹⁰⁹⁾이어야 한다. 아울러 채집 활동이 해조류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유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포자 채집부터 수확까지의 전 과정에 지속가능한 생산 기준이 적용되며, 포자 채집은 단순히 재배를 위한 종묘 확보 차원을 넘어, 실내 배양물(indoor culture stock)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증진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¹¹⁰⁾ 화학비료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해조류 재배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조류를 활용하거나, 복합 양식의 일부로서 인근 유기 양식장에서 유래한 영양분만을 이용해야 한다. 육상 양식장에서 외부 영양원을 사용하는 경우, 배출수의 수질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배출수의 영양염 농도는 유입수의 농도와 동일하거나 그 이하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양식이 주변 수생환경에 추가적인 부담이나 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사용할 수 있는 영양원에는 엄격한 제한이 따른다. 식물 기원 또는 광물 기원의 영양원만 허용되며, 유기 생산에 사용하도록 승인된 물질이어

108) A구역: 인간 소비 가능, B구역: 정화처리 후 소비 가능, C구역: 장기간 정화 후에만 가능

109) The Commission shall by means of implementing acts, establish the specific requirements for the classification of production and relaying areas from which live bivalve molluscs, echinoderms, tunicates and marine gastropods may be harvested.

110) ensure that a wide gene-pool is maintained, the collection of juvenile algae in the wild shall take place on a regular basis so as to maintain and increase the diversity of indoor culture stock

야 한다. 즉, 화학 합성 영양원이나 비유기적 성격의 영양원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재배 밀도 및 작업 집약도도 기록되어야 하며, 조류의 총량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조류 재배에 사용되는 밧줄이나 기타 장비는 가능한 한 재사용 또는 재활용해야 하며, 일회용 장비 사용은 권장되지 않는다.

야생 조류를 채집할 경우, 채집 시작 전 생물량 측정을 통해 채집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고, 채집은 수생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업자는 채집자가 규정에 따라 생산된 야생조류만을 공급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서면 보고서로 보관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관리당국 또는 인증기관이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공동 채집 구역에서 조류를 채집할 때는 해당 회원국의 지정기관이 발행한 증거서류를 통해 해당 채집 활동이 규정을 준수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표 4-19〉 조류 및 수생동물 요구사항

조항	주요 내용	
2.1	전환기	• 채집: 6개월 • 재배: 6개월 또는 1회 생산주기 중 더 긴 기간
2.2	해조류 생산 통칙	채취 지역은 양호한 생태환경을 유지해야 함 ① (EC) No 854/2004에 따라 A급 또는 B급 생산구역 (~2019.12.13.) ② (EU) 2017/625 제18조8항에 따라 설정된 동등 등급 구역 (2019.12.14.~) (b) 생태계 영향 기준 채취 활동이 자연생태계의 안전성과 종의 보존에 중대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 포자 채집부터 수확까지 생산 전 과정에 걸쳐 지속가능성 방법을 적용해야 함 • 실내 배양종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야생에서 종묘 채취 • 비료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실내 배양시설에서만 Article 24에 따른 유기생산물 허용 비료 사용이 가능
2.3	조류 재배	해상 양식에서는 자연 발생 영양염이나 인근 유기 양식장에서 발생한 영양염만을 이용해야 하며, 다종양식(polyculture) 시스템과의 연계를 우선 고려

조항	주요 내용
	육상 재배 조건 외부 영양원을 사용하는 경우, 배출 폐수의 영양분 수준 ≤ 유입수 수준 유기생산에 승인된 식물 또는 광물성 영양소만 사용 가능(제24조 기준) 재배 밀도 및 환경영향 관리 재배 밀도/작업 집약도 기록 필수 조류의 총량은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 이내로 유지 재배 장비 사용 원칙 조류 재배에 사용하는 로프 및 기타 장비는 가능한 한 재사용 또는 재활용해야 함 일회용 사용은 지양하고, 순환경제 원칙 적용
2.4	야생 조류의 지속 가능한 채집 • 조류 채집을 시작하기 전에 1회성 생물량(biomass) 측정을 실시하여 채집 가능 여부 및 지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함 • 채집자가 해당 규정에 따라 생산된 야생조류만을 공급했음을 확인하는 내용을 사업자는 서면 보고서로 보관. 이 정보는 관리당국 또는 인증 기관이 검증해야 함 • 채집은 수생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으로 수행 • 공유 또는 공동 채집구역에서 채집하는 경우, 해당 회원국 지정 기관이 발행한 증거서류를 통해 전체 채집 활동이 규정을 준수함을 증명

자료: Regulation (EU) 2018/84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May 2018 on organic production and labelling of organic product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C) No 834/2007 Annex II를 바탕으로 저자 재정리

양식 생물(어류, 갑각류, 극피동물, 이미패류 등)의 유기 전환을 위한 전환기는 양식시설의 상태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배수, 세척 및 소독이 완료된 시설은 6개월, 배수 완료 또는 휴경한 시설은 12개월, 배수, 세척, 소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24개월의 전환 기간이 요구되며, 해상 양식장은 3개월을 요구한다.

유기 양식은 원칙적으로 유기 인증을 받은 종자와 산란 개체에 기반해야 한다. 그러나 유기 종자의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는 제한적인 조건에서 비유기, 야생 종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전환기간(최소 3개월)을 거쳐 유기 관리하에서 사육된 후에만 유기로 인정된다. 모든 종자의 사용

내역과 관리 과정은 기록되어야 하고, 반드시 인증기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특히 멸종위기종(IUCN Red List)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공식 보전 프로그램의 일환이어야 한다.

번식과 관련해서는 유기 생산의 기본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된다. 무엇보다 호르몬이나 호르몬 유도체의 사용은 금지되며, 단성(monosex) 개체의 인공 생산, 다배체(polyploidy) 유도, 인공 교잡(hybridisation), 복제(cloning)와 같은 인위적 개량 기술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유기 양식에서의 번식은 철저히 자연적이고 전통적인 방법에 기반해야 한다. 다만 수작업에 의한 선별(hand-sorting)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유기 양식에서 사료 관리는 단순히 영양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동물복지, 최종 제품 품질, 환경영향 최소화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먼저, 어류·갑각류·극피동물 등은 성장 단계별 영양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사료를 공급받아야 한다. 급이 체계(feed regime)는 ① 건강과 복지의 보장, ② 최종 식용 제품의 품질 확보, ③ 환경적 부담의 최소화를 우선순위로 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사료의 식물성 성분은 반드시 유기농 원료여야 하며, 수산물 유래 성분은 유기 양식 또는 EU 공동수산정책(Common Fisheries Policy, Regulation (EU) No. 1380/2013)에 부합하는 지속가능 어업에서 확보된 원료여야 한다. 비유기 사료 원료(식물·동물·조류·효모 기원), 광물 및 미생물 기원 원료, 사료 첨가제 등은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성장촉진제와 합성 아미노산의 사용은 전면 금지된다.

굴·홍합 등 여과섭식종은 원칙적으로 자연 플랑크톤에 의존하여 영양을 충족해야 하며, 부화장이나 중간육성 단계에서만 예외가 적용된다. 양식 생물이 서식하는 수역은 수질과 생태 상태가 양호한 지역이어야 하며, 수산물 위생 규정상 A구역 또는 이에 상응하는 등급의 수역에서만 유기 인증이

가능하다.

육식성 어종의 경우, 사료 공급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 어분과 어유는 유기 양식에서 유래한 사료가 최우선이며, 유기 양식 부산물에서 유래한 어분·어유, 식용 어획물의 부산물, 식용으로 이용되지 않는 어획물에서 얻은 원료의 순으로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원료는 반드시 지속가능 어업에서 확보되어야 하며, 보조적으로 유기 식물성 사료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식물성 성분의 비율은 전체 사료 성분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내수면 어류, 흰다리새우·민물새우, 열대 담수어 등 일부 종은 양성 단계에서 자연 먹이를 우선으로 섭취해야 하며, 먹이가 부족할 때만 유기 식물성 사료(가능하면 자가생산) 또는 해조류로 보충할 수 있다. 단, 이러한 보충의 필요성은 반드시 문서로 증명되어야 한다. 추가 사료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어분과 어유 사용에는 엄격한 상한선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흰다리새우와 민물새우는 어분 25%, 어유 10%까지만 허용되며, 팡가시우스(catfish)는 어분 또는 어유 10%까지만 허용된다¹¹¹⁾.

유기 양식에서 보건관리는 질병 예방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때에만 엄격한 조건에서 치료가 허용된다. 먼저, 질병 예방은 최적의 사육 환경 유지에서 출발한다. 이는 양식장의 입지, 수질, 수류, 환수율을 종별 특성에 맞게 확보하는 것뿐 아니라, △ 양식시설의 적정 설계 △ 규칙적인 청소와 소독 △ 고품질 사료 공급 △ 적절한 입식 밀도 유지 △ 건강하고 강건한 품종 및 계통의 선택 등을 포함한다.

예방 차원에서 수의학적 약품(백신 등)의 사용은 허용되며, 모든 양식장은 질병 예방 및 생물보안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수산동

111) Regulation (EU) 2018/84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May 2018 on organic production and labelling of organic product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C) No 834/2007 Annex II

물 보건 전문가와의 서면 협약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문가들은 매년 최소한 차례(이매패류의 경우 2년에 한 번) 현장을 방문하여 컨설팅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사육 장비와 도구는 반드시 적절히 청소·소독되어야 하며, 부착생물은 물리적 방법이나 수작업으로만 제거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이를 바다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

생산주기 종료 후에는 필요에 따라 휴경을 시행할 수 있으나, 이매패류 양식에는 해당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료 찌꺼기, 분변, 폐사 개체는 신속히 제거하여 수질 오염과 질병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부화장과 중간 육성장에서는 자외선 및 오존 처리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외부 기생충 방제는 청소어, 담수육, 해수육, 염화나트륨 용액과 같은 생물학적·물리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한편, 수의치료는 동물복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즉시 시행되어야 하며, 우선적으로 식물성 약제, 동종요법제, 천연 면역자극제 등의 대체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화학 합성 수의약품(항생제 포함)도 수의사의 책임하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합성의약품 사용 횟수는 엄격히 제한되며, 원칙적으로 연간 두 차례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생산주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한 차례만 허용된다.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개체는 유기 인증을 받을 수 없다. 기생충 치료 또한 연 2회(생산주기 18개월 미만의 경우 1회)까지만 허용된다.

합성의약품이나 기생충 치료제를 사용할 경우, 휴약기간은 일반 법령(Directive 2001/82/EC)에서 정한 기간의 두 배가 적용된다. 모든 치료 기록은 철저히 문서화하여 관할 당국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치료받은 개체는 반드시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유기 양식의 사육 환경과 사양 관리 규정은 자연조건과 동물복지 보장을 핵심 원칙으로 한다. RAS 양식 시스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다만 부화장, 중간 육성장, 또는 유기 사료 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물의 인위적 가열·냉각 역시 제한되며, 이는 부화장과 중간 육성장에서만 가능하다. 단, 지하수는 모든 생산단계에서 냉·난방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육 환경은 종별 요구에 맞게 설계되어야 하며, 동물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질은 적절한 유속과 교환율, 충분한 산소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대사산물 축적은 낮게 관리해야 한다. 온도와 광주기 역시 종의 생리적 요구와 지리적 위치를 고려해 조절되어야 한다. 입식 밀도의 적정성은 지느러미 손상, 상처, 성장률, 행동, 건강 상태와 같은 동물복지 지표와 수질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담수어는 가능한 한 자연에 가까운 저질 환경에서 사육해야 하며, 특히 잉어와 유사 종은 반드시 자연 흙바닥에서 길러야 한다. 연못과 호수의 비료 사용은 유기·광물성 비료만 허용되며, 질소 사용량은 최대 20kg/ha로 제한된다. 또한 수생식물 제어를 위한 합성 화학물질 사용은 전면 금지된다.

양식시설은 우수 조건과 물리·화학적 환경이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보장하고, 행동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종별로 정해진 세부 요건을 따라야 한다. 육상 양식장은 유입수와 배출수의 수질 및 유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우수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 양식장 부지의 전체 둘레 중 최소 10% 이상의 면적에는 자연 식생이 조성되어야 한다. 해상 가두리 시설은 수류, 수심, 교환율이 충분한 수역에 위치해야 하며, 해양 환경 조건에 적합하도록 설계·건설·유지되어야 한다.

모든 양식시설은 탈출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어야 하며, 만약 탈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포획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또한 못, 수조, 유수식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배출수는 반드시 적절히 처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양식장은 △ 자연 여과지 △ 침전지 △ 생물학적 또는 기계적 여과장치 등을 설치하거나, △ 해조류 및 이매패류와 같은 생물을 활용하여 수질을 정화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배출수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동물복지는 사육 전 과정에서 스트레스와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양식에 관여하는 모든 인력은 기본적인 보건 지식과 동물복지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동물복지를 사육과 관리 과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동물의 취급은 가능한 한 최소화되어야 하며, 불가피하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스트레스와 신체적 손상을 줄일 수 있는 적절한 장비와 절차를 사용해야 한다. 특히 산란 개체는 반드시 마취하에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며, 크기 구분 등은 필요할 때만 동물복지 보장을 목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사육 환경에서의 인공조명 사용은 제한된다. 자연 일조 시간을 인위적으로 연장할 수는 있으나, 하루 최대 14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이는 동물의 행동적 필요와 건강을 존중하기 위함이다. 조명의 전환 시에는 조광기 등 장치를 활용하여 급격한 빛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피해야 한다. 또한 동물복지 확보를 위해 폭기는 허용되지만, 기계식 폭기 장치는 가능하다면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산소 사용은 엄격히 제한되며, △ 기온·기압 변화 △ 수질 오염과 같은 예외적 상황, △ 표본 조사·선별 과정, △ 개체 생존을 보장해야 하는 위기 상황에서만 허용된다.

양식 생물의 운송은 최소한의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하며, 장시간 운송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동물의 생애 전 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은 피해야 하며, 이는 도살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도살 시에는 동물을 즉시 기절시켜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고, 도살 전 취급 또한 상해와 스트레스 최소화를 원칙으로 한다. 아울러, 새우류 양식에서 흔히 행해지는 안경절단(eyestalk ablation)은 결찰, 절개, 압착 등 모든 유사 행위와 함께 금지된다.

유기 연체동물 양식에서 종자 출처는 유기 생산의 핵심 요소이며, 야생 종자의 사용은 일정 조건에서만 허용된다. 이 경우, 환경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반드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종자 채집은 △ 겨울철 생존 가능성이 낮은 치패 군집(settlement beds) △ 필요량을 초과한 군집 △ 채묘기에 부착된 자연 발생 치패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참굴(*Crassostrea gigas*)의 경우에는 자연 산란을 줄이기 위해 선택육종된 계통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모든 야생 종자는 채취 시기·장소·방법을 문서로 기록하여 추적 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며, 반드시 관할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패류는 같은 수역에서 유기 어류나 해조류와 함께 사육할 수 있으며, 복족류(periwinkles 등)와의 복합양식도 허용된다. 생산은 부표·말뚝·기타 표식으로 경계가 표시된 수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에 따라 망사 주머니, 가두리 등 인공 구조물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조류 포식자 방지망을 사용하면 보전 가치가 있는 종이나 해조류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양식 방식 측면에서는, 혼합 수하식 양식 등 시행규칙에서 허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바닥양식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경우 생산자는 반드시 환경영향조사와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속가능경영계획에 포함하고, 이를 관할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유기 양식장은 동일 지역 내 비유기 양식장의 밀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필요할 경우 선별이나 간벌(thinning) 등의 작업을 통해 밀도를 조정해야 한다. 부착생물은 반드시 물리적 방법 또는 수작업으로 제거해야 하며, 제거한 생물은 양식장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 다시 방류할 수 있다. 다만, 경쟁 부착생물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생산주기당 1회에 한해 석회액 처리가 허용된다. 굴 양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 규정이 적용된다. 굴은 트레슬(trestles) 위 주머니(bags)에 넣어 사육하는 것이 허용되며, 구조물은 해안선을 따라 연속적으로 설치하여 장벽을 형성해서는 안 된다.

〈표 4-20〉 수산양식 동물 요구사항

조항	주요 내용	
3.1	일반 요구사항	• 유기 양식의 기본 원칙. 어류, 갑각류, 극피동물, 연체동물, 사료용 수생생물(zooplankton, 미세 갑각류, 환형동물 등)에 적용
3.1.1	전환기	• 기존 시설 유기 전환 시 필수 적용 - 배수·세척·소독 불가 시설: 24개월 - 배수 또는 휴경 시설: 12개월 - 배수·세척·소독 완료 시설: 6개월 - 개방수역 시설(이매패류 등): 3개월
3.1.2	수산양식 동물 출처	• 유기종자(organically bred juveniles) 사용 • 비유기 종자는 승인 필요(전환기 적용) • 조건부로 최대 50%까지 비유기 종자 사용 허용
3.1.3	영양	• 유기·자연 사료 원칙 - 어류: 유기 또는 지속가능 어업 유래 어분·어유 - 갑각류·연체동물: 외부 사료 불허(자연 플랑크톤 섭식) - 식물성 보충사료는 EU 허용 목록에 한해 사용
3.1.4	건강관리	• 예방 중심 수의관리 - 질병 예방 위한 환경·밀도 관리 - 백신 사용 허용 - 항생제 등 합성약품 사용은 제한적 허용, 사용기록 필수

조항	주요 내용	
3.1.5	축사 및 양식 기준	• 자연 조건 반영한 설계·운영 - 수질, 산소농도, 수심 기준 충족 - 자연광·자연수 유입 필수 - 종별 사육밀도 최대 기준 설정
3.1.6	동물 복지	• 스트레스 최소화 원칙 - 자연 행동 유도 - 이동·도축 시 인도적 방법 - 이동 거리 최소화 및 전용 장비 필요 - 안경절단 등 고통 유발 행위 전면 금지
3.2	연체동물 세부 통칙	• 굴, 홍합, 조개류 전용 규정
3.2.1	종자 출처	• 유기 종자 우선 • 승인된 자연채집 종자 사용 가능(관련 서류·당국 승인 필요)
3.2.2	축사 및 생산 통칙	• 자연환경 의존, 양식 구조물 최소화 • 외부 영양원 사용 제한 • 보전종 피해 방지, 포식자망 설계 기준
3.2.3	양식	• 비집약적 양식, 먹이 주입 금지 • 해류·수심 등 자연조건 활용 • 바닥양식(bottom culture)은 환경영향 없을 경우만 허용(영향 조사·보고 의무)
3.2.4	관리	• 수질·환경 지속 모니터링 • 과밀 방지 및 복지 고려 밀도 조정 • 부착생물 물리적 제거 • 생산주기당 1회 석회액 처리 허용 • 장비는 재사용·재활용 권장
3.2.5	굴 재배 통칙	• 트레슬 위 주머니(bags) 방식 허용 • 해안선 장벽(barrier) 형성 금지 • 조류 흐름에 맞춰 배치하여 생산성 최적화

자료: Regulation (EU) 2018/84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May 2018 on organic production and labelling of organic product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C) No 834/2007 Annex II를 바탕으로 저자 재정리

3. 제도 정합성 평가

EU 'Regulation (EU) 2018/848'은 해조류, 양식 어류, 연체류, 패류로 구분하여 세분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은 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어, 품목별 특성을 반영한 기준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또한 EU는 양식시설의 상태와 품목별 특성을 반영하여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의 전환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개방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이매패류 양식은 해류 교환과 자연 정화 작용이 활발하다는 점을 고려해 전환기간을 3개월로 설정하였다. 반면, 배수·세척·소독이 불가능한 내수면 시설은 오염 잔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24개월이라는 가장 긴 전환기간을 요구한다. 또한 배수 또는 휴경을 실시한 시설은 12개월, 배수·세척·소독을 완료한 시설은 6개월로 규정하는 등, EU는 시설 조건과 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차등적 전환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는 전환기간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기존 관행 양식 시설이 유기 양식 시설로 전환되더라도 필요한 최소 관리기간이나 절차가 법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다.

종자와 번식 관리에서 양국은 모두 유기적으로 생산된 종자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유전자조작(GMO), 호르몬 처리, 인공 단성화, 복제 등 인위적 번식기술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 철학은 동일하다. 이는 양측 모두 동물복지와 생태적 건전성 보장을 지향한다는 공통된 접근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세부 운영 기준에서는 차이가 존재한다. EU는 유기 종자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를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비유기 종자 사용을 최대 50%까지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예외는 △ 2021년 1월

이전까지 EU 내에서 유기 종자로 개발되지 않은 종에 한하며, △ 도입 이후 전체 사육 주기의 최소 2/3 이상을 유기 관리하에 운영해야 한다. 또한 이 특례는 최대 2년간만 허용되며 갱신되지 않는다. 나아가 새로운 유전자원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IUCN 적색목록 등재 멸종위기종은 오직 공식 보전 프로그램에 한해 예외가 허용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유기 종자 사용 원칙만 규정하고 있을 뿐, 비유기 종자 도입의 조건, 허용 비율, 관리 기간 등에 관한 명문화된 기준은 부재하다.

사료 관리에서도 양국은 공통적으로 GMO, 항생제, 합성 첨가물 금지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 기준과 운영 방식에서는 차이가 나타난다. EU는 사료 원료를 규정할 때 반드시 지속가능한 어업에서 유래한 수산물물을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반면, 한국은 “유기적으로 생산되거나 식용으로 어획된 수산물 및 부산물”을 원료로 인정하되, ‘지속가능성’에 대한 별도 규정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

또한 EU는 육식성 어종과 새우, 메기 등의 특정 종에 대해 사료 내 어분·어유 사용 비율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¹¹²⁾ 예컨대, 새우는 사료의 최대 25%까지 어분, 10%까지 어유를 사용할 수 있으며, 팡가시우스 메기는 최대 10%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육식성 양식 어종의 사료는 유기 양식 기원 → 지속가능 어업 → 유기 식물성 원료 순으로 사용 우선순위를 정하였다.¹¹³⁾

112) EU(검색일: 2025.5.27.)

113) Feed for carnivorous aquaculture animals shall be sourced with the following priorities:
 (a) organic aquaculture animals and trimmings thereof;
 (b) fishmeal and fish oil derived from trimmings of fish caught for human consumption in sustainable fisheries;
 (c) organic plant products and by-products. (Regulation (EU) 2018/84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May 2018 on organic production and labelling of organic product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C) No 834/2007.)

EU는 양식시설의 수질 관리에 있어 유입수뿐 아니라 배출수까지 포함하여 관리한다. 배출수의 영양염 농도가 유입수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업자는 정기적인 배출수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EU는 육상 양식장의 경우 △ 여과장치 △ 침전지 △ 생물여과 △ 이매패류·해조류 활용 등 정화 시스템을 반드시 갖추도록 의무화하여, 양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부하를 최소화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유입수의 수질에 대해서만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즉, 사용되는 해수·담수의 청결성과 유해물질의 부재를 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배출수의 수질이나 환경영향에 대한 직접적인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배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질 오염이나 영양염 축적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EU는 유기 양식의 기본 원칙을 “동물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데 두고 있다. 예컨대, 종별로 사육밀도의 상한선을 수치로 설정하여 과밀 사육을 방지하고, 수조 내 용존산소 농도, 수류, 수심 등의 조건을 동물의 건강과 복지에 적합하도록 규제한다. 인공조명은 하루 최대 14시간으로 제한되며, 빛의 전환 시에는 점등·소등을 점진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스트레스를 최소화한다. 또한 EU는 안경절단(eyestalk ablation), 인공 단성화, 복제와 같은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도축 시에도 즉각적 무통(無痛) 도살을 원칙으로 하여 동물이 불필요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동물복지 기준은 “스트레스 최소화”나 “건강한 환경 조성” 등 원칙적·선언적 지침에 그치고 있다. 동물복지와 관련된 구체적 수치 기준이나 금지 행위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며, 사육밀도·조명 시간·산소 농도와 같은 정량적 관리 지표가 부재하다.

질병관리와 수의학적 처치는 양측 모두 예방 중심 관리를 원칙으로 하며, 이 부분에서는 비교적 높은 정합성을 보인다. EU는 동물 건강과 환경 보전을 동시에 고려하여 △ 양식장 입지·수질·사육밀도의 최적화 △ 정기적인 청소와 소독 △ 고품질 사료 공급 등을 통해 질병 발생을 최소화하는 체계를 강조한다. 또한 항생제 등 합성 수의약품은 반드시 수의사의 처방 하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시에는 휴약기간을 법정 기준의 두 배로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백신 사용은 허용되며, 항생제는 치료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아울러 EU는 휴약기간 준수와 출하 제한을 명문화하였다.

다만 EU가 우리나라와 차별화되는 지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EU는 양식장 휴식기(fallowing) 제도를 통해 주기적으로 시설을 비워두고 소독 후 재사용하도록 규정하여 질병 발생과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둘째, EU는 정기 건강 자문을 제도화하여, 모든 양식장이 수산동물 건강 전문가와 서면 계약을 맺고, 연 1회(이매패류의 경우 2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 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두 요소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연체동물과 해조류를 다른 양식수산물과 명확히 구분하여, 각 생물의 생물학적 특성과 서식 생태를 반영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연체동물의 경우, 야생 종자 채취는 가능하되 반드시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환경영향조사 및 추적성 기록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바다양식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된다는 전제하에서만 허용되며, 운영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조사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생산 구역은 부표·말뚝 등으로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포식자 방지망을 사용할 경우 보호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해조류에 대해서도 EU는 채취와 양식 전 과정에 걸쳐 기술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예컨대, 야생 해조류 채취 시 절단 높이를 규정하여

개체군이 재생할 수 있도록 하고, 채취 주기와 복원 기간을 설정하여 생태계에 미치는 부하를 줄이도록 한다. 또한 양식 단계에서는 △ 배출수 영양염 관리 △ 로프·장비의 재사용·재활용 △ 다양한 유전자원 확보를 위한 포자 채집 방식까지 규제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연체동물이나 해조류에 대한 별도의 세부 조항을 거두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유기 기준은 모든 수산물을 통합 기준으로 관리하면서, “환경 보전”, “화학물질 금지”, “GMO 금지” 등 원칙적 규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위생관리와 기록 보관은 한-EU 유기수산물 제도 간 비교에서 가장 높은 정합성을 보이는 영역 중 하나이다. 양측 모두 △ 기자재·시설의 위생 관리 △ 허용된 세척·소독 물질 사용 △ 출하 및 이력 기록 관리 등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EU가 보다 엄격한 기록보관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Regulation (EU) 2018/848’ Annex II에 따르면, 유기 생산자 및 운영자는 모든 활동에 관한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여기에는 △ 생산계획 △ 수질 모니터링 △ 수의약품 사용 내역 △ 출하 기록 등이 포함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기록 작성·보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관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또한 지속가능경영계획의 존재 여부 역시 양측 간 큰 차이를 보인다. EU는 유기 양식사업자에게 지속가능경영계획의 수립과 매년 갱신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 계획에는 △ 수질 및 환경 모니터링 △ 영양염 배출 관리 △ 기술·설비의 정기 점검 △ 포식자 방지 조치 △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 재생에너지 활용 여부 등이 포함된다. 사업자는 해당 계획을 기반으로 운영을 점검하고, 관할 기관에 기록·보고해야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별표 3]에서 단순히 생산계획서 제출과 기록 관리를 요구하는 수준에 그치며, 생산과정조사(반기 1~2회)를 통해 경영 관련 자료의 기록 여부만 확인한다.

〈표 4-22〉 한-EU 유기 생산 기준 정합성 검토

정합성: 높음 - ●, 보통 - △, 낮음 - ▽

항목	기준 검토		정합성 평가
	EU	한국	
규정 구조/ 범위	• Annex II Part III에서 조류, 수산양식동물, 연체동물을 분리, 품목별 세부 통칙·특례 명시	양식생물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규율	△
전환기	• 시설 상태별: - 배수·세척·소독 불가 → 24개월 - 휴경/배수 → 12개월 - 세척·소독 완료 → 6개월 - 개방수역(이매페 포함) → 3개월	전환기간 조항 없음	▽
종자 및 번식	• 원작: 유기종자. 불가피 시 비유기 치어 50% 한도 (2년 한시, 미갱신) 호르몬·인공단성·클로닝 금지	종자 입식 시 관행 양식 개체 금지, 병성감정·이력 관리 필요. 예외 허용·수치 규정 없음	△
사료, 영양	• 건강·품질·환경 고려. GMO 금지. 비유기 원료는 허용목록 한정. 여과섭식 연체동물은 외부 사료 금지, 자연섭식 의무 • 원료조달 우선순위: (1) 유기수산 기원 → (2) 트리밍 어분/어유 → (3) 지속가능 어업 부산물 → (4) 유기 식물·동물성 (식물성 ≤60%) • 새우·민물새우: 어분 ≤25%, 어유 ≤10% • 평가시우스: 어분/어유 ≤10%	GMO·항생제·성장촉진제 금지, 식물성 사료는 허용물질 한정. 여과섭식 연체동물은 외부 사료 금지, 자연섭식 의무(부화장, 양식장 유생 제외)	▽
		어분·어유 사용 가능하나 비율·우선순위 기준 부재	
용수	• 육상 양식시설: 배출수 영양염 ≤ 유입수. 배출수 여과·생물여과 시설 의무. 정기적 모니터링	사용(유입) 수질 기준만 존재 (환경법상 해수·지하수 기준 준수). 배출수 기준 없음	▽
사육 환경	• RAS 금지(부화·중간육성 제외). 인공조명 ≤14h. 종별 사육밀도 기준 Annex II에 수치 제시 • 내수면: 자연바닥 권장 • 해상가두리: 수류·심도·교환율 적합 입지	양식장 구역·거리·시설 설치는 타 법령 연계. 유기 인증 내에 밀도·조명·산소 사용 수치 규정 없음	▽

항목	기준 검토		통합성 평가
	EU	한국	
동물복지	• 스트레스 최소화 원칙 + 조명 14h 제한, 운송거리 최소화, 안경철단 금지, 무통 도살 등 구체 기준	“스트레스 최소화” 등 선언적 수준. 동물복지 개념·정량 기준 부재	▽
질병 관리	• 예방 중심 관리: 수질·밀도·세척·휴식기(fallowing) • 항생제 등 합성의약품은 제한적으로 허용, 휴약기간 2배 • 정기 건강자문(연 1회, 이매패 2년 1회)	백신 허용. 항생제는 수의사 처방·치료 목적만. “휴약기간 준수” 규정 있으나 배수·정량화 기준 없음	△
연체동물	• 야생 종자 채취 시: 환경영향 없음·관할 승인 필수·추적성 기록. • 바닥양식은 환경영향 조사·보고서 첨부. • 다품종 양식 허용(어류·조류 동시 양식)	별도 기준 거의 없음. 단, 유기·위생적 관리, 화학물질 금지 수준	▽
해조류	• 유입·유출수 영양염 동등성 유지. 채취 시 생태계 복원 고려. 장비 재사용·재활용 권장	화학물질 미사용, 위생관리 등 원칙 수준	△
위생	• 위생적 기자재 사용, 허용 세척·소독물질만 사용	기자재 위생관리, 유기허용 세척제 사용, 출하 기록·표지판 부착 등 요구	△
기록보관	• 기록은 최소 5년간 보관	기록 보관기간 명시 없음	△
지속가능경영 계획	• 수질·환경 모니터링, 영양염 배출 관리, 기술 설비 점검, 포식자 방지, 폐기물 감축, 재생에너지 활용 여부 등이 포함 작성	생산계획서 제출과 기록 관리 정도만 규정	▽

자료: Regulation (EU) 2018/84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May 2018 on organic production and labelling of organic product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C) No 834/2007 Annex II를 바탕으로 저자 재정리

05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요약과 결론

본 연구는 유기수산물식품 인증 제도의 국제 동등성 추진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특히 2026년 만료 예정인 한-EU 유기농식품 동등성 협정 재협상에 대비하여, 현행 제도와 국제 규범의 정합성을 점검하고, 유기농수산물식품의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EU ‘Regulation (EU) 2018/848’을 비롯한 국제 기준을 검토하였으며, 국내 유기수산물 가공업체 대상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병행하여 현장의 수요와 애로사항을 확인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주요 교역국의 제도 정합성 분석과 생산자·소비자 영향 평가는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유기농수산물식품은 기존 한-EU 협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국내 생산자는 EU 수출 시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국내에 EU가 승인한 제3자 인증기관이 부재하여 사실상 수출이 제한되고 있다¹¹⁴⁾. 이러한 제도적 공백은 생산자의 인증 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글로벌 시

114) '25. 9. 20 확인 기준

장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동등성 인정이 체결되면, 가공식품에 대한 현지 인증 비용을 포함한 유통비용이 절감되어 양국의 소비자 후생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거래 안정성 확보, 수출시장 확대라는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나아가 친환경·건강식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 증가와 K-Food에 관한 관심 확산은 유기수산식품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EU를 비롯한 수입산 유기가공식품 수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국내 유기가공식품 식장에서 수입업체와의 경쟁이 심화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앞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동등성 추진을 위한 방향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제시한다.

제2절 동등성 추진 방향

유기가공식품(수산물 제외)은 미국, EU, 영국, 캐나다와 동등성 인정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중 EU와 체결한 동등성 인정 협정(약정)(Organic Equivalence Arrangement)은 2026년에 만료될 예정이다. EU는 기존의 동등성 인정 협정을 단순한 약정(arrangement) 수준에서 벗어나, 무역 협정(Trade Agreement) 형태로 전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¹¹⁵⁾ 무역협정은 단순히 인증 절차를 조율하는 수준을 넘어서며, 협정문 본문과 부속서를

115) Recommendation for a COUNCIL DECISION authorising the opening of negotiations on agreements on trade in organic products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Argentina, Australia, Canada, Costa Rica, India, Israel, Japan, New Zealand, the Republic of Korea, Tunisi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order to ensure the continuity of trade flows on organics with those partners after 2026, it is necessary to negotiate new equivalence recognitions in the form of trade agreements. (EU, 검색일: 2025.5.14.)

통해 적용 품목과 조건을 규정하며, 공동위원회 운영, 합동 심사, 재검토 조항 등을 포함하며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따라서 기술적 합의나 인증기관 상호 인정 방식만으로는 EU 시장 접근을 확보할 수 없으며, 정부 간 무역 협정을 통해서만 동등성 인정과 시장 접근을 보장받을 수 있다.

향후 EU와의 동등성 협정을 추진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현행 법령상 동등성 협정의 소관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이원화되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및 유기 가공식품을,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각각 관할하고 있다. 그러나 EU를 비롯한 주요 교역 상대국은 대부분 단일 부처에서 동등성 협상을 담당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두 부처가 관할하고 있어, 상대국 입장에서는 협상 파트너가 이원화되어 혼선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협상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¹¹⁶⁾가 공동 협상단을 구성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부처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단일 창구를 유지해 협상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협상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2015년 한-EU 협정에서는 수산 가공식품은 협정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국내 생산자는 EU 수출 시 EU가 인정하는 제3자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더욱이 EU에서 인정한 제3자 인증기관조차 국내에 존재하지 않아¹¹⁷⁾ 사실상 EU 수출이 막힌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협상에서는 수산가공식품을 협정 범위(D 범주, 가공식품)에 포함해, 그간 지속되어 온 제도적 공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생산·가공·유통 단계별 기준을 세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품목이 어류, 이매패류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사전적 제

116)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수입국의 위치에서 제3국의 동등성 신청서를 접수하는 위치였으나, 해양수산부의 경우 수출국의 위치에서 EU 정부에 동등성 신청서를 제출하는 위치가 예상됨

117) '25. 9. 20 확인 기준

도 정비가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국내 인증기관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EU 공인 제3자 인증기관 유치를 통한 상호 인증 체계 확립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생산자의 인증 비용과 시간 부담을 줄이고,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협정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서는 전환 기간 설정이 필요하다. 협정 발효 시 최소 12~24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생산자가 새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예기간 동안에는 △교육·컨설팅 제공 △시험사업 운영 △제도 이행 가이드라인 발간 등을 통해 생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에 따라 협정 이행을 담당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¹¹⁸⁾ 동등성 협정의 성공은 제도 설계뿐 아니라 이를 집행·감독하는 기관의 전문성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전문 인력 확충과 국제 수준의 검증 능력을 갖춘 시험·분석 장비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EU 등 주요 교역국의 인증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합동 심사와 정보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친환경농업 육성 전담조직을 마련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증 제도를 통괄하게 하고, EU의 Traces나 미국의 OID와 같은 전산 시스템 운영 및 관련한 국제협약사무를 통괄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협정의 지속가능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양국 간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협정 운영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공동위원회는 합동 심사, 연례 보고 체계를 통해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례 발생 시에는 신속한 정보 교환 및 공동 시정 조치 마련 등을 수행해야 한다.

118) 미국은 미국 농무성 내에 AMS라는 부서가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 식품 검사국(CFIA)을 두고 있음. 중국의 경우도 인증만 담당하는 CNCA가 있어 유가식품의 제도 운영, 동등성 협정, 인증기관 지정 등을 통괄하고 있음

제3절 정책 제언

1. 협상 추진을 위한 국내 여건 조성

1) 국제 동등성 인증 대응 국내 영향 분석

동등성 협정은 수산업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협상 추진에 앞서 국내 생산·소비·수출입에 미칠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정의 효과를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동등성 협정이 가져올 긍정적 영향으로는 협정 체결을 통한 인증 부담의 감소, 교역 절차의 간소화, 프리미엄 시장 진출 기회 확대, 다양한 유기농식품 증가로 소비자 후생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수입 증가, 생산자의 제도 적응 부담과 같은 부정적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영향 분석은 동등성 협정이 체결되기 전후의 경제적 효과를, 수출, 수입, 생산, 후생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 국내 영향 분석은 협정의 도입 여부를 단순히 찬반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되는 이익과 비용을 균형 있게 검토하여 협상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활용될 필요가 있다. 영향 분석 결과는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구체화하는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협정 발효 이후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토대가 될 수 있다.

2) 제도 개선

동등성 협정이 체결될 경우, 상대국 유기 인증 제도와와의 제도적 정합성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유기 인증 기준과 EU의 ‘Regulation (EU) 2018/848’을 면밀히 검토하고, 양측의 차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양측 제도를 비교해보면 여러 차이가 드러난다.

EU는 해조류, 연체동물, 양식어류 등 품목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 생산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모든 수산물을 동일한 기준으로 포괄 관리하고 있어 품목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 또한 국내법에는 전환기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EU는 시설 상태와 품목별 특성에 따라 3개월에서 24개월까지 차등화된 전환기간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유기 전환 과정의 신뢰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사료 관리에 있어서도 EU는 유기 원료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어업에서 유래한 원료를 허용하고, 육식성 어종·새우·메기 등 특정 종에 대해서는 급이 비율의 상한선을 구체적으로 정해두고 있다. 아울러 사료 원료의 출처와 거래 내역을 기록·보관하여 추적 가능성을 확보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유기로 생산된 사료 원료”만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제도적 유연성이 떨어진다.

동물복지와 질병 관리의 경우 EU는 사육 밀도, 산소 공급, 인공조명 제한, 운송 및 도살 과정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복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양식장 휴식기(fallowing), 동물보건계획(AHMP) 수립, 정기적 건강자문 제도까지 의무화한다. 우리나라는 예방적 관리보다는 사후적 대응에 초점을 두고 있어 국제 기준과의 간극이 크다.

환경 관리에서도 EU는 유입수뿐 아니라 배출수까지 관리하도록 규정하며, 영양염 농도가 유입수보다 높지 않도록 수질을 관리하고, 정화·여과시설 설치 및 배출수 모니터링을 의무화한다. 그러나 우리 제도는 유입수 관리에 국한되어 있어 배출수 관리 공백이 존재한다.

기록 관리와 경영계획 측면에서도 EU는 모든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하고, 매년 지속가능경영계획을 수립·갱신하도록 규정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기록 보관 의무는 있으나 기간이 불명확하고, 경영계획 수립 의무도 없다.

또한 EU는 종자·번식 관리에서 유기 종자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한된 기간과 비율 내에서만 비유기 종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반드시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항생제 사용 역시 치료 목적만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며, 사용 횟수를 초과할 경우 유기 인증 자격이 박탈된다. 우리 제도는 항생제 사용 가능성을 선언적으로 규정할 뿐, 구체적인 사용 횟수나 조건이 명확하지 않다. 더불어 EU는 물리적 조작에 대해서도 안경절단, 지느러미 절단 등 불필요한 신체 절단을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한다. 우리 제도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마지막으로 EU는 인증과 감독 체계에서 인증기관과 감독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분리하고, EU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샘플링 검사, 추가 점검, 예외 허용 중단 등 추가적 통제를 가동한다. 우리나라는 인증기관 지정과 사후 관리 규정은 있으나, 국제 수준의 정교한 감독·제재 장치는 미흡하다.

이처럼 EU 수준의 엄격한 기준에 부합하도록 국내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는 비용 부담과 제도 적응의 어려움이 불가피하다. 특히 사료, 환경, 복지 등 시설 개선과 운영 방식의 변화가 요구되는 분야는 어업인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EU의 규정은 단순히 역내 규정에 그치지 않고, 이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국내 수산업이 국제 시장에서 지속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프리미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동등성 협정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은 △품목별 세부 기준 신설 △전환기간 차등화 도입 △사료 관리 규정의 범위 확대와 구체화 △동물복지·질병 관리 체계 강화 △배출수 포함 수질 관리 체계 확립 △기록 관리 및 경영계획 의무화 △종자·번식·항생제·물리적 조작 관련 세부 기준 정비 △인증·감독 체계 강화 등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제도 개선은 단기간에 전면 도입하기보다, 국내 현실과 생산자의 수용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5-1〉 제도 개선 사항 및 생산자 지원사항(안)

항목	고려 사항	생산자 지원사항
품목별 세부 기준 신설 (해조류·연체동물·양식 어류 등 특성 반영)	• 해조류·연체동물·양식어류 등 품목별 특성에 맞는 세부 기준 신설	• 품목별 표준 매뉴얼 제작 및 보급, 시범 양식장 운영, 교육· 훈련 프로그램 지원
전환기	• 시설 상태와 품목별 특성을 반영한 차등적 전환기 설정	• 전환기 제품 표시 방식 마련
사육 환경	• 수질·용존산소·수류·수심 등 • 환경 기준 마련	• 양식장 환경 모니터링 자동화 장비 지원
동물복지	• 상세 기준 마련: 사육밀도 수치화, 인공조명 시간 제한, 산소 사용 제한, 운송시간 최소화, 인도적 도살, 안경절단 금지 등	• 동물복지를 고려한 양식 시설 개보수 보조, 수의사· 전문가 컨설팅 제공, 예방 중심 질병관리 지원
사료	• 품종별 사료 섭취 기준 마련, 육식성 어종·새우·메기 등 종별 상한 비율 설정, 수산물 유래 원료 출처를 유기 → 지속가능 어업까지 확대	• 유기 사료 구매 지원
종자, 번식	• 비유기 종자 사용에 대한 상세 기준 마련(예외 허용 비율·기간· 승인 절차)	• 유기 종자 개발·보급, 종자 확보 비용 일부 지원
수질 관리	• 유입수 및 배출수 모두 관리, 여과 시설 설치 및 배출수 모니터링 의무화	• 정화·여과 장치 설치 지원, 배출수 모니터링 장비 무상· 임대 제공

항목	고려 사항	생산자 지원사항
질병 관리, 수의학적 처치	• 예방 중심 관리 강화, • 양식장 휴식기(fallowing) 제도화, • 동물보건계획(AHMP) 수립 및 • 정기 건강 자문(연 1회 이상)	• 질병 진단·백신 개발 지원, • 휴식기 손실 보전금 또는 직불제 형태의 지원. 바이오시큐리티 시설·장비 구축 보조
기록 관리 등	• 자료 보관 기간 명시, 지속가능 계획 수립 고려	• 경영계획 수립 교육·컨설팅 제공, 행정 절차 간소화 지원
가공·취급 단계 기준 강화	• 라벨링, 혼합 방지, 잔류물질 관리 등 가공·유통 기준 강화	• 유기 전용 HACCP 가공시설 지원, 첨가물·세척제 기준 교육

자료: 저자 작성

3) 국제 동등성 인증 전·후 맞춤형 생산자 지원

현재 국내 유기수산물식품의 EU 수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EU가 승인한 제3자 인증기관이 국내에 부재하여¹¹⁹⁾ 생산자가 EU 규정에 따른 인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협정 체결 이전까지는 국내 인증기관이 EU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생산자가 직접 해외 인증기관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비용과 절차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유기 인증 품목은 해조류에 국한되어 있어 당장은 제도 개선에 따른 부담이 크지 않다. 그러나 향후 연체동물이나 양식어류 등으로 품목이 확대될 경우, 사료·환경·동물복지·질병관리 등 EU 수준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시설 개선과 운영 변화가 요구되며, 이에 따른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단기적 대응과 중장기적 지원을 구분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119) '25. 9. 20 확인 기준

우선 단기적으로는 EU 수출에 필수적인 TRACES COI 발급 절차, EU 라벨링 요건, GMO·항생제 금지 규정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생산자 대상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수출 전에 인증 적합성을 사전 점검할 수 있는 모의 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불필요한 인증 실패와 통관 지연을 예방함으로써 생산자의 부담을 줄이고 대응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자단체 중심의 공동 대응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EU는 소규모 생산자의 비용 절감을 위해 생산자 그룹 인증(group of operators) 제도('Regulation (EU) 2018/848' 제36조)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영어조합법인, 협동조합, 수협 등을 중심으로 공동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공동 브랜드·마케팅 플랫폼을 통해 EU 시장 내 인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수출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가공·포장·라벨링·물류까지 통합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과 동시에 국제 협상 교섭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국제 동등성 인증 체계는 단순히 제도적 합치성을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 국내 생산자가 단기적으로는 인증 절차와 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품목 확대와 시장 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협정 체결 전후의 상황을 구분하여 맞춤형 지원책을 설계함으로써 생산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오히려 국제 시장 진출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 5-2〉 국제 동등성 인증 전·후 비용 구조 및 생산자 지원 방안

구분	비용 항목	생산자 지원 방안
협정 전	- 제3자 인증 수수료 - 번역·행정 대행비 - 심사 인력 출장비 - 시험·분석 비용	- EU 인증 공백 해소(국내 인증기관의 EU 승인 획득 지원) - 실무 매뉴얼 제작·배포(TRACES COI, 라벨링, GMO·항생제 금지 규정 등) - 수출 전 인증 적합성 사전 점검

구분	비용 항목	생산자 지원 방안
협정 후	• 인증 비용 해소 • 번역·행정비 감소 • 인증 지연으로 인한 기회비용 절감 • 시설·환경·동물복지·질병 관리 기준 강화에 따른 비용 발생	(Pre-audit) 제도 도입
		• 수출 컨설팅·통관 지원 서비스 제공 • 그룹 인증(Group of Operators) 도입 • 수출 컨소시엄 운영(가공·포장·라벨링·물류 통합 지원) • 시설 개보수 보조, 배출수 모니터링 장비·동물복지 친화적 장비 지원 • 대체 사료·질병 예방 프로그램 보급 지원

자료: 저자 작성

4) 동등성 협정 대응 전담 기능 확충

유기수산물식품의 국제 교역 확대를 위해서는 동등성 협정 체결을 전담할 조직의 마련이 필요하다. 현행 제도상 동등성 인정의 근거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그 하위 법령에 두고 있으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에 따라 외국 정부기관의 신청 접수, 동등성 검증, 인정 유지 및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다. 현 단계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외국의 인증 제도가 국내 기준과 동등한지를 비교·검증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관리적 역할을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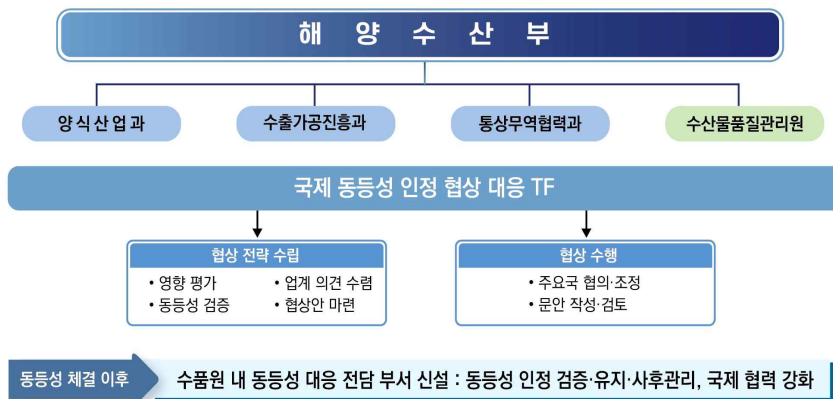
그러나 실제 국제 협상은 단순한 제도 검증을 넘어, 협정 체결국과의 상호주의 원칙 조율, 전산 시스템 연계, 사후관리 체계 협력 등 고도의 정책·외교적 기능을 필요로 한다. 현재의 고시 체계는 절차적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어, EU, 미국 등 교역 상대국과의 협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차이, 통상 분쟁 가능성, 전산 시스템 연계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에는 미흡하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해양수산부 내에 동등성 협정 전담부서(양식산업

과, 수출가공진흥과, 통상무역협력과 중심)를 신설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증·검증 기능과 연계하면서도 국제 협상을 총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동등성 대응 전담조직은 협정 대상국과의 협상, 동등성 평가 절차의 조율, 인증기관 지정·감독, 부적합품 회수 등 사후관리까지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친환경·유기 수산업 육성을 전담하는 상설 기관으로 발전시켜, 국내 인증 제도의 통합 관리와 국제 협약 대응을 일원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향후 동등성 협정 확대와 국제 시장 진출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1〉 국제 동등성 대응 조직(안)



자료: 저자 작성

5) 동등성 인정 사후관리

우리나라의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은 동등성 검증(제6조), 동등성 인정의 유지 관리(제7조), 동등성 인정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제8조)를 규정하며, 사후관리는 시행규칙 규칙 제23조, 제35조를 준용한다. 그러나 세부 운영 방식은 EU, 미국, 캐나다 등 주요 교역국에 비해 단순하여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규정은 정기적 보고 의무, 모의심사 절차, 위험 기반 관리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EU의 경우, 동등성 협정을 체결한 이후에도 상대국의 관리·감독 체계를 지속적으로 검증하며, 필요할 경우 특정 국가나 품목에 대해 추가 관리조치를 부과한다. 실제로 중국산, 페루산, 튀니지산 일부 유기식품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의 샘플링 검사, COI(검사증명서) 검증, 비허용 물질 분석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은 2023년 ‘Strengthening Organic Enforcement(SOE) Final Rule’을 통해 수입 단계에서 수입증명서 의무화, 공급망 추적성 강화, 인증기관 관리 강화 등을 도입하였다. 캐나다 역시 CFIA가 상대국 CA에 대해 모의 심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인증기관의 운영·감독 체계를 직접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다.

주요국의 사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제도는 사후관리 규정이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을 뿐 실제 이행·검증 메커니즘이 구체적이지 않다.¹²⁰⁾ 따라서 동등성 협정 발효 이후에도 신뢰할 수 있는 사후관리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기적 시장 조사와 샘플링 검사 의무화, △국내 CB 간 합동 모의심사의 제도화, △대량평형(mass balance)¹²¹⁾ 및 공급망 추적성 검증 절차의 정례화, △EU의 OFIS나 무역 통제 및 수출 시스템(TRACES)과 같은 국제 전자 시스템과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

120) 가공식품 정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혼란, 정밀 분석 항목 차이 및 검출 기준 차이, 농축산물 또는 해양수산물 소관 전산 이용 혼란 및 수입 증명서 발급 착오, 동등성 인정품 국내 유통 중 부적합품 발견 시 회수 조치 등

121) 일정 기간 동안 유기 원재료의 입고량(구매·생산량)과 산출량(가공·판매·출하량)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검증하는 절차

2. 유기수산물식품 수출을 위한 국내 기반 조성

1) 유기 인증 품목 확대

향후 유기수산물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대상 품목을 넓혀가는 단계별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이미 국내 유기 인증을 받은 김, 가공 미역, 가공 다시마 등 해조류를 중심으로 EU 등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해조류는 양식 과정에서 화학물질 투입이 거의 없어 유기 전환기간을 충족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우며, 생산자에게도 제도 준수 부담이 크지 않다. 동시에 EU 소비시장에서는 해조류가 건강식품 및 친환경 식품으로 인식되며, 채식·비건 트렌드 확산과 맞물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해조류는 단기간 내 수출 확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대표 품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또한, 전복은 EU ‘Regulation (EU) 2018/848’에 따라 여과섭식성 양식 생물에 유기적으로 생산된 해조류를 사료로 급여하는 방식이 유기 양식 기준으로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전복 양식 시 자연 유래 먹이인 다시마 급여가 이루어지고 있어, 별다른 제도적 전환 비용 없이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동등성 체결을 활용하여 유기 인증을 받은 전복을 사용한 자숙냉동전복, 전복통조림 등 상품 개발 확대를 통해 수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새우는 무항생제로 생산되고 있지만 국내에 유기 배합사료가 부재해 유기 생산이 어렵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협상 대상에 포함하기는 어렵지만, 유기사료 개발 등을 추진하여 유기 인증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EU와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는 고품질·친환경 새우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향후 국내산 새우의 유기 인증 획득 시 시장 확대와 수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광어·강도다리 등은 항생제 사용 빈도가 높아 유기 인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양식장 환경 관리, 예방 중심의 질병 관리 강화, 백신 및 대체 치료제 개발, 사육환경 개선 등을 통해 항생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유기 인증 요건 충족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표 5-3〉 단계별 품목 확대 방안

구분	품목	대응 방안
단기(1~3년)	조미김, 가공 미역, 가공 다시마, 전복	해외 판촉, 상품개발 지원 등
중기	새우	유기사료 개발
장기	광어, 강도다리 등	동물복지 개선 양식 환경 개선 (배출수 관리 등) 내병성 품종 개발 등

자료: 저자 작성

2) 유기가공수산물 수출 확대

국내 유기수산물 인정 제도 활성화와 인증 품목 확대가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인증받은 가공수산식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핵심 정책 방향 설정이 요구된다. 첫째, 유기가공수산물 인증의 국제적 통용성을 확보하는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을 통해 비관세장벽 해소와 수출시장 개척·확대 효과를 기대하고, 둘째, 기존 수산물 수출 지원 시스템을 유기 인증 제품의 특수성에 맞게 고도화하여 생산부터 수출까지 이어지는 가치사슬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먼저, 유기가공수산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선결 과제는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을 통해 인증 관련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EU, 영국, 캐나다 등 4개국과 주요 유기식품에 대

해 동등성 협정을 체결하여 국내 인증만으로 상대국 시장에 ‘유기(Organic)’ 표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협정에서 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유기가공수산식품은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어, 유기수산식품 업계는 해외 시장 진출에 있어 제약이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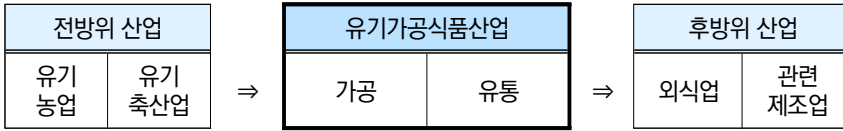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유관 부처와 협력하여, 기존 협정 대상에 유기수산식품을 포함시키기 위한 재협상을 추진하거나, 수산 분야에 특화된 신규 협정 체결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외교적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지원사업 신설을 넘어, 국내 유기수산식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최우선 전략 과제이다.

또한, 민간 측면에서의 유기가공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현행 수출 지원 시스템상에 유기 인증 제품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원 정책 신설 또는 개편이 필요하다. 현행 해양수산부의 수산물 수출 지원 정책은 일반 수산물에 대한 포괄적 지원(K-FISH 브랜드 마케팅, 수출 바우처 등)과 친환경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한 내수 중심 지원(친환경 직불제 등)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에 따라 ‘유기 인증’과 ‘수출’이라는 두 핵심 요소를 전략적으로 결합한 특화 정책이 부재한 상황이다.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노력과 가치가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단절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성공적인 유기가공식품 지원 체계를 벤치마킹 모델로 삼아 정책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유기가공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국제 유기식품 박람회(BIOFACH)에 ‘K-Organic’ 통합 한국관을 운영하고, 해외 바이어 매칭 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며,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를 통해 해외 유기 인증 취득 비용을 지원하는 등 생산-수출 연계형 지원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¹²²⁾

122) 식품음료신문(2025.5.15.)(검색일: 2025.9.20.)

〈그림 5-2〉 유기가공식품산업 활성화 관련 가공·유통 분야 주요 신규 기술개발 과제



- (분야 1: 가공) ① 천연첨가물 ② 기능성 소재 ③ 생산성 제고 기술
- (분야 2: 유통) ④ 유통기한 증진 기술 ⑤ 품목별 특정 포장 기술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5.3.12.)(검색일: 2025.9.24.)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부터 ‘유기가공식품산업 활성화 방안(대책)’을 수립하고, △소비시장 확대, △산업 활성화, △산업생태계 조성 등 전방위적 산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즉, 유기농업을 단순한 생산 방식이 아닌, 가공·유통·외식 등 전후방 산업과 연계된 하나의 산업생태계로 보고, 시장수요에 기반한 기술개발(R&BD)¹²³⁾과 가치사슬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육성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유기수산물 정책 수립 시 실질적인 성과 창출·확산을 위해 참고해야 할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유기농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공백은 위와 같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기농수산물 지원 체계를 벤치마크 모델로 설정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먼저, 유기농수산식품의 글로벌 시장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유기농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신설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BIOFACH 참가 지원 사례처럼, 독일 ‘BIOFACH’나 브뤼셀 ‘Seafood Expo Global’ 등 유기농 및 수산물 전문 국제 박람회에 ‘K-Organic Seafood’ 통합관을 구성하여 참가하고, 유기식품 전문 바이어와의 특화된 온·오프라인 상담회를 연중 기획하여 실질적인 계약을 지원해야 한다.

123) R&DB는 연구개발(R&D)을 넘어 기술의 사업화(Business Development)까지 연계하는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산학연 전문가·대표조직·가공생산자·협회 등으로 구성, R&D 정책, 중장기 로드맵 작성, 연구과제 발굴 등 자문 및 건의 등 기능을 수행함

둘째, 인증지원 및 생산 연계를 위해 ‘수출 연계형 국제인증 지원 강화’가 요구된다. 기존의 국제인증 지원사업 내에 ‘수출 전략 유기 인증’ 분야를 신설하여, 미국 USDA Organic, EU 유기 인증 등 동등성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시장의 해외 인증 취득 비용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또한, 국내 유기 인증을 획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해외 인증 및 수출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여, 국내 생산 기반 강화가 자연스럽게 수출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획기적인 마케팅·판촉 프로모션 등 개선을 위해 ‘프리미엄 유기수산물 브랜드 육성’이 시급하다. 기존의 포괄적 브랜드인 K-FISH와 차별화되는 프리미엄 브랜드 ‘(가칭)K-Organic Seafood’를 개발하고, 해외 고급 유통채널 및 레스토랑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 마케팅을 전개하여 ‘한국산 유기수산물=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고급 식품’이라는 인식을 확립해야 한다.

〈표 5-4〉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유기식품 수출 지원 정책 현황

구분	농림축산식품부 (유기가공식품)	해양수산부(일반 수산물)	해양수산부(유기수산물)
시장 접근	• 전용 ‘수출 활성화 지원 사업’ 운영 * BIOFACH 참가, 바이어 매칭 등)	• 국제 박람회 참가 지원	• 전용 프로그램 부재
인증 지원	• 유기 인증 비용 지원(aT)	• 국제 인증 지원 * ASC, ASC, 할랄 등	• 유기가공수산물 수출 특화 부족
마케팅	• 통합 한국관 내 ‘K-Organic’ 운영	• 국가 통합 브랜드 K-FISH 운영	• 전용 수출 브랜드 부재
규제 장벽	• 미국, EU, 캐나다 등 동등성 협정으로 비관세 장벽 완화	-	• 동등성 협정 대상에서 명시적 배제
생산 연계	• 유기 인증 수출 지원 조건 생산-수출 연계	• 내수용 친환경 직불제 운영	• 국내 생산 지원-수출 전략간 미연계

자료: 저자 작성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내부자료(친환경 수산물 인증 현황, 2025. 9월 기준).
- 김창길·정학균·김태훈·문동형·안병일(2011), 유기식품 인증제도 동등성 관련 영향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민규(2011), 수입 유기식품 동등성 인정에 관한 연구, 국제법무연구, 99, 법무부.
- 송재일(2021), 유기수산물가공식품 분야 글로벌 법제 연구-동등성인정협정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 식품의약품안전처(2016), 「식품의기준및규격」에서정하는가공식품이란?, 개정 2판, 식품의약품안전처.
- 해양수산부(2024), 제3차 친환경어업육성계획.

법령

- 수산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제2024-14호, 2024.11.27.).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18호, 2025.6.2.).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10호, 해양수산부령 제517호, 2021. 12.22.)

식품위생법 (법률 제20438호, 2024.9.20)

유기가공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해양수산부고시 제2019-83호, 2019.6.20.).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3-28호, 2023.7.13.).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3-41호, 2023.12.27.).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4-1호, 2024.3.7.).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705호, 시행 2024.11.26.).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45호, 2021. 8.1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913호, 2023.12.12.).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732호, 2025.4.28.).

Council Regulation (EC) No 834/2007 of 28 June 2007 on organic production and labelling of organic products and repealing Regulation (EEC) No 2092/91 Article 33.

Regulation (EU) 2018/84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May 2018 on organic production and labelling of organic product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C) No 834/2007.

국외 문헌

Canada Organic Trade Association (2018), The Guide to Organic Labelling in Canada.

- EU(2022), Organic Aquaculture in the EU, EUMOFA.
- Demko, Iryna & Jaenicke, Edward C.(2018), Impact of European Union-U.S. Organic Equivalency Arrangement on U.S. Exports, Applied Economic Perspectives and Policy, 40(3).
- Zhang, Siqi(2025), Assessing the impacts of equivalency agreements in international organic trade,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107(4).
- USDA(2022), NASS Highlights, Results from the 2021 Organic Survey.
- 농림수산성 고시 제1605호(2005)
- 농림수산성 고시 제1606호(2005)
- 농림수산성 고시 제1608호(2005)
- 令和4年9月1日農林水産省告示第18号
- 有機農産品及び有機轉型期農産品驗證基準及允許物質
- 「農林物資の規格化及び品質表示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昭和25年法律第175号

인터넷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동등성 인정, <https://www.enviagro.go.kr/portal/content/html/import/usa.jsp>(검색일: 2025.5.13.)
- _____, 한·영국 동등성인정, <https://www.enviagro.go.kr/portal/content/html/import/uk.jsp>(검색일: 2025.8.13.)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절차, <https://www.nfqs.go.kr/hpmsg/qumg/actionOrganicCertifiedForm.do?menuId=M0000203>(검색일: 2025.9.10.)
- _____, 친환경수산물인증현황, <https://www.nfqs.go.kr/hpmsg/data/actionMarineOrganicCertificationForm.do?menuId=M0000229>(검색일: 2025.6.10.)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5.3.12.), 유기농식품산업, 시장개방 두렵지 않다, https://epts.kdi.re.kr/archive/frwdHist/view2?EPIC_NUM=140671(검색일: 2025.9.24.)

-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농관원, 한·EU 유기 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4731&pWise=sub&pWiseSub=J1#pressRelease>(검색일: 2025.8.30.)
- _____,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추진,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7749>(검색일: 2025.9.3.)
- 식품음료신문(2025.5.15.), 농관원, K-유기가공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 나선다, <https://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680>(검색일: 2025.9.20.)
- 일본 농림수산업성, 유기식품의 검사 인증 제도에 대해서, https://www.maff.go.jp/j/jas/jas_kikaku/attach/pdf/yuuki-508.pdf(검색일: 2025.4.6.)
- _____, 유기농산물 등의 수출입에 관한 정보, https://www.maff.go.jp/j/jas/jas_kikaku/yuuki.html#dotosei(검색일: 2025.5.18.)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공식품의 유형,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007&ccfNo=1&cciNo=1&cnpClsNo=2>(검색일: 2025.9.11.)
- _____, 가공식품 해당여부 판단,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1007&ccfNo=1&cciNo=1&cnpClsNo=1>(검색일: 2025.9.12.)
- Canada Food Inspection Agency, CFIA procedure for organic equivalency determination and on-going monitoring of the existing arrangements, <https://inspection.canada.ca/en/food-labels/organic-products/equivalence-arrangements/equivalency-determination>(검색일: 2025.7.4.)
- _____, Organic claims on food labels, <https://inspection.canada.ca/en/food-labels/labelling/industry/organic-claims>(검색일: 2025.7.5.)
- _____, Canadian Organic Standards, <https://inspection.canada.ca/en/food-labels/organic-products/standards>(검색일: 2025.7.6.)
- CIRS, China Signed the First Agreement on Mutual Recognition of Organic Products Certification with New Zealand, <https://www.cirs-group.com/en/food/china-signed-the-first-agreement-on-mutual-recognition-of-organic-products-certification-with-new-zealand>(검색일: 2025.9.25.)

- European Commission, COUNCIL DECISION authorising the opening of negotiations on agreements on trade in organic products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Argentina, Australia, Canada, Costa Rica, India, Israel, Japan, New Zealand, the Republic of Korea, Tunisi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52021PC0259>(검색일: 2025.5.3.)
- _____, REPORT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n the recognition of third countries for the purpose of equivalence on organic products,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52022DC0728>(검색일: 2025.6.20.)
- imarc, Organic Food Market 2024, Size, Growth And Trends, <https://www.imarcgroup.com/organic-food-market#:~:text=,2033>(검색일: 2025.2.27.)
- EU, Trade in organics, https://agriculture.ec.europa.eu/farming/organic-farming/trade_en(검색일: 2025.4.12.)
- _____, Agreements on trade in organic products, https://agriculture.ec.europa.eu/farming/organic-farming/trade/agreements-trade-organic-products_en(검색일: 2025.4.16.)
- _____, Council Regulation (EC) No 834/2007 of 28 June 2007 on organic production and labelling of organic products and repealing Regulation (EEC) No 2092/91 Article 33, <https://eur-lex.europa.eu/eli/reg/2007/834/oj/eng> (검색일: 2025.5.10.)
- _____, Commission Regulation (EC) No 889/2008 of 5 September 2008 laying down detailed rules for the implementation of Council Regulation (EC) No 834/2007 on organic production and labelling of organic products with regard to organic production, labelling and control, <https://eur-lex.europa.eu/eli/reg/2008/889/oj/eng>(검색일: 2025.9.1.)
- _____,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1/2325 of 16 December 2021 establishing, pursuant to Regulation (EU) 2018/84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the list of third countries and the list of control authorities and control bodies that have been recognised under Article 33 (2) and (3) of Council Regulation (EC) No 834/2007 for the purpose of import

-
- ing organic products into the Union, https://eur-lex.europa.eu/eli/reg_impl/2021/2325/oj/eng(검색일: 2025.5.14.)
- _____, REPORT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n the recognition of third countries for the purpose of equivalence on organic products,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52022DC0728>(검색일: 2025.5.17.)
- _____,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202 of 21 June 2023 amending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1/2325 as regards the recognition of certain control authorities and control bodies for the purpose of importing organic products into the Union, https://eur-lex.europa.eu/eli/reg_impl/2023/1202/oj/eng(검색일: 2025.5.18.)
- GOV.UK, Organic food: labelling and advertising rules, <https://www.gov.uk/guidance/organic-food-labelling-rules>(검색일: 2025.6.13.)
- _____, Importing organic food, feed and seed to the UK, <https://www.gov.uk/guidance/importing-organic-food-to-the-uk#full-publication-update-history>; <https://www.enviagro.go.kr/portal/content/html/import/uk.jsp>(검색일: 2025.6.14.)
- _____, Organic registers: lists of non-UK countries, territories, control bodies and control authoritie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organic-registers-lists-of-third-countries-or-territories-control-bodies-and-control-authorities>(검색일: 2025.8.12.)
- _____, Expert Group on Organic Production (EGOP), <https://www.gov.uk/government/groups/expert-group-on-organic-production-egop>(검색일: 2025.9.24.)
- legislation.gov.uk, The Organics (Equivalence and Control Bodies Listing) (Amendment) Regulations 2021, <https://www.legislation.gov.uk/uksi/2021/1266/regulation/3/made#regulation-3-3-c>(검색일: 2025.5.24.)
- MAFF, JAS (Japanese Agricultural Standards, 日本農林規格) (검색일: 2025.5.3.)
- _____, 有機酒類の輸出入が可能です!, https://www.maff.go.jp/j/jas/jas_kikaku/attach/pdf/yuuki-533.pdf(검색일: 2025.5.4.)
-

- _____, Organic JAS, https://www.maff.go.jp/e/policies/standard/specific/organic_JAS.html(검색일: 2025.6.10.)
- Network of Aquaculture Centres in Asia-Pacific, Organic aquaculture: the future of expanding niche markets, <https://enaca.org/?id=145#:~:text=There%20is%20unprecedented%20growth%20in,the%20primary%20goal%20of%20organic>(검색일: 2025.2.27.)
- USDA, National Organic Program, <https://www.ams.usda.gov/about-ams/programs-offices/national-organic-program>(검색일: 2025.6.10.)
- _____, <https://www.ams.usda.gov/services/organic-certification/international-trade>(검색일: 2025.7.2.)
- UK Parliament, The Northern Ireland Protocol and Windsor Framework, <https://commonslibrary.parliament.uk/research-briefings/cbp-9548/>(검색일: 2025.8.3.)
- _____, Appendix 1: Draft Organics (Equivalence and Control Bodies Listing) (Amendment) Regulations 2021, https://publications.parliament.uk/pa/ld5802/ldselect/ldsecleg/52/5208.htm?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2025.9.2.)
- 中华人民共和国驻奥克兰总领事馆经济商务处, https://auckland.mofcom.gov.cn/BilateralCooperation/art/2025/art_0f683daf68b04c63a9afccde6190fab6.html?utm(검색일: 2025.6.15.).
- 市场监管总局, 速看! 中国与新西兰有机产品认证合作又添新成果, https://k.sina.com.cn/article_3686739204_dbbf2d0401901fdha.html(검색일: 2025.7.8.)
- 央视新闻, 推动中国质量认证“走出去”我国与澳、新签署有机产品合作互认协议, <https://baijiahao.baidu.com/s?id=1814510382606829764&wfr=spider&from=pc>(검색일: 2025.7.8.)
- 中国农业农村信息网, “我国与澳新签署有机产品合作互认协议”, https://www.agri.cn/zx/nyyw/202411/t20241105_8685695.htm (검색일: 2025.7.8.).

회의 자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회의(2025.7.21.)

부 록

1. 설문조사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작성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응답결과에 대한 비밀은 보호됩니다.

주관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사기관: (주)리서치앤리서치

list id

--	--	--	--	--

유기수산물품 실태 및 동등성 인정 협정에 관한 인식도 조사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정책을 연구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책 연구기관입니다. 현재 “유기수산물품 인증제도의 국제 동등성 획득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기수산물 인증제도의 국제 동등성 인정 협정 체결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생산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본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유기가공식품은 EU, 미국, 캐나다와 동등성 인정 협정을 체결하였지만, 유기수산가공식품은 외국과 동등성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동등성 인정”이란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가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의 원칙과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법에 따른 인증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검증되면 양국의 정부가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양국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이 동등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 제2조(정의)

☞ 양국에서 유기로 인증을 받은 가공식품은 양국이 합의한 사항을 충족할 경우 상대국의 규정에 따른 인증을 별도로 획득할 필요 없이 "유기"로 표시하여 수출입할 수 있습니다.

PART A. 유기 수산 식품 실태

〈A01〉 귀어/귀사의 2024년 1년 동안, 유기가공수산식품 생산량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출하 기준)

() 톤, 전체 생산량 중 () %

〈A02〉 귀어/ 귀사의 유기수산가공제품은 수출되고 있습니까?

☐ 1) 그렇다  〈A02-1〉로 이동

☐ 2) 아니다  〈A03〉로 이동

〈A02-1〉 (수출하고 있다면) 어떤 제품을 수출하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 | | | |
|---------------------------------------|--|--------------------------------------|
| ☐ 1) 조미김 | ☐ 2) 조미김(자반) | ☐ 3) 구운김 |
| ☐ 4) 마른김 | ☐ 5) 마른다시마 | ☐ 6) 마른다시마 가루 |
| ☐ 7) 마른미역 | ☐ 8) 마른미역 가루 | ☐ 9) 마른 자른 미역 |
| ☐ 10) 액상차(다시마) | ☐ 11) 그 외 품목 () | |

〈A02-2〉 (수출하고 있다면) 수출 국가는 어디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 | | |
|---|--------------------------------|
| ☐ 1) EU (국가명:) | ☐ 2) 미국 |
| ☐ 3) 캐나다 | ☐ 4) 일본 |
| ☐ 5) 중국 | |
| ☐ 6) 베트남 | ☐ 7) 태국 |
| ☐ 8) 인도네시아 | |
| ☐ 9) 기타 (국가명:) | |

〈A02-3〉 (수출하고 있다면) 수출량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2024년 기준)

() 톤, 전체 생산량 중 () %

〈 A02-4 〉 (수출하고 있다면) 국가별 수출량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2024년 기준)

구 분	수출량(톤)
미국	
캐나다	
영국	
EU (국가명:)	
일본	
중국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기타 (국가명:)	

〈 A03 〉 귀여가/귀사가 유기 인증을 받으신 동기는 무엇입니까? (3가지를 골라 주십시오.)

- ☐ 1) 수출 확대
- ☐ 2) 수산물 품질이 향상될 것 같아서
- ☐ 3) 수산자원 및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 ☐ 4) 수산물 생산량이 늘어날 것 기대해서
- ☐ 5) 수산물 판매가 늘어날 것 같아서
- ☐ 6) 직불금을 받을 수 있어서
- ☐ 7) 주변 동료나 어촌계/지자체에서 권유해서
- ☐ 8) 정부/지자체 추진 정책에 협조하는 것이 좋아서
- ☐ 9) 장기적으로 경영비를 절약할 수 있어서
- ☐ 10) 기존 방식으로는 경영을 지속하기 힘들어서
- ☐ 11) 기타 ()

👉 1순위 () 2순위 ()

- 161

PART B. 동등성 협정에 대한 인식

〈B01〉 귀어가/귀사는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국제 동등성 인정 협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현재 유기가공식품은 미국, EU, 영국, 캐나다와 동등성 인정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동등성 인정”이란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가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의 원칙과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법에 따른 인증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검증되면 양국의 정부가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양국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이 동등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

(국립농산물관질관리원)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 제2조(정의)

☞ 양국에서 유기로 인증을 받은 가공식품은 양국이 합의한 사항을 충족할 경우 상대국의 규정에 따른 인증을 별도로 획득할 필요 없이 "유기"로 표시하여 수출입할 수 있습니다.

☐ 1) 매우 잘 알고 있음

☐ 2) 어느 정도 알고 있음

☐ 3) 들어본 적 있음

☐ 4) 잘 모르겠음

〈B02〉 동등성 인정 체결 대상 희망국이 있으십니까?

☐ 1) 있다 ☞ 〈B02-1〉로 이동

☐ 2) 없다 ☞ 〈B03〉로 이동

☐ 3) 잘 모르겠다 ☞ 〈B03〉로 이동

〈B02-1〉 희망국이 있다면 어디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 1) 미국

☐ 2) 캐나다

☐ 3) EU

☐ 4) 영국

☐ 5) 기타()

〈B02-2〉 해당국가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당국으로의 수출 잠재력

☐ 2) 인증 절차 간소화 기대

☐ 3) 인증 비용 절감

☐ 4) 고객(바이어) 요구

☐ 5) 기타 ()

〈B03〉 동등성 인정 협정이 체결되면 귀사의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 1) 매우 그렇다 ☐ 2) 그렇다 ☐ 3) 보통이다
☐ 4) 아니다 ☐ 5) 잘 모르겠다

〈B04〉 동등성 인정 협정이 체결될 경우, 다음 중 가장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 ☐ 1) 수출시장 확대 ☐ 2) 거래 안전성 확대
☐ 3) 중복 인증 해소로 인증 비용 절감
☐ 4) 수출량 증가 ☐ 5) 신규 수출시장 확대
☐ 6) 기타 ()

〈B05〉 동등성 인정 협정이 체결될 경우, 인증 획득을 희망하거나 유지할 의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 1) 유기 인증을 신규로 받을 의향 있음
☐ 2) 현재 인증을 유지할 계획이며, 협정 체결로 인해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음
☐ 3) 인증 유지에 대한 의향은 있으나 비용 때문에 고려 중
☐ 4) 기타 ()

〈B06〉 향후 외국과의 동등성 인정 협정 체결시 예상되는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 ☐ 1) 라벨링 및 표시 요건 차이 부담
☐ 2) 추적 관리 강화 요구
☐ 3) 해외 규정 모니터링·대응
☐ 4) 해외 유기수산물·농식품 국내 수입 증가
☐ 5) 유기 인증 양식수산물 (원재료) 조달의 어려움
☐ 6) 허용물질, 첨가물 규정 차이 부담
☐ 7) 검역·위생 및 추가 시험 요구 부담
☐ 8) 기타()

〈 B07 〉 귀하께서 유기 인증의 국제 동등성 인정 협정에 관해서 건의하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시면 적어주시오.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본연구보고서 발간목록

Ⅰ 2025년

01	청색경제 이행지표 개발 및 투자효과 분석	김주현
02	해양문화산업의 지역 경쟁력 진단과 발전전략 연구	이슬기
03	유해·교란 해양생물 지정 제도 개선방안 연구	정여진
04	해양보호구역의 효과적 관리 방안 연구	김미주
05	해양 복합위험의 실효적 대응 방안 연구	민영훈
06	해양 위성정보 활용 방안 연구	조성진
07	수산업 정책 전주기 연계성 강화 방안 연구	안지은
08	소비자 맞춤형 식품시장 성장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대응 방안 연구	임경희
09	외국인 어선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정명화
10	수산식품 물가 안정화 방안 연구	박혜진
11	수산물 업사이클링 생태계 조성 방안 연구	이남수
12	어촌과 연안의 통합적 발전을 위한 바다생활권 도입방안 연구	박상우
13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에 따른 영향분석과 대응방안 연구	김병주
14	연안대중교통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연구	류희영
15	그린 암모니아 선박 연료 전환 대응 방안 연구	전서연
16	스마트항만 기술 수용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이다예
17	탄소중립항만 전환을 위한 항만하역장비 관리체계 개선 방안 연구	이혜령
18	부산항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김근섭
19	재난·재해 대비 항만 위험물 컨테이너 물류공급망 대응 방안 연구	최나영환
20	국제물류시장 공정경쟁질서 확립 방안 연구	김동환

2024년

01	섬·바다·강 연계 관광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최일선
02	해양 스타트업 실패 자산화 방안 연구	좌미라
03	시민친화적 바닷가 공간 조성에 관한 연구	정치호
04	연안이용 관리 법제 정비방안 연구	최석문
05	특별관리해역 관리제도 재편 방안 연구	최수빈
06	해양관할구역 과세권한의 체계적 배분방안 연구	이혜영
07	어업인의 디지털 전환 수용성 제고방안 연구	오서연
08	수산물 무역(수출입) 단기 전망모형 구축 연구	한기욱
09	어촌소멸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분석과 대응전략 연구	이상규
10	어촌다움에 기반한 어촌공간관리 방안 연구	이승혜
11	파생상품을 이용한 해운선사의 위험관리에 관한 연구 - 운임선도거래(FFA)를 중심으로 -	김한나
12	내항상선 해양사고 경감방안 연구	허성례
13	항만재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 연구	김세원
14	해외 항만터미널 확보 전략 연구	김근섭
15	항만 하역능력의 서비스 수준 개선 연구	이화섭
16	국내 무역항 거버넌스 체계 개편방안 연구	김근섭
17	선박의 원격운항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박혜리
18	국제물류기업 육성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최나영환
19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 정책효과 분석 모형 개발 연구	강무홍
20	한-북미 무역구조 분석 및 물류공급망 변화 대응방안 연구	이성우

수시연구보고서 발간목록

Ⅰ 2025년

01	해양치유시설 조성·운영 제도 개선 연구	이정아
02	국제 해양질서 전환 대응 해양대외전략 기반 연구	박수진
03	유기수산물품 국제 동등성 확보 방안	오서연
04	선원 복지 개선방안 연구 - 선내 급식을 중심으로	허성례
05	항만재개발사업 추진 체계 재정립 연구 - 항만재개발사업 업무 매뉴얼 개선을 중심으로	김세원
06	군소도서국 해양수산 국제협력 방안 수립	전혜은
07	어촌발전특구 도입을 위한 법·제도 연구	박상우
08	해양생태계서비스 활용 방안 연구	정세미
09	해양에너지 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육근형
10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정보화 정책 방향 연구	이종필
11	해양안보 위협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 선박 이상 행위를 중심으로	민영훈
12	지방관리무역항 보안관리체계 재정립 연구	김가현
13	부산항 터미널 위험물 컨테이너 장치 효율 개선 방안 연구 - 법·제도 측면 -	김우선
14	새만금호 수질관리 강화 방안 연구	장원근
15	미 상호주의 대응 수산분야 비관세장벽 영향 연구	이정미
16	수중레저 안전관리 체계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이정아

2024년

01	해양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김찬웅
02	한-아프리카 국제수산협력 체계 개선 연구	이채령
03	해양안보 MDA 체계 구축·활용 방안 연구	민영훈
04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전략 방안	한장협
05	해양문화자원을 활용한 연안도시활력 증진 방안 연구	이슬기
06	부산항 물동량 유치방안 연구	김은우
07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동향과 우리의 대응:해양수산업아를 중심으로	채수란
08	국내 연안여객선 관광·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이정아
09	내수면어업 허가·신고 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순
10	어업선진화를 위한 어업관리체계 개편방안	심성현
11	글로벌 공급망 변동에 따른 해운물류 지원방안	황수진
12	연안 중소선사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친환경정책 지원방안	류희영
13	항만기술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연구	김보경
14	해양모태펀드 투자활성화 방안 연구	한기원
15	특별관리해역 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방안	장원근
16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양식장 안전성 개선 방안 연구	윤미경
17	국가관리연안항 발전전략 수립체계 연구	신정훈
18	글로벌 공급망 대응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발전방안 연구	권보배
19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중장기 전략 연구	전혜은

일반연구보고서 발간목록

Ⅰ 2025년

01	해양수산 공공데이터 플랫폼 활용 제고 방안 연구	김성은
02	동아시아 해양플라스틱 오염 대응 자원 조성 방안	이윤정
03	한-아세안 해양협력 전략적 강화방안 연구	최지연
04	수산업 강제노동 규범화 대응체계 구축연구	박찬엽
05	해조류 활용 신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 연구	조현주
06	미국 무역환경 변화와 해운·조선산업의 영향 분석 연구	김한나
07	해상운임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이효과 분석	최영재
08	스마트항만 개발 효과 산정 방법론 연구	안승현
09	항만 수급분석 체계화 및 지침 마련 연구	신정훈
10	비컨테이너 부두 하역능력 산정을 위한 적정 점유율 기준 연구	이화섭
11	국가 스마트 콜드체인 물류거점센터 구축연구	조지성
12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중개 플랫폼 모델 개발	권보배
13	미국 이력 추적 의무화에 따른 수산물 수출기업 대응실태 분석 연구	박혜진
14	AI 활용 글로벌 수산이슈 및 무역전망체계 고도화 연구	한기욱
15	섬어촌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연구	이상규

Ⅰ 2024년

01	한-북극권 청색경제 협력사업 추진 방안	김엄지
02	전환기 글로벌 해양환경규범의 대응력 강화 연구	박수진
03	해양 지속가능성 시범 평가 연구	최희정
04	Scope 3 기준 원양산업 탄소배출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 - 원양저연승어업을중심으로	조현주
05	수산물 공급망 관리 개선방안 연구(한태 무역을 중심으로)	한기욱
06	신통상규범 확대에 따른 수산분야 영향 및 대응방안	박혜진
07	탄소배출 규제 대응을 위한 컨테이너 선대 교체 수요 추정 연구	최건우
08	연안항개발사업의 경제적 편익에 관한 연구	김성아
09	한국과 미동부 항만 간 녹색해운항로 구축방안 연구	김가현
10	비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예측모형 고도화 방안 연구(Ⅲ) - 철광석, 화학공업생산물, 기타광석, 잡화물중심으로	이나영
11	접안 대기시간 감소에 따른 탄소집약도지수(CII) 변화 분석	김보람

수시연구 2025-03

유기수산물식품 국제 동등성 확보 방안

인쇄 2025년 11월 28일

발행 2025년 11월 30일

발행인 조정희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소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연락처 051-797-4800 (FAX 051-797-4810)

등록 1984년 8월 6일 제313-1984-1호

조판·인쇄 한글그래픽스(051-632-7842)

판매 및 보급: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02-394-0337

정가 15,000원

유기수산물 국제 동등성 확보 방안

A Study on Strategic Directions for Achieving International
Equivalence of Organic Aquatic Products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 (동삼동)

TEL. 051-797-4800

FAX. 051-797-4810

